

2021 정책연구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300000-000183-01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제도 발전방향 연구

2021. 11. 14.



발간등록번호
--------

11-1300000-000183-01
----------------------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제도 발전방향 연구

2021. 11. 14.

본 연구는 2021년도 병무청의 정책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보고서의 제반 내용은 병무청의 공식적 견해와는 무관하고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또한 본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은 병무청에 있으며, 연구 내용을 인용할 시는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제 출 문

## 병무청장 귀하

귀 기관에서 의뢰한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제도  
발전방향 연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11. 14.

책임연구원 : 박 계 호(단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김 용 빈(단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김 학 민(한국국방연구원)

# 【 차례 】

- 용 어
- 요 약

## I.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중점 및 범위 .....	4
3. 연구 방법 .....	5

## II. 병역의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사례 고찰 / 8

1.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병역의무 .....	8
2. 병역의무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	9
3. 병역판정검사 대상 및 판정 .....	12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외국의 사례 .....	20

## III. 고아 및 탈북주민의 현황 및 실태 분석 / 29

1. 고아 등 현황 및 실태 분석 .....	29
2. 탈북주민 현황 및 실태 분석 .....	37
3. 고아 및 탈북주민의 자료수집 및 관리와 향후 정책관리 방안 ..	47
4. 소결론 .....	50

## IV.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타당성 분석 / 51

1. 병역자원 부족 시대의 병역제도 쟁점 .....	51
2.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시 예상되는 쟁점 ..	55
3.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검토 필요성 .....	62
4. 병역의무부과 타당성 분석 .....	75
5. 병역의무부과 시 헌법에 보장된 원칙 법리적 검토 .....	82
6. 병역의무부과 시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86
7.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97
8. 소결론 .....	120

<b>V.</b>	<b>병역의무부과 대안의 설정과 분석 / 121</b>	
	1. 병역의무부과 기준 판단 .....	121
	2. 병역의무부과 대안 .....	122
	3. 병역의무부과 대안별 분석 .....	125
	4. 병역의무부과 대안의 적용 .....	133
	5.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성공 요인 .....	135
<b>VI.</b>	<b>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시 복무 적응성 제고 방안 / 140</b>	
	1. 병역판정검사 .....	140
	2. 훈련병 교육 .....	141
	3. 보직 및 직무 부여 .....	144
	4. 복무 적응 프로그램 개발 .....	146
<b>VII.</b>	<b>결론 및 정책제안 / 153</b>	
	1. 결론 .....	153
	2. 정책제안 .....	155
<input type="checkbox"/>	<b>참고 문헌 / 159</b>	
<input type="checkbox"/>	<b>붙임 자료 / 161</b>	

## 【 표 차 례 】

<표- 1>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병역의무 이행) .....	10
<표- 2>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2021년) .....	13
<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	14
<표- 4>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	15
<표- 5>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	16
<표- 6>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처분 대상 .....	16
<표- 7>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감면 처분 현황 .....	18
<표- 8> 징병제 및 모병제의 장·단점 비교 .....	22
<표- 9>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시 예상되는 장·단점 .....	22
<표-10> 사회적 약자의 유형 .....	24
<표-11> 고아 등 성별 현황 및 발생원인별 분류 .....	31
<표-12>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현황 .....	32
<표-13>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	34
<표-14> 보호대상아동 관련 주요 재정사업 .....	35
<표-15>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주요 추진 내용 .....	35
<표-16> 탈북주민 현황 .....	37
<표-17> 탈북주민 탈북동기 .....	38
<표-18> 탈북주민이 경험한 인권침해 .....	39
<표-19> 일반 국민과 탈북주민의 경제여건 추이 비교 .....	40
<표-20> 탈북주민의 연령대별 구성 .....	41
<표-21> 탈북주민이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에서 차별·무시당한 이유 ..	41
<표-22> 탈북주민을 이웃·직장 동료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 ..	43
<표-23> 탈북주민에 대한 집단구성원 포용정도 .....	44
<표-24> 탈북주민에 대한 집단별 감정적 거리에 대한 인식 .....	44
<표-25> 탈북주민 정착지원 제도 .....	47
<표-26>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정책관리 주요 내용 .....	49
<표-27>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당시 주요국의 동원규모 .....	54
<표-28>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당시 주요국의 동원규모 .....	54
<표-29>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사회적 편견 해소 요건 .....	57
<표-30>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수용요건 .....	59
<표-31>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운용요건 .....	59
<표-32>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및 부대조정 계획 .....	67
<표-33>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 .....	68
<표-34>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규모의 조정계획 .....	68
<표-35>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출생 성비(2017~2019) .....	71

<표-36>	다문화 가정의 유형(국방부, 2010) .....	73
<표-37>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의 공정성 및 형평성 척도 평가 ..	78
<표-38>	병역의무부과의 효과성 측면 척도 평가 .....	80
<표-39>	병역의무부과의 가능성 측면 척도 평가 .....	81
<표-40>	탈북주민의 병역면제 찬성 및 반대에 대한 인식 .....	91
<표-41>	탈북주민 병역의무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95
<표-42>	탈북주민 병역면제에 대한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	95
<표-43>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설문조사 .....	98
<표-44>	고아 및 탈북주민 예비역 등 인터뷰 .....	98
<표-45>	일반 국민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	99
<표-46>	계급별 설문조사 참여 현황 .....	107
<표-47>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이행 면담 결과(요약) .....	117
<표-48>	고아 병역의무부과 찬성 및 반대 .....	118
<표-49>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찬성 및 반대(설문결과 종합) .....	119
<표-50>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비교검토 결과(잠정 결론) ..	119
<표-51>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대안 판단 고려요소 .....	123
<표-52>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대안 .....	124
<표-53>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대안 .....	124
<표-54>	병역의무부과 대안별 분석 요소 .....	126
<표-55>	대안① 추진전략 .....	128
<표-56>	대안② 추진전략 .....	129
<표-57>	대안③ 추진전략 .....	130
<표-58>	대안④ 추진전략 .....	131
<표-59>	대안의 장·단점 비교 .....	132
<표-60>	대안별 분석 결과 .....	132
<표-61>	대안②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적용(안) .....	133
<표-62>	대안④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적용(안) .....	134
<표-63>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의 단계적 적용(안) .....	135
<표-64>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성공 요인 .....	136
<표-65>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발전 소요 .....	137
<표-66>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전제조건 .....	138
<표-67>	고아 및 탈북주민 훈련병 교육 실시(안) .....	143
<표-68>	초기단계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 평가사항(안) .....	145
<표-69>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 보직 및 특기부여(안) .....	146
<표-70>	복무지원 동기부여 프로그램(안) .....	150
<표-71>	최근 5년간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	151
<표-72>	법령의 개정(안) .....	156
<표-73>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관련 추진과제 .....	158

## 【 그림 차례 】

<그림- 1>	SWOT 기법에 의한 연구 .....	7
<그림- 2>	연구흐름도 .....	7
<그림- 3>	사회갈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 .....	11
<그림- 4>	세계의 병역제도 .....	21
<그림- 5>	보호대상 아동 발생원인 .....	32
<그림- 6>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배제 인식도 .....	43
<그림- 7>	장래 인구 특별추계(2017~2067) .....	52
<그림- 8>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의 변화(2009~2020) .....	64
<그림- 9>	향후 출산율 변화 전망(2021~2067) .....	66
<그림-10>	병역의무자 변화 예상 .....	67
<그림-11>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비중 추이 .....	72
<그림-12>	탈북주민 병역면제 찬성 및 반대 .....	89
<그림-13>	탈북주민 병역면제 반대 이유 .....	90
<그림-14>	탈북주민 병역면제 찬성 이유 .....	91
<그림-15>	탈북주민 병역면제 설문조사 결과(2016) .....	93
<그림-16>	탈북주민 병역면제 설문조사 결과(2017) .....	93
<그림-17>	탈북주민 병역면제 설문조사 결과(2018) .....	94
<그림-18>	고아 병역의무부과 찬성 및 반대(일반국민) .....	100
<그림-19>	고아 병역의무부과 찬성 이유(일반국민) .....	101
<그림-20>	고아 병역의무부과 시 적합한 방법(일반국민) .....	101
<그림-21>	고아 병역의무부과 반대 이유(일반국민) .....	102
<그림-22>	고아 병역의무 미부과 시 적합한 방법(일반국민) .....	103
<그림-23>	향후 고아 병역의무부과 시 기준(일반국민) .....	103
<그림-24>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찬성 및 반대(일반국민) .....	104
<그림-25>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찬성 이유(일반국민) .....	104
<그림-26>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적합한 방법(일반국민) .....	105
<그림-27>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반대 이유(일반국민) .....	105
<그림-28>	향후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방법(일반국민) .....	106
<그림-29>	고아 병역의무부과 찬성 및 반대(군인) .....	107
<그림-30>	고아 병역의무부과 찬성 이유(군인) .....	108



<그림-31>	고아 병역의무부과 시 적합한 기준(군인) .....	108
<그림-32>	고아 병역의무부과 반대 이유(군인) .....	109
<그림-33>	향후 고아 병역의무부과 시 기준(군인) .....	110
<그림-34>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찬성 및 반대(군인) .....	110
<그림-35>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찬성 이유(군인) .....	111
<그림-36>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적합한 방법(군인) .....	111
<그림-37>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반대 이유(군인) .....	112
<그림-38>	탈북주민 병역의무 미부과 시 적합한 방법(군인) .....	113
<그림-39>	향후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방법(군인) .....	113
<그림-40>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지휘 및 관리(간부) .....	114
<그림-41>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에 대한 대우(병사).....	115
<그림-42>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의 병영생활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군인) ..	115

## 【 용 어 】

- **고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다문화 가정**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 **모병제** :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
- **병역면제** : 병역의무부과를 면제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받는 검사
-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역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새터민, 탈북자, 탈북주민 모두 같은 개념)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전시근로역**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 **징병제** :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병제에 속하는 제도
- **탈북주민**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 요약 】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병역의무는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매우 중요
-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의 타당성 검토 및 방안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복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 2. 연구 중점 및 범위

- 고아, 탈북주민 현황과 실태 분석을 통한 병역의무부과 가능성 분석
-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타당성 분석
-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타당성 입증 시 대안 설정 및 분석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시 복무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제시

### 3. 연구 방법

- 법령 및 문헌 등의 연구
  - 법령 :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병역의무 관련 사항
  - 문헌연구 : 고아 및 탈북주민 관련 연구,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 사례연구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관련 외국의 사례
- 인터뷰 및 면담조사
  - 병역의무부과 관련 고아 및 탈북주민 단체의 의견 청취
  - 병역의무부과 시 복무 여부에 대한 의견
  - 고아 및 탈북주민 중 병역의무 이행자 인터뷰
- 설문조사
  - 일반 국민 및 군을 대상으로 실시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및 이유
    - 병역의무부과 시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 및 해소방안 등
- 자체토론회
  -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 및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의견 청취
  - 참여 : 고아 및 탈북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

## Ⅱ. 병역의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사례 고찰

### 1.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병역의무

-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 남성에게 병역은 의무이지만, 또한 남성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 병역의무 사항 미이행 시 공정과 형평의 가치 위반 및 사회통합 저해

### 2. 병역의무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 병역의무

-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국방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 수호 수단
- 국방의 관점에서는 외부침략으로부터 국가방위, 사회적 관점에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측정의 바로미터
-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한국행정연구원 조사)

(단위 : %)

구 분	평균 (만점:4점)	전혀 공정 하지 않다	별로 공정 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2019	2.5	6.5	42.2	47.5	3.7
2020(I)	2.7	3.4	34.6	54.7	7.3
2020(II)	2.7	3.2	33.8	55.4	7.6

### 3. 병역판정검사 대상 및 판정

#### 병역판정검사 과정

- 18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 19세에 병역판정검사 실시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대상
- 신청에 의해 병역감면 가능(고아: 전시근로역, 탈북주민: 병역면제)
  - 매년 고아 약 600 ~ 700명, 탈북주민 150 ~ 250명 병역감면

###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외국의 사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사례(1): 이스라엘

- 「방위복무법(Defence Services Law)」에 따라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무부과
- 면제 대상: 의학적·심리적 이유, 결혼 또는 임신 여성, 양심의 이유, 종교적 사유(여성만 해당), 정통파 유대인, 범죄 기록소지자 등
- 고아 등 사회적 약자 병역의무부과에서 면제한다는 규정 없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사례(2): 싱가포르

- 「병역법(Enlistment Act)」: 16.5 ~ 40세의 남자에게 병역의무부과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관련 개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고아 등 사회적 약자 병역의무부과에서 면제한다는 규정 없음

### Ⅲ. 고아 및 탈북주민의 현황 및 실태 분석

#### 1. 고아 등 현황 및 실태 분석

□ 고아 등의 현황

- 성별 현황 및 발생원인별 분류

(단위: 명)

구분	성별			발생원인별								
	계	남	여	유기	미혼 부모	미아	비행 가출	학대	부모 빈곤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2019	4,047	2,135	1,912	237	464	8	473	1,484	265	297	83	736
2018	3,918	1,914	2,004	320	623	18	231	1,415	198	284	92	737
2017	4,125	2,080	2,045	261	847	12	227	1,442	223	279	87	747

□ 고아 등에 대한 지원

- 지원조직과 업무
  - 공공부문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를 통해 서비스 제공
  - 민간부분 전달체계: 민간위탁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예산 지원, 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아동 관련 주요 재정사업

구분			주요 재정사업
정책추진체계			아동권리보장원 운용,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및 교육
아동보호시설 구축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보호대상 아동지원 사업	보호대상 아동 유형별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위탁	가정위탁 지원 및 운용
		입양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보호대상아동 일반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사업,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발달지원 계좌 도입

## 2. 탈북주민 현황 및 실태 분석

### □ 탈북주민 현황

(’20년 기준)

구 분	계	남성	%	여성	%
인 원	33,752명	9,435명	28.0	24,317	72.0

### - 탈북 동기

탈북이유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식량 부족	11.6	26.3	3.5	7.2	24.9	26.2	28.6	23.8
감시·통제 싫어서	27.0	18.5	3.9	16.0	20.6	19.7	27.3	20.6
가족생활 여건 개선	14.2	14.2	6.3	9.6	10.6	16.3	16.7	10.5
탈북한 가족과 살고자	13.1	9.1	17.5	18.3	13.5	4.8	4.5	12.5
돈을 더 벌고자	6.4	10.9	1.3	8.5	9.5	14.4	8.2	5.1
북한거주 가족 따라	12.5	6.3	57.2	23.1	6.3	2.0	2.0	5.4
신변위협 느껴서	9.8	4.1	1.1	2.0	3.8	5.9	7.2	10.7
먼저 탈북한 사람 권유	6.0	4.5	6.8	8.6	4.9	3.7	2.8	6.3
주변 사람 권유	2.3	3.1	1.8	4.9	2.9	3.5	2.0	0.7
기타	1.6	3.0	0.6	1.7	2.9	3.6	0.8	4.2

### □ 탈북주민의 트라우마

#### - 경험한 인권침해 내용

구 분	인권침해 사건(다빈도순)	인원(%)
인 권 침 해 요 소	공개적인 자아비판을 직접 경험함	247명(82.33)
	심한 굶주림과 질병을 직접 경험함	188명(62.67)
	이웃과 당원의 감시와 고발을 직접 경험함	171명(57.00)
	통신검열 또는 녹화기 단속을 직접 경험함	167명(55.67)
	토대가 나쁘다는 이유로 차별을 직접 경험함	120명(40.00)
	국가기관 또는 군대에서 매질을 직접 경험함	65명(21.67)
	탈북으로 인하여 처벌 또는 강제송환을 직접 경험함	65명(21.67)
	탈북기간 중 여성 또는 아동 인신매매를 직접 경험함	65명(21.67)
	잘못 없이 국가기관에 끌려가는 것을 직접 경험함	62명(20.67)
	가족들이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을 직접 경험함	31명(10.33)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직접 경험함	22명( 7.33)
	탈북기간 중 심한 굶주림 또는 질병을 경험함	10명( 3.33)
	정치범수용소의 잔혹성을 직접 경험함	10명( 3.33)
	가족들이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함	3명( 1.33)

□ 탈북주민의 소외감 인식 정도

- 탈북주민이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에서 차별·무시당한 이유

구분	이유	선택비율(%)
1순위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74.9
2순위	(남한사람의 북한주민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44.3
3순위	언론에서 북한체제와 북한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 영향으로	19.3
4순위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에 있어 남한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	16.8
5순위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어서	9.4

□ 탈북주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 지원조직과 업무

- 통일부(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 탈북주민 전반적 업무 수행
- 하나원 : 교육 등 조기 적응 및 정착 등의 지원
- 남북하나재단 : 초기정착·생활안정지원, 정착지원금, 취업·창업지원, 교육·인재양성지원, 사회통합 지원사업 등을 수행
- 하나센터 : 지역 사회 안착 유도

- 탈북주민 정착지원 제도(일부)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장려금	취업장려금 최대(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가산금	노령, 장애, 한부모, 제3국 출생자녀양육 등 요건에 따라 지급
주거	주택알선	임대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1세대 1,600만원
취업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취업보호대상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60여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 및 알선
	기타	취업보호(우선구매),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보호결정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학비지원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3. 고아 및 탈북주민의 자료수집 및 관리와 향후 정책관리 방안

#### □ 자료수집 및 관리

- 고아 : 보건복지부(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등), 아동권리보장원 등
- 탈북주민 : 통일부, 통일교육원, 남북하나재단(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등)

#### □ 정책관리 방안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정책관리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정책수립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감면 사유 등의 분석</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검토 필요성 및 유사사례 분석</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관련 유관기관 의견 수렴</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기대효과 등의 분석</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방안 결정 및 세미나</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 방안 및 동기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li> </ul>
정책이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 전역이후 사회진출 지원사항</li> <li>• 군 복무중 학업, 기술습득 등의 지원사항 이행</li> <li>• 일반병사와 고아 및 탈북주민 출신 병사간의 갈등 등</li> </ul>
정책평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이행 효과</li> <li>• 군 복무의 수용성, 복무이행자의 사회진출 지원책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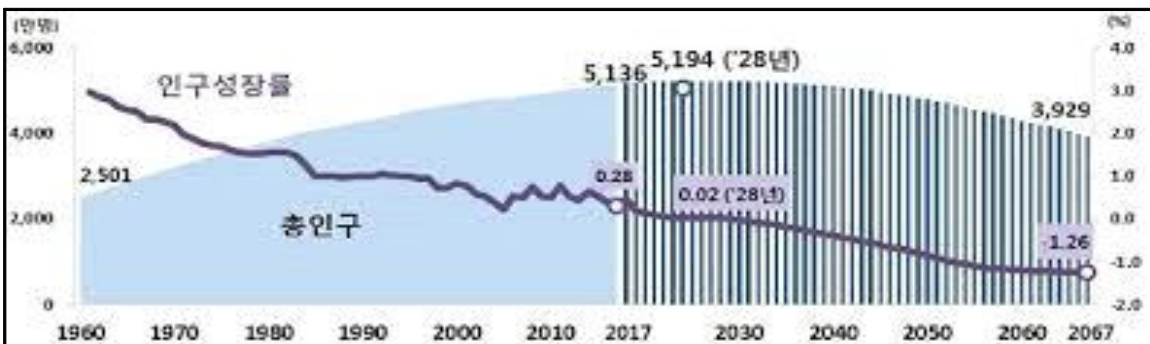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정부의 지원제도와 정책적 연계 필요

## IV.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타당성 분석

### 1. 병역자원 부족 시대의 병역제도 쟁점

####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

- 장래 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



※ 15 ~ 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73.2% → 45.4%),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증가(13.8% → 46.5%), 0 ~ 14세 유소년인구 비중 감소(13.1% → 8.1%)



□ 병역 가용자원 감소에 따른 병역제도 쟁점

- 병역 가용자원 부족에 따라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폐지, 병역특례제도 축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여군 인력 확대 등 추진

2.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시 예상되는 쟁점

□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예상되는 쟁점

- 사회적 편견 및 인식의 문제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사회적 편견 해소 요건

구 분	내 용
일반 국민	• 사회구성원 일부로서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아 / 탈북주민	• 사회구성원으로서 고아 및 탈북주민 본인들의 자기 발전 노력
정부	• 법령 및 제도를 통한 고아 및 탈북주민의 발전노력 지원

- 병역제도 수용의 문제
  -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 법적·제도적 수용 가능성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수용요건

구 분	내 용
일반 국민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인식
고아 / 탈북주민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적극적 자세
정부/군	• 고아 및 탈북주민의 군 복무를 위한 법령 등의 정비

- 입대병사 운용상의 문제
  - 고아나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 군 생활 적응 및 지휘관과 병사의 문제, 병사와 병사의 갈등 발생 등의 문제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운용요건

구 분	내 용
고아 / 탈북주민	• 고아 및 탈북주민의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 자세와 노력 견지
군	• 고아 및 탈북주민의 군 복무에 대한 군의 수용성
정부	• 군 당국의 고아 및 탈북주민 입대 수용 노력

-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시 인원 규모
  -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고아는 약 600~700명, 탈북주민은 약 150~250명으로 대상이 많지 않으나 상징적인 의미 있음

### 3.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검토 필요성

#### □ 병역의무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

- 「병역법」에 따라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공정성, 형평성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2014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탈북주민 병역의무 방안 제시
  - 입국 후 보호기간(5년) 이내 대상자는 원할 시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면제
  - 그 외의 대상자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의무 이행
- 2015년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필요성 제기
  - 북한이탈주민의 무조건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
  - 군복무 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병역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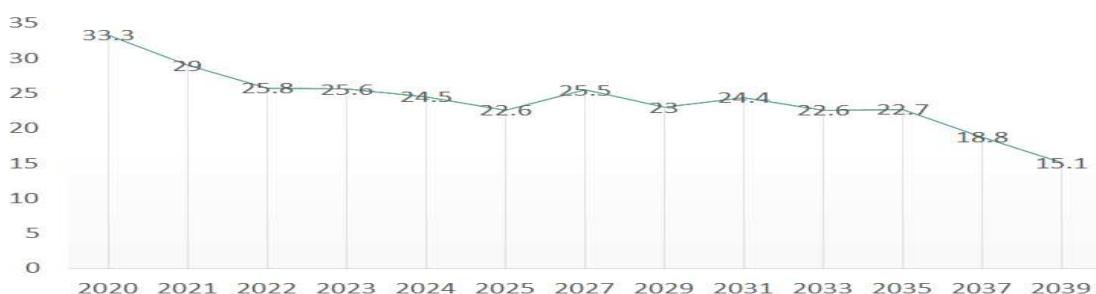
#### □ 병역가용 자원의 감소로 현존 전력 유지의 어려움 발생 부분적 해소

- 막대한 예산 등의 투입 불구,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가용 자원 감소
-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의 변화(2009~2020년)



#### • 병역의무자 변화 예상

(단위 : 만명)



-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및 부대 조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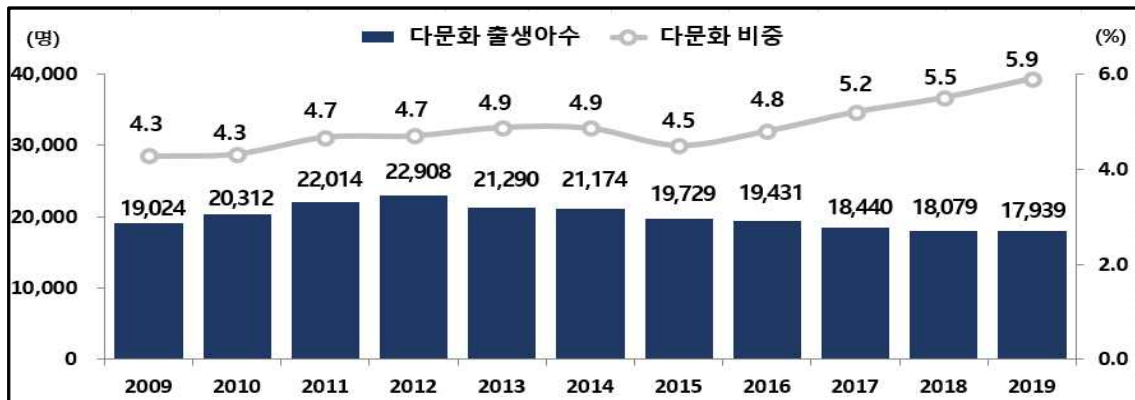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계획)
병력(만명)	63.9	63	62.5	59.9	55.5	50
부대(사단수)	46	44	43	40	37	33
비고	「국방백서」(2012, 2014, 2016, 2018, 2020)					「국방개혁2.0」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적 통합에 기여

- 고아 및 탈북주민도 국민으로서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사회구성원의 일부로서 역할을 완수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

□ 다문화 가정의 병역부과와 형평성 유지

-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비중 추이



- 2010년 「병역법」 개정으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전시근로역 감면제도 폐지

□ 고아 및 탈북주민의 취업 지원 확대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 시 사회 적응력 강화
- 군 복무 중 직업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 사회진출 지원

□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 공유

-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에서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
- 고아 및 탈북주민도 병역의무 이행이 자랑스러운 일임을 공유

□ 남북통일 과정 및 이후의 대비

- 남북통일 및 이후 과정에서 북한 주민 및 군에 대한 선무활동, 북한군의 해산 등에서 중요한 역할

□ **고아 및 탈북주민의 사회성 함양 및 활동 공간의 확대**

- 군 생활은 사회생활에 대해 배우고 사회에서 필요한 인내력과 자제력 등을 배우는 하나의 과정임
- 고아 및 탈북주민을 지금처럼 신청에 의해 병역을 감면할 시 국민의 일부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사회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일부로서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같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4. 병역의무부과 타당성 분석**

□ **병역의무부과 타당성 개념 및 의미**

-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신체적·지적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병역의무부과
-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타당성이 중요한 이유
  - 군의 집단적 및 폐쇄적 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 방지
  - 지휘관과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 예방 등

□ **병역의무부과의 공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

- 병역의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은 병역의 핵심적 사항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의 공정성 및 형평성 척도 평가

구 분	평 가 내 용
일반 국민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가 공정하게 이행되는가
고 아	• 일반 국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가
탈북주민	• 일반 국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가 • 한국 입국 후 사회적응기간 등을 고려 병역판정을 하는가
공 통	• 고아 및 탈북주민은 병역판정검사를 수용하는가

□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

- 병역가용 자원 부족 해소, 전투력 강화 및 사회적 통합 효과 달성 기여
  - 병역의무부과의 효과성 측면 척도 평가

구 분	평 가 내 용
일반 국민	•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공정한가
군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가 병역가용 자원 부족 해소 및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는가
고아 / 탈북주민	• 고아는 본인의 군 복무가 사회성 등의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인가 • 탈북주민 본인의 군 복무가 사회성 및 정체성 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인가

□ **가능성 측면에서 분석**

- 군 복무 중 각각의 보직 또는 직책에 알맞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
- 병역의무부과의 가능성 측면 척도 평가

구 분	평 가 내 용
병무청 / 군	• 고아 및 탈북주민 중 복무부적합자는 적절히 식별해 내는가
고아 / 탈북주민	• 군 복무에 적절한 특기 및 보직을 받는가

## 5. 병역의무부과 시 헌법에 보장된 원칙 법리적 검토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 측면**

-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의무부과하며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복리에 필요
- 병역의무부과는 그들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님

□ **평등의 원칙 측면**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임

□ **신뢰의 원칙 측면**

-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가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지라도 신뢰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적법절차의 원칙 측면**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시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 법률적 근거 마련 후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 시 적법절차의 원칙 준수

□ **최소보장의 원칙 측면**

-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판단하여 법적 요건과 복무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전역 이후 취업 기회 확대 등 내부 규정을 만든 후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고아 및 탈북주민도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병역의무부과
-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병역의무부과 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6. 병역의무부과 시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부정적 요인

- 고아는 성장 과정에서 겪었을 트라우마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문제
- 탈북주민은 북한에서 출생 및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어려움 등 부정적 요인

### □ 해결방안

-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또는 인식제거 노력
- 일반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통합을 위한 노력
-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관련 법령개정 필요
- 군 지휘관, 병사들의 인식 개선, 군복무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필요

## 7.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 설문 개요(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구 분	기 간	대상인원	방 법	설문문항
일반 국민	'21. 9. 1. ~ 28.	180명	설문지	12문항
군 인	'21. 9. 13. ~ 17.	220명	설문지	17문항

### □ 설문 결과

구 분	설문대상	계	의무부과 찬성	%	의무부과 반대	%
고 아	일반 국민	180명	103명	57.2	77명	42.8
	군 인	220명	134명	60.9	86명	39.1
탈 북 주민	일반국민	180명	95명	52.8	85명	47.2
	군 인	220명	121명	55.0	99명	45.0

## 8. 소결론

### □ 고아 병역의무부과 찬성 또는 반대의견(설문 결과 종합)

설문대상	기 간	계	찬성	%	반대	%
일반 국민	'21. 9. 1. ~ 9. 28.	180명	103명	57.2	77명	42.7
군 인	'21. 9. 13. ~ 9.17.	220명	134명	60.9	86명	39.1

□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찬성 또는 반대의견(설문 결과 종합)

설문대상	기 간	계	찬성	%	반대	%
일반대학생	'11. 5. 1. ~ 7. 29.	375명	143명	38.2	232명	61.8
탈북청소년	'15. 6. 24. ~ 6. 25.	74명	14명	18.9	60명	81.1
북한이탈주민	'16. 6. 1 ~ 7. 31.	2,663명*	1,648명	62.8	987명	36.2
일반 국민	3회('16, '17, '18년)	311명	130명	41.8	181명	58.2
일반 국민	'21. 9. 1. ~ 9. 28.	180명	95명	52.8	85명	47.2
균 인	'21. 9. 13. ~ 9. 17.	220명	121명	55.0	99명	45.0

2663명\* : 실제 참여인원에 비하여 일부 답변하지 않은 인원 있음(설문조사에서 2,635명만 답변함)

□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검토 결과(잠정 결론)

구 분	결론 (잠정)	공정성 제고	형평성 유지	사회통합 기여	병역자원 확보	전투력 강화	설문결과 종합
고 아	○	○	○	○	△	△	○
탈북주민	○	○	○	○	△	△	○

## V. 병역의무부과 대안의 설정과 분석

### 1. 병역의무부과 기준 판단

□ 고아

- 병역감면 신청제도 폐지로 모든 고아를 대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은 현행대로 처분, 그 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 탈북주민

- 병역감면 신청제도 폐지로 모든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병역의무부과하는 방안
- 한국 입국 당시의 연령과 정부의 보호기간 고려 부과하는 방안

### 2. 병역의무부과 대안

□ 병역의무부과 대안

-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대안

구분	대안①	대안②
적용	모든 고아에게 병역의무부과	고아 발생원인 및 현재 상태 고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li> <li>-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li> <li>-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li> </ul> </li> <li>•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보호 치료시설에서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li> </ul> </li> </ul>

-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대안

구분	대안③	대안④
적용	모든 탈북주민에게 부과 (입국당시 연령 및 보호기간 미고려)	입국당시 연령 및 보호기간 고려
대상	병역의무부과대상자로서 당시 입국연령 등 고려없이 병역의무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세이전 입국, 보호기간 5년이상 경과자</li> <li>• 13~15세 입국, 보호기간 이내자</li> <li>• 16세이후 입국, 보호기간 이내자</li> </ul>

### 3. 병역의무부과 대안별 분석

□ 대안의 분석 결과

-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병역의 공정성 또는 형평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고아는 발생원인 및 현재 상태, 탈북주민은 입국당시 연령 및 정부보호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성 및 형평성에 기여
- 대안 분석 결과

구분	대안①	대안②	대안③	대안④
병역 공정성	△	○	△	○
병역 형평성	△	○	△	○
사회통합 효과	△	○	△	○
가용자원 확보	△	△	△	△
군 수용성	×	○	×	○
결론	△	○	△	○



#### 4. 병역의무부과 대안의 적용

□ 고아 병역의무부과: 대안②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적용(안)

구 분	병역판정검사				
	1~3급	4급	5급	6급	7급
보호대상 <sup>1)</sup>	현역병 입영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아 <sup>2)</sup>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대안④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적용(안)

구 분	병역판정검사				
	1~3급	4급	5급	6급	7급
12세이전 입국	현역병 입영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13~15세 입국	보충역	보충역			
16세이후 입국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			

#### 5.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성공 요인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도입 및 정착 성공 요인

구 분	성 공 요 인
일반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편견 배제 및 포용성</li> <li>•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불가피성 인식</li> <li>•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지지 및 지원</li> </ul>
정책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관련 법령 등의 정비</li> <li>• 고아 및 탈북주민에 적합한 병역의무 이행 제도 정립</li> <li>• 군 복무 이후 지원 대책(구직, 주거 등)</li> </ul>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수용성</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 관리 대책</li> <li>• 복무 중 갈등관리 및 동기부여 대책(학업, 구직 등)</li> </ul>
고아 및 탈북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 자세의 견지</li> <li>•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성 정체성 함양 노력</li> <li>•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개인 발전 기회 확보 노력</li> </ul>

- 1)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2)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

□ 고아 및 탈북주민 자녀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제도발전 소요

구 분	제도발전 소요
정책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홍보</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의 판단 식별</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의 복무 및 전역 이후 지원 대책</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관련 법령의 개정, 홍보</li> </ul>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복무 멘토링 시스템</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 특기 및 보직 부여 지침</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 복무 및 관리지침</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 복무 동기부여 및 전역이후 지원대책</li> </ul>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전제조건

-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의사결정에 앞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

구 분	전제조건
일반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li> <li>•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은 군 전력 강화에 대한 동의</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관련 정책적 검토사항 동의</li> </ul>
고아 및 탈북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과 수용 태도 유지</li> <li>•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유지 및 개인 발전 노력</li> </ul>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li> <li>• 병역의무 이행이 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긍정적 판단</li> <li>• 병역의무 이행 시 특기 및 보직 등의 규정화 공감 및 정책화</li> <li>• 병역의무 이행 시 복무지원 프로그램 시행 공감 및 정책화</li> </ul>
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 및 공감대 형성</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관련 법령의 개정</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판정검사 중 심리검사 관련 조항 등의 개정</li> </ul>
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관련 유관기관 공감대 형성</li> <li>• 병역의무 이행 시 주거 지원 공감 및 정책화(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li> <li>• 병역의무 이행 시 취업 등 지원 동의 또는 공감(고용노동부)</li> <li>• 병역의무 이행 시 경제적 지원 공감 및 정책화(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li> <li>• 병역의무 이행 시 학업 지원 공감 및 정책화 등(국방부, 교육부)</li> </ul>

## VI.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시 복무 적응성 제고방안

### 1. 병역판정검사

- 현재의 병역판정검사 절차에 따르되 고아 및 탈북주민 대상 심리검사 중요
  - 성장과정 등에서 형성된 트라우마 고려

### 2. 훈련병 교육

- 고아 및 탈북주민의 훈련병 교육 및 특기/보직(육군기준안)

구 분	초기단계(초기 3년간)	지속단계(4년차 이후)
입소지역	후방사단 신병훈련소	육군훈련소, 전후방 사단 훈련소
특기/보직	교육·기술·행정특기 위주	전투병, 비전투병

### 3. 보직 및 직무 부여

- 고아 및 탈북주민 특기 및 부대 배치(안)

구 분	초기단계(초기 3년간)	지속단계(4년차 이후)
근무지역	후방지역(학교기관, 군수지원부대 등)	전·후방 전 부대
특기/보직	교육·기술·행정특기 위주	전 병과/전 특기

### 4. 복무 적응 프로그램 개발

- 군 복무 멘토링 프로그램 운용, 복무 장병의 고충해소 창구 운용 등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구 분	프로그램	지원 사항	비고
학업지원	대학진학 지원	교육부 협의, 학업지원 연계	교육부, 국방부 협조
	대학학점 취득	사이버 대학 등 지원	
	대학학비 지원	정부 / 군 장학금 지급방안	
기술습득 지원	기술습득지원	특성화고, 기술고 등 출신	특기·보직고려
	자격증 취득지원	국가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장기복무 지원	장교·부사관·군무원 지원	복무우수자 선발 / 가점 부여 및 선발	규정화
자립 및 취업지원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지원대상 연계 지원방안 강구	보건복지부 계획 연계
	주택제공	LH임대주택 확대 제공	
	경제기반 강화	디딤씨앗통장 연계 또는 확대(고아 등) 미래행복통장(탈북주민)	

## Ⅶ. 결론 및 정책제안

### 1. 결론

####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의 부과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는 공정성과 형평성, 사회적 통합 차원 필요
-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사회통합의 하나의 과정
- 정부의 제도적 지원 못지않게 사회성 함양, 사회활동 공간의 확대, 사회통합 등을 위해서는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한 기회 확대 부여 필요

#### □ 연구의 결론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다만 고아는 발생 원인 및 현재 상태, 탈북주민은 한국입국 당시의 연령 및 정부보호기간 고려
- 병역의무부과는 전제조건을 충족할 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 초기단계는 후방지역의 육·해·공군 등의 학교 기관, 군수지원부대 등을 중심으로 부대 배치, 지속 단계에서 전·후방의 각급 부대로 배치
- 복무적응 제고 프로그램 개발 및 복무 이후 주거, 취업 지원방안 등의 제도화

### 2. 정책제안(추진과제)

####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기준

- 고아 : 발생원인 및 현재 상태 고려 부과
- 탈북주민 : 한국 입국 당시의 연령 및 보호기간 고려, 병역의무 차등화 부과

#### □ 법령의 개정

- 병역법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 부분개정
  - 탈북주민의 한국 입국 당시 연령 등 관련 사항 반영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항 제2호 : 부분개정
  - ‘라’ 목의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삭제 등

####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 병역의무부과 시기 : 전제조건 충족 시
- 병역의무 시행
  - 초기단계(3년) : 후방지역 위주 보직(학교기관 및 군수지원부대 등)
  - 지속단계(4년차 이후) : 전·후방 전 지역, 전투 및 비전투 부대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와 관련 추진과제

구 분	추진과제
병역의무 준비단계	① 정치권의 우호적 환경의 조성 및 법령의 개정 ②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 ③ 병역의무부와 관련 단체 등의 협조 ④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 및 사회통합 등의 기대효과 홍보 ⑤ 병역의무부와 시 특기 및 보직 운용 지침 마련
병역의무 이행단계	① 병역판정검사 확인 사항 보완 ② 입영관련 규정 등의 점검 및 개정 ③ 특기 및 보직 부여 및 근무지역 지침 마련 ④ 복무 병사 관리지침 마련
복무단계	① 복무 지원 멘토링 시스템 운용 ② 복무 여건 조성 ③ 학업 지원, 기술습득 지원 등의 복무지원 프로그램 마련 ④ 복무우수자중 부사관 및 장교지원 희망자에 대한 가점 부여 ⑤ 복무 병사 지원 체계 운용 ⑥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및 처리 등의 지침 마련
전역단계	① 자립 및 취업, 경제적 지원 ② 주거 여건 보장 ③ 복무 이후 지원 체계 운용 ④ 복무이행자 취업 지원(보호아동 및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 사업) ⑤ 복무우수자 선발, 대국민 홍보요원 등으로 운용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 배경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은 항상 사회적 관심사이자 국가 흥망의 열쇠와 연계될 수 있으며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평가하는 척도 중의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다. 병역의무의 부과가 공정하고 형평성을 유지하였을 때 국가와 사회는 발전하였고 강군을 육성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부과되었을 때는 부패하였고 국가는 외침에 시달렸다.

기원전 로마군이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로마군의 구성원이 병역을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으로 간주하였고, 로마인에게서 무기를 휴대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최악의 처벌이라고 할 정도로 로마군이 강하였을 때 최대의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다.

반면에 병역의무가 불공정하였을 때는 사회는 부패하였고 사회가 부패하였을 때는 병역의무 역시 불공정하였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조선 시대의 병역의무를 부과하였던 군역(軍役)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16~60세의 남자에게 일종의 병역의무인 군역을 부과하였는데 당시 나타난 상황을 보면 양반의 자제라고 해서, 승려라고 해서, 노비라고 해서 각각의 이유를 들어 군역을 기피하였고, 이는 결국 조선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면서 공정성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잦은 외침에 시달리면서 끝내 일제에 강제로 합병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그만큼 어느 국가에서나 병역의무의 부과와 이행은 공정성과 형평성의 유지가 중요하였으며, 지금은 사회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기준의 하나로 간주될 정도로 중요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은 사회적 의무의 이행 및 'Noblesse Oblige(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실천으로 평가되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다. 남북이 분단되어 첨예하게 대결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 불이행 또는 기피가 확인될

때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후보 자격 탈락 등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되고 있으며 그간 이러한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았다.

우리 사회가 다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대상자의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은 지금은 물론 향후 공직사회 진출에 있어 필수적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병무청이 병역명문가를 발굴하여 사회적 귀감으로 삼는 것이나 일부 지도층의 자녀가 자원하여 최전방 지역에서 근무하는 등 병역의무의 솔선수범 이행은 향후 한국사회의 긍정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의 또 다른 역할의 하나는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권력의 유무, 재산의 많고 적음, 학식과 학력 등에 상관없이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면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하는 커다란 문제의 하나는 저출산(低出生)<sup>3)</sup>으로 촉발된 인구절벽(人口絶壁) 현상<sup>4)</sup>으로 초고령 사회<sup>5)</sup>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활력의 저하, 경제력 약화 및 교육 현장에서의 붕괴 등과 더불어 군에서도 병역 가용자원의 감소로 병력 규모와 부대 축소 등을 추진하면서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병력 규모와 부대 수에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병력 규모와 부대 규모를 줄이는 이유가 바로 병역 가용자원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일정한 수준에서 병역 자원의 지속적인 확보는 향후 미래에 있어서도 국방 및 병무행정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동안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폐지, 병역특례제도 축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

3) '저출산'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통상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며, OECD 기준에 따라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 2.1명 이하이면 저출산(Low Fertility)으로, 1.3명 이하이면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으로 구분한다.(감사원,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원, 2021, p.11)

4)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380.2조 원을 투입하였다. 그렇지만 합계출산율이 2019년 0.92명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감사원,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원, 2021, p.2)

5) '초고령화'란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말하고, '고령화율'이라는 지표를 통해 한 국가의 고령화 수준을 파악한다. 유엔은 고령화율이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며, 고령사회에서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어 그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분류한다.(감사원,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원, 2021, p.19)

여군 인력확대 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고아 및 탈북주민은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대상이지만 신청에 의해 병역감면이 가능한데 이들에 대하여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찬성, 즉 병역감면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나 반대로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반대 즉 병역감면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에는 그들이 출생 이후 사회적 약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이나 냉대 등으로 인하여 학업, 구직 및 결혼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에 병역의무마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주장이 있다.

탈북주민은 북한에서 출생과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또는 형성된 여러 경험과 이념적 차이 및 굶주림과 폭력행위, 처형 등의 인권유린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트라우마, 한국 입국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정착과 성장 과정에서 문화적 충돌, 교육이나 경제력 등을 감안했을 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다.

이러한 주장과는 별도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으로 촉발된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병역 가용자원이 감소하면서 모병제 도입이나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등 다양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고아 및 탈북주민을 현재처럼 병역감면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해서도 일정한 여건이 조성될 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및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만큼 과연 이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디서 근무토록 할 것이며 어떤 동기부여책을 마련할 것인지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거나 부당하다면 왜 어렵고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타당성 있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아나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하더라도 병역 가용자원의 확보나 병역의 공정성, 형평성 제고 및 사회적 통합의 효과 등에 비하여 오히려 논쟁의 여지만 남기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 이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군의 견해는 어떤지를 알아보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면 어떤 조건과 여건 아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의 시행방안과 더불어 이를 적용할 경우에 복무 적응 프로그램 등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떤 조건아래서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그 방안과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에 복무 적응성 제고 프로그램 마련 등을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 1) 고아 및 탈북주민 현황과 실태 분석
- 2)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타당성 검토
- 3)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타당성 있을 시 방안
- 4)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복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 2. 연구 중점 및 범위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황과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석을 바탕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대안의 설정과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면 군에 복무할 경우에 복무 적응성 제고를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중점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 가. 연구 중점

- 1) 고아 및 탈북주민 현황과 실태 분석
- 2)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타당성 분석
- 3) 병역의무부과 기준 및 대안설정과 대안별 분석과 적용 조건
- 4)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복무 적응성 제고방안

## 나. 연구 범위

- 1) 한국 사회에서 병역의무의 의미와 중요성 고찰
-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외국의 사례
- 3) 고아 및 탈북주민 현황과 실태 분석을 통한 병역의무부과 가능성 분석
- 4)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타당성에 대한 분석
- 5) 병역의무부과 타당성 입증 시 대안 분석 및 조건설정
- 6) 병역의무부과 시 복무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시

## 3. 연구 방법

지금까지 신청에 의해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를 감면하였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병역의무 감면을 검토할 때 지금까지 감면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현행처럼 감면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한 논쟁적인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논문이나 설문조사 등이 전혀 없었지만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연구논문이나 설문조사 등은 제한적으로 있었다.

이는 그만큼 다른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부과에 비해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는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문헌 연구와 면담 조사, 이미 실시하였던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추가 설문조사 분석 및 자체토론 등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 가. 법령 및 문헌 등의 연구

- 1) 법령 :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병역의무 관련 사항
- 2) 문헌연구 : 고아 및 탈북주민관련 연구, 통계자료, 사회통합관련 연구 등
- 3) 사례연구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관련 외국의 사례

### 나. 인터뷰 및 면담조사

- 1) 병역의무부과 관련 고아 및 탈북주민 단체의 의견 청취

- 2) 병역의무부과 시 복무 여부에 대한 의견
- 3)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자 인터뷰

#### 다. 설문조사

- 1) 일반 국민대상: 설문지를 이용하여 병역의무 관련 설문 진행
  - 가)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및 이유
  - 나) 병역의무부과 시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 및 해소방안 등
  - 다) 학생, 회사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
- 2) 군 대상
  - 가) 간부는 고아 및 탈북주민이 군 복무할 경우 이들을 지휘하게 될 영관급, 위관급 및 부사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①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및 이유
    - ② 고아 및 탈북주민이 군 복무 시 지휘, 관리 및 보직 등에 관한 사항
    - ③ 군 복무 시 적응 프로그램에 필요한 내용 및 방법
  - 나) 사병은 병영생활을 함께할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①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및 이유
    - ② 군 복무 시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영생활관련 사항
    - ③ 고아 및 탈북주민 복무 시 지원 등 협조 관련 사항 등
- 3) 대상기관
  - 가) 일반 국민: 사전협조(회사, 공공기관, 학생 등)
  - 나) 군: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대학), 해군(해군대학), 공군(공군대학)
- 4) 그 외에 이미 실시하였던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 가) 병무청의 온라인 설문조사
  - 나) 남북하나재단의 설문조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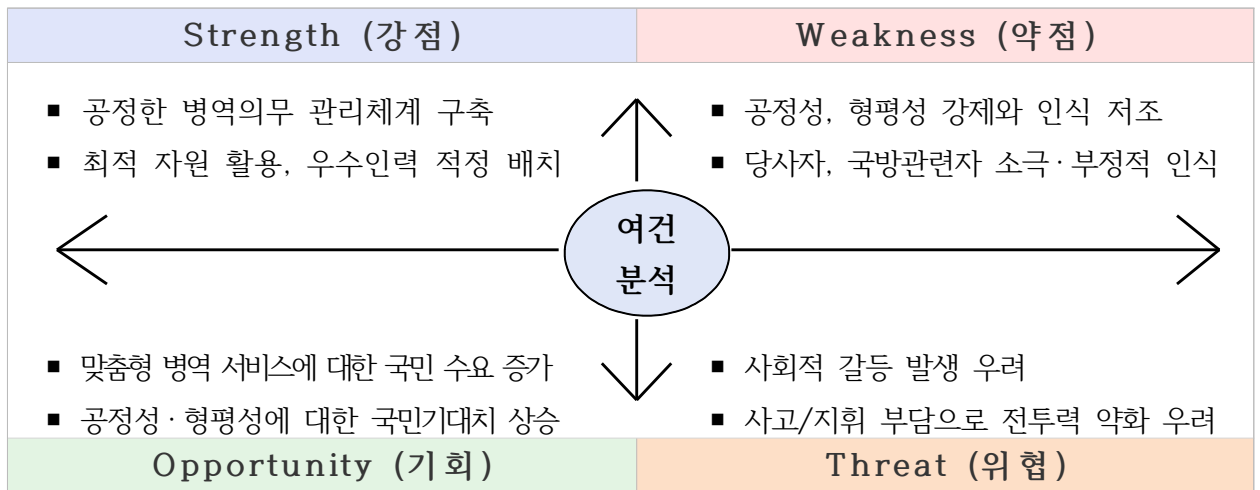
#### 라. 자체토론회

- 1)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 및 의견 수렴(코로나19 고려, 인원 제한)
- 2) 고아 및 탈북주민 관련단체, 병역관련 연구 교수 참여 자유토의식 진행

마. 연구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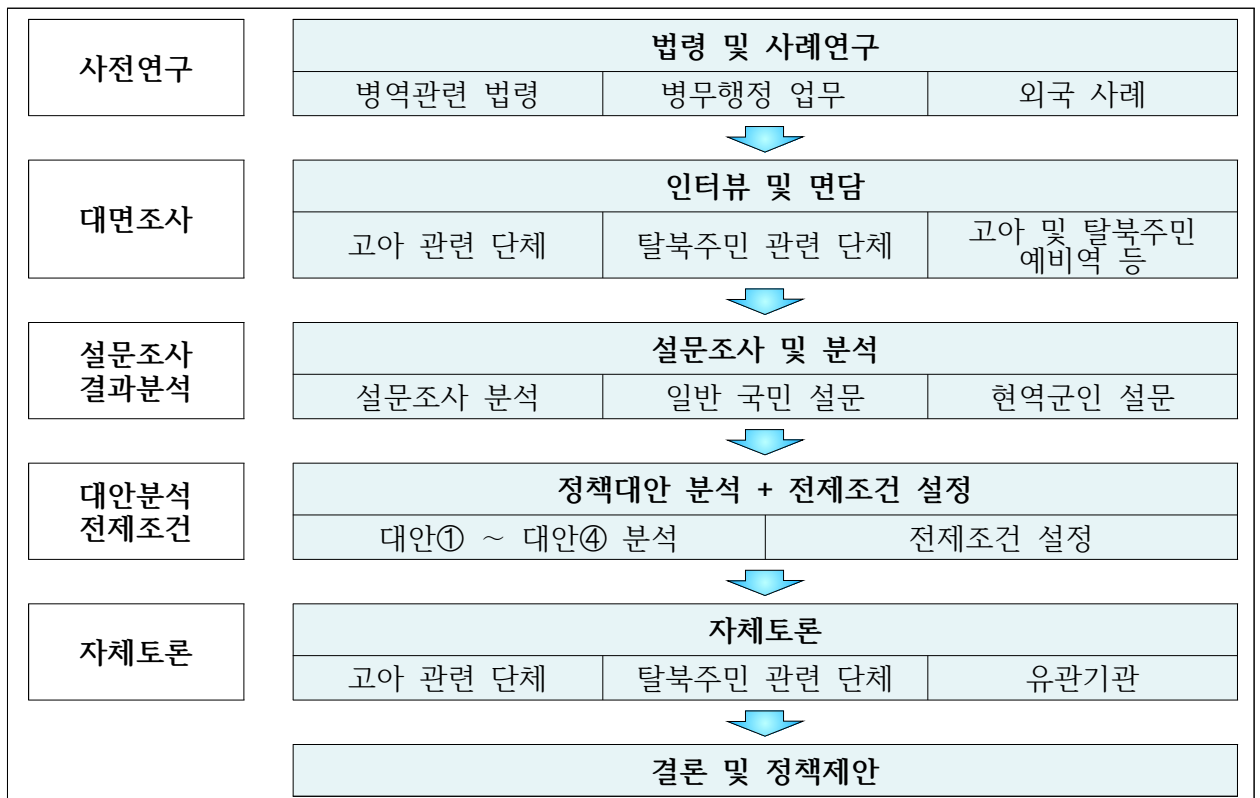
- 1) 연구의 타당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방법론 탐색 및 적용
- 2) SWOT 기법 적용 대안 수립 및 분석, 전략 수립 및 대비책 모색

<그림-1> SWOT 기법에 의한 연구



바. 연구흐름도

<그림-2> 연구흐름도



## Ⅱ. 병역의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사례 고찰

### 1.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는데,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그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외적(外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며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sup>6)</sup>

국방의 의무에서 핵심은 병역의무이다. 「헌법」 제39조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변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대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의 상시적 도발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역의무는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의무로서, 우리의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헌법」과 「병역법」에 명시하여 누구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병역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남성은 모두 병역의무의 대상이며 이것은 남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의무이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남성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이 의무이자 권리를 모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하며 이와 관련되는 대상자들이 이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사회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면서 발전하고 국방은 튼튼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군에 복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사회는 공정하게 발전하며 군은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는 모든 남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로서 병역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나 뚜렷한 법적근거 없이 의도적으로 기피할 경우 사회구성원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6) 헌법재판소(헌재 2004.10.28., 2004헌바61)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1999년 병역사항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이행률은 85.9%(본인 82.2%, 직계비속 89.5%)였지만 2014년 말에는 92.1%(본인 89.6%, 직계비속 95.6%)로 높아졌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역사항 공개 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도층이 되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면 갈수록 공직자의 기본 자격으로서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 2. 병역의무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자유 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sup>8)</sup>

병역의무는 일차적으로 국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중요성 외에 사회적 의미로서도 중요성이 있다. 병역의무는 국방의 관점에서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법적 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서는 정의, 공정 및 형평성의 실천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병역의무가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이행되면 그 사회의 공정성 및 공평성의 척도는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사회적 정의의 수준 역시 높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와 나아가서 미래로 갈수록 우리 사회가 더 공정과 공평을 추구하는 사회로 가면서 병역의무 이행이 이를 측정하는 지표(指標, Barometer)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특히 사회정의와 공평을 중요시하는 20대 MZ세대에서 병역의무 이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1>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평가이다.

7)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511291976947775](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511291976947775)(검색일: 2021. 7. 21)

8) 헌법재판소(헌재 2009.7.30, 2007헌바120)

<표-1>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병역의무 이행<sup>9)</sup>

(단위 : %)

구분	평균 (만점:4점)	전혀 공정 하지 않다	별로 공정 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2019	2.5	6.5	42.2	47.5	3.7
2020(Ⅰ)	2.7	3.4	34.6	54.7	7.3
2020(Ⅱ)	2.7	3.2	33.8	55.4	7.6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경성문화사, 2021, p.245.

위의 <표-1>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에 대하여 2019년에는 51.2%, (약간 공정하다: 47.5, 매우 공정하다: 3.7), 2020년(Ⅰ)에는 62%(약간 공정하다: 54.7%, 매우 공정하다: 7.3%), 2020년(Ⅱ)에서는 63%(약간 공정하다: 55.4%, 매우 공정하다: 7.6%)를 보이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교육기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의 평균 점수가 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병역의무 이행은 2.7점, 복지혜택과 성별에 따른 대우는 각각 2.6점, 취업 기회·과세 및 납세·지역 균형발전은 각각 2.5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sup>10)</sup>

병역의무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40% 내외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는 만큼 병역제도의 공정한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병역의무 이행의 또 다른 역할은 사회통합 기능으로서 역할이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사회구성원이 정체성을 갖도록 통합하는 일로서 사회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말한다.<sup>11)</sup>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이것이 악화되면 폭동과 소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갈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보통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 국민은 여러 사회갈등의 유형 중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인식(4점 만점에 평균 3.3점)하고 있으며, 이어서 빈곤층과 중/상층의 계층 갈등은 3.0점, 근로자와 고용주 간 노사갈등은 2.9점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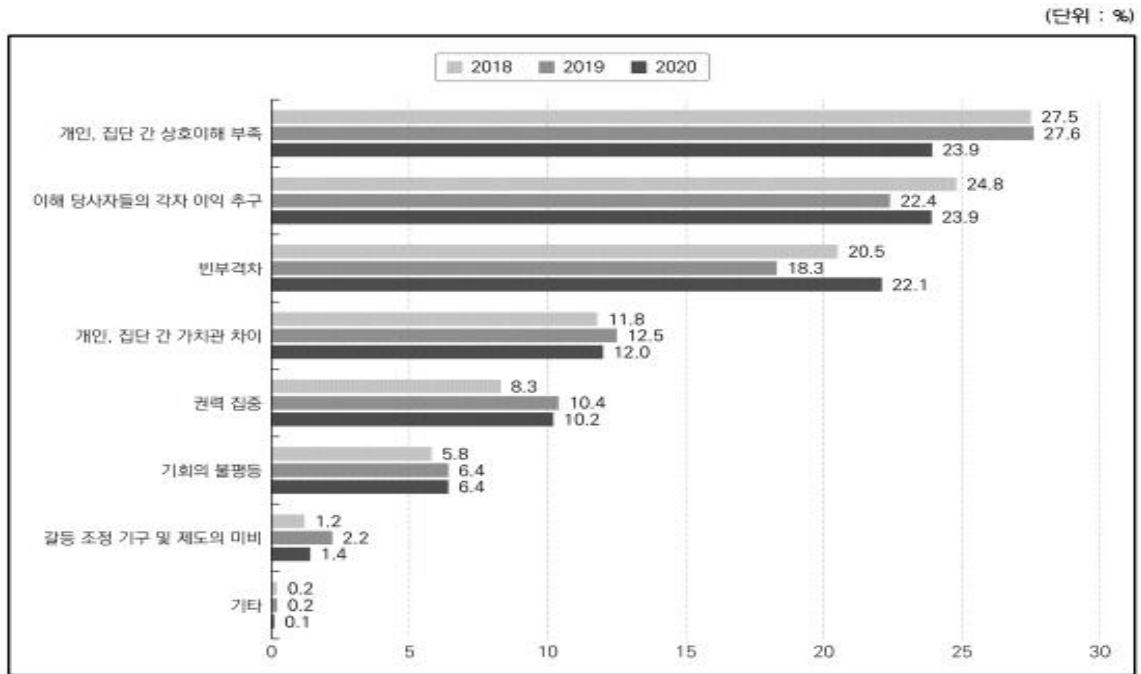
9) 2020(Ⅰ)은 만 19~69세 인구, 2020(Ⅱ)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집계한 수치임

10) 한국행정연구원,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경성문화사, 2021, p.65.

11) 정구진,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경인문화사, 2020, p.24.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국민은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이해 부족과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를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과 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과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가 각각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빈부격차가 22.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12)</sup>

<그림-3> 사회갈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경성문화사, 2021, p.70

병역의무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재산의 유무, 권력의 유무, 학력의 차이, 인종, 피부색,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차이와 관계없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대상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병역의무 이행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의 대표적인 실천으로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질문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스위스 등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몇몇의 ‘강소국(強小國)’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00여 년의 유랑의 역사를 지내면서 쓰라린 경험을 겪은 이스라엘은 1948년

12) 한국행정연구원,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경성문화사, 2021, pp.69~70.



5월 14일 천신만고 끝에 독립을 선언하였지만 주변의 아랍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독립전쟁을 하였다.

이후 수에즈 전쟁, 6일 전쟁, 욘 키푸르 전쟁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하였으며 매번 승리하였다.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병역의무와 동원 및 예비군 제도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며, 그 핵심은 누구도 예외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병역의무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만 1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며 남자는 32개월, 여자는 24개월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현역복무가 끝나면 제1예비역(동원예비군: 21~39세, 여자: 20~34세), 제2예비역(후방지역 방위, 남자: 40~44세, 여자: 35~38세)으로 근무하고 이후 민방위대원(45~54세)으로 복무해야 한다.<sup>13)</sup> 이스라엘에서 병역의무 제외 대상은 임산부, 아이를 둔 엄마, 종교적 이유자(초정통유대교), 원리주의자 등에 불과하다.

### 3. 병역판정검사 대상 및 판정

#### 가. 병역판정검사 대상

「병역법」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시작된다. ‘병역준비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각 군 모집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며,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나. 병역판정검사 판정 기준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신체검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신체적 여건을 검사하는 것으로, 국방부령 제1061호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한다. 신체검사는

13) 국방부, 『2017년 외국의 동원 및 예비군 제도』, 국군인쇄장, 2017, pp.202~203.

외과와 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심리검사는 임상심리사가 언행 관찰과 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표-2>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2021년)<sup>14)</sup>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병역처분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 시 근로역	병역 면제	재신체 검 사

- \* '21년부터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 \* '20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종전의 처분기준 적용
- \* 출처 : 병무청(<http://www.mma.go.kr/> 검색일: 2021. 7. 10)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하며,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하고, 현재 질병을 치료 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한다.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에서는 우리나라의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5)</sup> ‘현역(現役)’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을 말하며, ‘예비역(豫備役)’은 현역을 마친 사람과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보충역(補充役)’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14)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함  
 15) [HTTP://www.law.go.kr/](http://www.law.go.kr/)(검색일: 2021. 6. 10)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기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그 외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을 말한다.

‘전시근로역(戰時勤勞役)’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이나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전시근로역은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이미 지정된 부대로 전시근로소집계획에 따라 동원될 계획이다.

‘대체역(代替役)’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교도소 및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과 같은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하여 복무한다.

국방부령 제1061호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신체등급	판 정 기 준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출처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등급이 1~3급이라 하더라도 보충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2021년 2월 17일 이후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을 폐지하여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등급에 의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검토와 관련하여 먼저 다문화가족의 병역 의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표-4>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18.11월 기준)<sup>16)</sup>

(단위 : 명)

연도	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8	343,797	69,515	274,282	166,882	32,858	134,024	176,915	36,657	140,258
2017	330,188	65,507	264,681	160,653	30,745	129,908	169,535	34,762	134,773
2016	318,948	61,544	257,404	159,501	28,728	130,773	159,447	32,816	126,631

\* 출처 : 행정안전부(<http://www.mogef.go.kr/>, 검색일: 2021. 6. 20)

2010년 이전까지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였는데, 2010년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병역감면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피부색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이면 모두 병역의무를 지게 됐는데, 이는 다문화 가정 2세들의 병역의무이행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이 작용했다.<sup>17)</sup>

다문화 가정 청년들의 입대 추세를 분석한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1년 사이에 연평균 8,518명의 다문화 가정 청년들이 입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국군도 다문화 군대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여 국방부가 관련 대비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8)</sup>

16) <http://www.mogef.go.kr/mp/pcd/mp/>(검색일: 2021. 7. 29)

17) <http://news.kmib.co.kr/article/>(검색일: 2021. 7. 29)

18) [HTTP://www.yna.co.kr/](http://www.yna.co.kr/)(2021. 7. 29)

<표-5>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18.11월 기준)<sup>19)</sup>

(단위 : 명)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6세 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8	237,506	114,125	92,368	19,164	11,849
2017	222,455	115,085	81,826	15,753	9,791
2016	201,333	113,506	56,768	17,453	13,606
2015	197,550	116,068	61,625	12,567	7,290

\* 출처 : 행정안전부(<http://www.mogef.go.kr>, 검색일: 2021. 6. 20)

위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 가족 병역의무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향후 군 복무를 하게 될 인원의 10% 정도가 다문화 가족의 자녀로 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있다.<sup>20)</sup>

#### 다. 병역감면 대상

‘병역의 감면’이란 법령상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병역의무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다. 병역면제의 요건에는 병역판정검사의 결과로 면제되는 대상(6급)이 있고,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이 면제되는 대상이 있다. 이 가운데 신청에 의해 고아는 전시근로역 편입, 탈북주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

<표-6>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처분 대상

구 분	내 용
전시근로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li> <li>•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li> <li>•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li> <li>•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li> </ul>
병역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li> </ul>

\* 출처 : 병무청([HTTP://www.mma.go.kr/](http://www.mma.go.kr/), 검색일: 2021. 6. 20)

19) <http://www.mogef.go.kr/mp/pcd/mp>(검색일: 2021. 7. 29)

20) "향후 10년 군대 입영할 다문화 병사, 전체의 최대 10%"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newsisis.com)

위의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아는 전시근로역 대상이고 탈북주민(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면제 대상이다. 고아나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 또는 탈북주민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다.

고아나 탈북주민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심사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시근로역’이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전시 군사작전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면서 필요 시 전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고아는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 서류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데, 고아를 전시근로역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들이 출생 및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사회적 인식 및 편견의 존재, 군복무 중 병영생활이나 훈련 등을 받는 과정에서의 위험성 등으로 군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잠깐 고아의 병역관련 연혁을 보면, 1974년도에는 전쟁고아나 편부모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소외감이나 열등의식 등 성격적 결함의 가능성에 따라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현역에서 배제(보충역 편입)하도록 하였으며,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5년 이상 재원한 사람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1978년에는 고아를 보충역 처분에서 방위소집을 면제토록 하였고 1983년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5년 이상 재원한 사람 중 ‘부양할 가족 유무’ 요건을 삭제하였고, 1984년에는 고아 등의 병역감면 근거를 병무청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007년에는 병역감면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현역 또는 사회복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1)</sup>

2009년에는 병역감면 대상을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5년 이상 재원자까지 확대하였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신청에 의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 감면은 출생이후 성장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집단적인

---

21) 병무청 자료

군 생활의 특성 등을 감안할 경우 이해는 되나, 병역 감면에 대해 국회에서도 일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sup>22)</sup>

병역가용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과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의 원칙을 준수 하면서 병역감면 대상의 축소를 유지하려는 정책 기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인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요구에 따라 병역감면의 축소 또는 부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7>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감면 처분 현황

(’21. 9월 30일 현재, 단위: 명)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8월
고아 (전시근로역)	675	635	670	705	784	745	703	617	364
탈북주민 (병역면제)	280	298	190	213	180	149	200	160	54

\* 출처 : 병무청 자료(2021. 10)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관련 처분사항의 변화를 보면, 탈북주민 병역면제 규정은 1960년대 「병역법」 신설 당시 자발적 탈출자들에 대한 시혜조치로써 도입되었으며, 사회이념이 다른 체제에서 성장한 자들에 대한 배려차원이었다. 1962년 미수복지구의 징병적령자 및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해 온 징병적령자에 대하여 징집연기와 면제토록 하였다(「병역법」 제48조). 1970년에는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자,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하여 온 자를 역시 징집연기와 면제토록 하였으며(「병역법」 제25조), 1983년에는 미수복지구에서 이주하여 온 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 병역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병역법」 제56조).

1993년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온 사람은 제1국민역 병역면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병역법」 제64조), 2017년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신청에 의해 병역면제를 하되, 병역면제자가 현역 등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의 변경이 가능토록 하였다.(「병역법」 제65조)

탈북주민은 북한지역에서 출생 이후 성장과정에서 받은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소년단과 학교교육 등을 통한 왜곡된 교육과 사상적 이념의 주입,

22)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07232.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07232.html) 2013년 10월 15일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김00 의원은 “최근 4년간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1,954명 가운데 5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 등록해 면제를 받는 자가 꾸준히 증가해 1,833명(93.8%)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시설 5년 요건의 경우 단순 경제적 사유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재원 후 퇴원해 가족과 동거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이다.

탈북이후 제3국을 거치면서 입국하기까지의 굶주림과 질병 등의 고생, 한국 입국 이후 학업이수 및 경제적 어려움과 차별 등 여러 어려움을 고려하여 병역을 면제하였다.

현재 탈북주민은 병역의무부과 대상이지만 신청에 의해 병역면제 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탈북주민에게 병역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출생 및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 또는 축적된 트라우마, 탈북이후 한국에 정착한 기간 및 학력의 격차 등의 문제, 군 복무 시 야기될 수 있는 편견이나 갈등 발생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 우려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병역법」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에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의 병역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탈북주민의 경우 18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며, 원칙적으로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병역의무가 있다. 다만, 현재는 탈북주민 본인이 원하면 병역면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후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하는데 대부분이 병역면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회 등에서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고아는 무조건 병역을 전시근로역 편입하는 것이나 탈북주민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처분이 타당한지 논쟁이 제기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병역의무의 공정성, 형평성 및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여건과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것이다.

현재 귀화자(歸化者)도 병역의무부과 대상이지만 신청에 의한 전시근로역 편입이 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었다.<sup>23)</sup> 이 연구에서는 귀화자가 언어구사 능력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조치이며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귀화자는 군 복무 중 언어구사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대 배치와 보직에 대한 개인희망 반영, 귀화자 멘토링 시스템 구축, 장병들의 다문화 수용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귀화한 사람들은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하는데, 이들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연구는 논문의 형태로 수차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23) 신다윗 외, “귀화자 병역의무 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6권 제3호(통권 129호), 2020년 가을, pp.323~324.



부과가 종교 또는 도덕적인 등의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꺼려지는 언어표현 즉, 금기어(禁忌語)가 아닌 이상 검토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아 및 탈북 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의 검토 역시 금기어가 아닌 이상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정책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일환이다.

이와 같이 현재 병역의무부과 대상자는 일반 국민의 자녀 외에 다문화 가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귀화자도 고아와 탈북주민처럼 병역감면 대상이 타당한지 아니면 병역의무의 공정성, 형평성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병역의무 부과가 타당한 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외국의 사례

### 가. 병역제도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획득·활용하는 병역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떤 형태의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국가의 체제와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한 나라의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지정학적 여건과 상대 적국(敵國)의 동향 및 정치·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국민성 및 사회·문화·풍토·전통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책적으로 결정된다.<sup>24)</sup>

다른 주장으로, 한 나라의 병역제도는 그 나라가 처하여 있는 안보 상황과 위협 요소, 경제력, 국민의 정서, 군 구조와 무기체계 운용 등 여러 요인의 결합으로 이뤄진다.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소이며 주변국의 안보위협과 경제력은 물론 국민의 정서, 군 구조 등도 역시 병역의무 제도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그러나 병역제도는 불변이 아니다. 안보위협이 변화되거나 국회 등의 정치적 요구,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거나 인구변동 요인의 발생, 병역자원 공급 능력 등의 경제적 요인, 군 구조 및 무기체계의 발전 등에 의해 변화 가능한 것이다.<sup>25)</sup> 이와 같이 병역제도는 다양한 영향요소의 결합으로 결정된다.

그 외에 현재는 우리나라가 직면하는 저출산으로 촉발된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가용 자원의 감소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24)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46](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46)(검색일: 2021. 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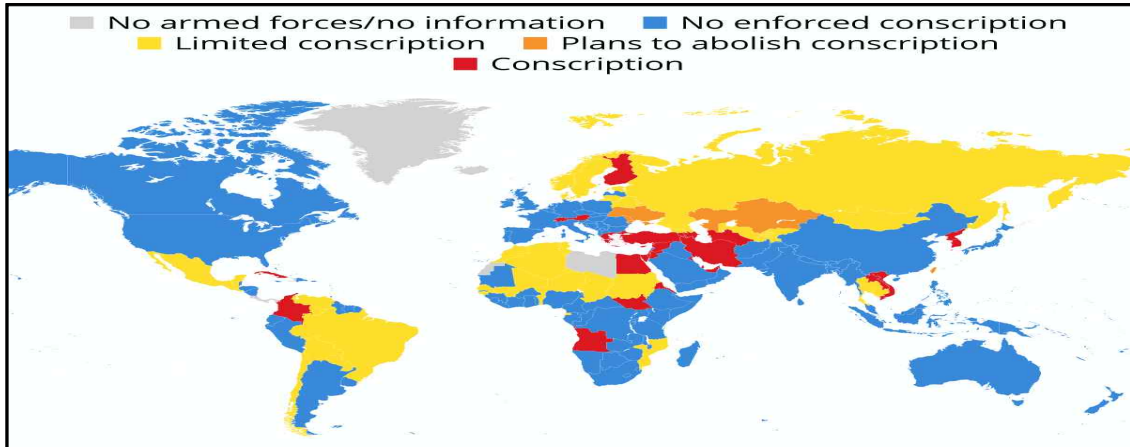
25) 송운선, 『한국군 병력충원과 정책혁신』, 하음출판사, 2020, p.41.

이러한 병역제도에는 징병제와 모병제,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하는 제도가 있다. ‘징병제(Conscription System)’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병역에 종사해야 하는 제도로, 개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모병제(All Volunteer Military System)’란 지원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를 말한다.

징병제는 주로 분쟁위협이 높은 국가, 역사적으로 주변국과 분쟁이 많은 국가, 주변국과 긴장관계로 상시 전투준비태세가 필요한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이나 이스라엘, 베트남, 터키 등의 국가가 대표적이다.<sup>26)</sup> 반면에 모병제는 징병제와는 달리 전쟁의 위협이 낮은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병역제도를 선택함에 있어 국가가 처해 있는 안보위협이나 경제력, 국민정서 등 제반 요인이 고려되기 때문에 어느 제도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 병역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의 <그림-4>와 같다.

<그림-4> 세계의 병역제도



\* 출처 : <https://www.statista.com/chart/3907/the-state-of-military-conscription-around-the-world/>(검색일; 2021. 7. 28)

위의 나라를 보면, 징병제는 베트남, 핀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이스라엘, 콜롬비아, 한국 등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고 모병제는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징병제를 폐지하려는 국가도 있다.

26) 김신숙,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2020, 천광문화사, 2020, p.9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역제도는 국가의 제반 여건에 따라 다르며, 징병제와 모병제는 각각의 장점 및 단점이 있다. 다음의 <표-8>은 징병제 및 모병제의 장·단점 비교이다.

<표-8> 징병제 및 모병제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징병제	· 병력의 충원 용이 · 낮은 비용으로 대군 유지 용이 · 대규모 예비전력 유지 용이 · 병역의무의 존엄성 유지 용이	· 국민의 부담 가중 · 소극적 군 복무 자세 견지 · 전문적 숙련병 확보의 어려움 · 국민의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
모병제	· 적성 고려 지원으로 전투력 강화 유리 · 병역의 형평성 유지 용이 · 적극적 복무자세 견지 · 숙련병, 첨단기술병 등의 확보용이 · 군 전체의 전문직업군화 촉진	· 국민의 군에 대한 무관심 초래 · 병력 유지의 어려움 증가 · 병력 수요 충족의 어려움 우려 · 유사시 예비전력 확보의 어려움 · 우수인재 획득의 어려움 증가

\* 출처 : 김신숙,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천광문화사, 2020, p.89~104에서 재정리 및 보완

본 연구에서 고아와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징병제하에서의 병역의무부과에 관한 것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9>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시 예상되는 장·단점

장 점	단 점
·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기여 · 사회성 형성 및 강화에 기여 · 탈북주민의 한국인 정체성 강화 · 주권 행사에 대한 자부심 부여 · 예외없는 병역의무 원칙 기조 유지	· 병역의무부과 시 사회적 논쟁 발생 · 군 지휘관 및 지휘자 지휘부담 가중 ·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 증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논란 · 약자의 사회성 및 강화 기회 박탈

\* 출처 : 연구진이 정리한 것임

따라서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나. 사회적 약자와 병역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사례는 원칙적으로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모든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가?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약자(Socially underprivileged)’란 사회적으로 생존하고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보면 신체적 요인으로 인하거나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sup>27)</sup>

신체적 요인은 출생 당시부터 또는 성장과정에서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으로, 영유아나 청소년 및 노인, 장애인 등이 해당되며, 경제적 요인에 의한 사회적 약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의 획득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저소득층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화적 요인에 의한 사회적 약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경제적인 이유이든 종교나 인종, 전통적 관습 등 기타 어떤 이유로든 그 사회에서 부당한 차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외와 관련된 요인으로서 발생하는 약자이며, 이주민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는 이러한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상호 중첩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약자의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 권력적 약자는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소수자 등을 말한다.

고아를 보면, 출생이후 및 성장과정에서 과거 보육시설 등에서 성장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차별로 인한 트라우마, 문화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탈북주민의 경우 역시 북한지역에서 출생 및 성장기간 중 어려움이나 한국 입국 이후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른바 경제적·문화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27) 이종재 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정책론』, 학지사, 2020, p.13.

<표-10> 사회적 약자의 유형

구분	신체적 약자	권력적 약자	경제적 약자	문화적 약자
예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약자, 유아 등	외국인, 성소수자, 병역거부자	비정규직, 도시 빈민,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외국인, 혼혈인, 종교적 소수자

\* 출처 : 이종재 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정책론』, 학지사, 2020,  
p.13~14를 기초로 연구자가 정리

병역제도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위의 사회적 약자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운데 신체 및 정신적 약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병역의무를 법적 제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위의 사회적 약자 유형에 의하면 고아는 사회적 편견과 냉대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 또는 축적되었을 여러 정신적 트라우마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두는 아니 겠지만 경제적, 문화적 약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주민은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만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사례를 찾을 수는 없다. 탈북주민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이전이나 입국 이후 정착기간 중 형성되었을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모두를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신체적·정신적, 경제적·문화적 약자의 유형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sup>28)</sup>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는 고아나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를 검토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고아 및 탈북주민으로서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국민처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의무부과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사례를 찾기 위하여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라고 해도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먼저 이스라엘의 사례이다.

28) 이종재 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정책론』, 학지사, 2020, p.168. 탈북주민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치적 영향에 의한 사회적 약자라는 주장도 있다.

####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사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 연간 166억 달러(2021)라는 막대한 국방비를 사용하는 중동의 강소국으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면서 주변국의 침공에 맞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독립을 유지하면서 주변의 아랍국의 침공에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병역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스라엘 병역제도는 1949년에 제정된 「방위복무법(Defence Services Law)」에 의하여 국민개병제를 바탕으로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신체가 건강한 남녀는 18세가 되면 남자는 32개월, 여자는 24개월 복무한다. 이렇게 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상비군(175,000명)으로서 전시에는 예비군(465,000명)이 동원되기 전까지 전쟁역제력 및 응징보복력으로서 역할을 한다. 병역의무 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연시하는 이스라엘에서는 고아 등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병역의무부과에서 면제한다는 규정도 없고 사례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면제 대상은 의학적 또는 심리적 이유, 결혼 또는 임신 또는 부모(여성만 해당), 종교적 사유(여성만 해당), 양심의 이유로 면제, 예시바에서 공부하는 학생(정통파 유대인), 범죄 기록소지자 등이다.<sup>29)</sup>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서는 고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병역면제 규정이 없으며, 여성의 일부나 종교적 및 민족적 이유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30)</sup> 이스라엘에서는 아랍국에 포위되어 있는 안보상황과 지속되는 테러 등의 위협아래서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병역의무를 제외하지 않으며 또한 일반적인 특례제도나 병역대체복무 제도도 없다. 아울러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없다. 이것은 병역의무 이행을 국토방위를 위한 특권이자 자랑스러운 문화로 여기는 이스라엘 국민의 인식에 기인한다.

오히려 신체적 장애로 군 복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사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도록 할 정도로 병역의무부과에 관한 한 사회적 약자라고 예외적 규정이 없다. 예를 들면, 특수한 능력이 있는 일부 자폐증 병사들이 근무하는 9900부대(Unit 9900)가 있는데, 이 부대에서는 자폐증 병사들이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sup>31)</sup> 그 외에도 Uniform in

29)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나 총원과잉으로 인하여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자는 병원이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며 기간은 1년이다. 주로 여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30) 국방부, 『2017년 외국의 예비군 및 동원제도』, 국방부, 2017, p.201.

Special<sup>32)</sup>, Roim Rachok<sup>33)</sup>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그들의 능력 범위에서 이스라엘의 국가안전보장과 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체 장애인도 지원하여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징집 탈락자들이 왜 군에 갈 수 없는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병역특례제도나 대체복무제도도 유지하지 않는 이유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국민성과 군대문화를 고려해 볼 때 고아라고 해서 병역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스라엘군은 의무복무 후 제대하는 장병의 경제적 독립과 민간직장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개의 지역본부와 53개의 청소년 센터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취업 지원, 교육훈련 지원,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역과 동시에 600만여 원 수준의 전역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이 참고할 이스라엘의 병역제도로 이스라엘 국방군(Israel Defence Forces)의 'Lone soldier(외로운 병사)'<sup>34)</sup>가 있어 간단히 소개한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국적자는 아니나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의 서방국가는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의 동구권 국가에서도 단지 유태인으로서 동질성 또는 정체성에 따라 자원하여 이스라엘군에 복무하는 병사들을 말한다. 현재 이스라엘군에는 약 7,000여 명의 lone soldier가 있으며, 지원자 가운데는 남성은 물론 여성도 있다.<sup>35)</sup>

지원자의 40%는 전투 병력으로 기갑여단이나 기계화 보병여단 등에서 근무하며 그 외에 비전투 병과에도 근무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와 군에서는 외로운 병사가 복무기간 중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의 시설을 제공하며 급여지급 등 여건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민간 비정부기구(NGO)에서는 외로운 병사와 이스라엘 가족을 연결시켜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복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sup>36)</sup>

싱가포르의 작은 나라이고 주변에 싱가포르의 안보 위협이 될 만한 국가도

31) 노석조,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주)메디치미디어, 2018, pp.18~21. 9900 부대는 위성과 항공기의 지리적 데이터를 포함한 시각적 정보를 수집하고 군대와 의사 결정자를 위한 이러한 정보를 분류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2)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동료들과 함께 이스라엘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4년간의 훈련 프로그램 운용

33) 자폐증이나 기타 학습 장애와 같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IDF에 통합하도록 설계, 자폐증 아에게 데이터 분석 및 분류작업 부여,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스라엘 안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34) <https://www.nbn.org.il/nbnlsp/>(검색일: 2020. 4. 26)

35) [https://sso.agc.gov.sg/Act/EA1970\(ENLISTMENT ACT](https://sso.agc.gov.sg/Act/EA1970(ENLISTMENT%20ACT)): 검색일: 2021. 5. 31)

36) <https://lonesoldiercenter.com/about-us/who-are-lone-soldiers/>(검색일: 2021. 7. 29)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의 강소국으로서 연간 107억 달러(2021)라는 막대한 국방비를 사용하면서 72,500여 명의 상비군을 유지하는 등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 「병역법(Enlistment Act)」에서는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남자는 병역의 대상이 되고 이는 16.5세로부터 40세까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세에 입대하여 2년간 복무하며 21세에 전역한다. 병역 면제자에 대한 규정은 「병역법」 2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권한을 보유한 당국은 「병역법」에 따라 그 개인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병역의무부과에서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sup>37)</sup> 다만, 군복무에 부적합한 정신질환자 등은 병역의무에서 제외하며, 이러한 대상자는 일정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직후인 1967년에 의무 병역제를 도입해 모든 남성은 19세가 되면 군이나 경찰, 소방대 등에서 2년을 복무해야 한다.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의 2세까지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며,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거나 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현역복무를 해야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병역복무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원칙이 무너지고 그러다보면 원칙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한다.<sup>38)</sup>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외에도 세계의 몇몇 강소국을 보면 예외없이 병역 의무에 있어 모두에게 법 앞에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상비군으로 복무를 하지 않을지라도 법에 규정한 다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같음한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안보환경이나 위협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런 만큼 「헌법」에서는 국방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안보 현실에서 생존을 위한 사항을 「헌법」과 「병역법」에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약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약자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는데 이는 신체는 건강하지만 고아와 같은 약자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와는 다른 이야기이다.

37) [https://sso.agc.gov.sg/Act/EA1970\(ENLISTMENT ACT](https://sso.agc.gov.sg/Act/EA1970(ENLISTMENT_ACT)): 검색일: 2021. 5. 31)

38) <https://news.kbs.co.kr/news/>(검색일: 2021. 7. 29)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의 병역환경을 보면 병역가용 자원이 계속 감소되는 상황에서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이 반드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어야만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향후 전장환경을 추측해 보면, 4차 혁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인터넷 기반 데이터관리(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을 통합한 플랫폼이 등장하여 전장의 양상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에 적합한 자는 군에 복무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 때문이다.

전투병으로서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군에 입대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손가락 사용이나 보행 등 일부 신체가 부자유스럽다고 할지라도 특정분야에서 지적 능력이 월등하여 군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부합되며 나가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여성도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나오는데,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일부의 신체장애를 갖는 사람들을 병역의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병역의무의 공정성 및 형평성, 사회통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체가 강건한 병사를 더 많이 전투병으로 전투부대로 보낼 수 있다. 이스라엘의 9900부대에서 자폐증 병사들이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를 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사항이다.

### Ⅲ. 고아 및 탈북주민의 현황 및 실태 분석

#### 1. 고아 등 현황 및 실태 분석<sup>39)</sup>

##### 가. 총괄

통상 고아(孤兒, Orphan)는 출생이후 성장과정에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즉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를 일컫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6.25전쟁 당시 부모가 사망하면서 10만여 명에 달하는 전쟁고아들이 생겨났고 고아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일부 연고가 없는 고아들이나 특히 혼혈 전쟁고아들의 경우 계속 고아로 남으면서 한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아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고 이 시기에 고아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인식이나 편견이 심화되었으며 연고가 없는 경우에 취업은 물론이고 결혼도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부모가 없이 자라면서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지만 오히려 냉대를 하고 편견을 가지면서 고아들은 인생의 낙오자이면서 패배자가 되는 경향이었으며, 그러한 사항은 병역의무 이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 사회에서는 한때 고아에 대하여 냉대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현재는 복지제도와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부정적인 인식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고아가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을 키워주는 부모를 잃었거나 버려져 교육을 못 받아 다른 평범하게 자라는 아이들에 비하여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사회의 그릇된 인식 또는 편견 때문이었다.

유년시절에 부모가 없는 상대적 박탈감을 절실히 느끼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어렵게 학교를 졸업한 후 학군장교(ROTC)를 지원하였지만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합격한 경우도 있고,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 좌절과 분노만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39)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kadoption.or.kr/>: 검색일: 2021. 4. 25); <https://kosis.kr/statisticsList> (2021. 4. 26)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줄 사람이 없어서 사회적 약자가 되기 쉽다. 친지나 친척 등 고아들을 돌보아 줄 가까운 사람에게 입양되는 조치가 있다면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심리적·교육적인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인이 원하여 된 것이 아님에도 고아는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이었고 그들을 보듬어 주지 못하면서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 하였던 적이 있었다.

고아는 병역법상 병역의무부과 대상이지만 신청에 의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고아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여야 하는데, 첫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둘째,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셋째,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 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천애고아(天涯孤兒), 이 세상에 살아 있는 핏줄이나 부모가 없이 오직 자기 혼자 남겨진 고아보다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이유나 가정적인 불화로 학대를 받아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분리시켜 놓고 보육시설 등에서 보호되는 아이나, 부모가 서로 아이의 양육을 기피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 맡겨지는 이른바 '이혼 고아'도 많다.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조치아동의 발생은 아동학대, 부모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sup>40)</sup>

지금은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미혼모 등이 몰래 아이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든 다시 찾아줄 정도로 복지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연고 없는 고아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대신 가정적, 경제적, 법적인 문제로 양육권을 포기 하면서 발생하는 보호대상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음의 <표-11>을 보면 발생 원인이 부모의 사망과 같은 이유보다는 학대, 이혼 등 과거와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40) 본 연구에서는 ‘고아’의 개념을 ‘보호대상아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구한다. 그 이유는 연구의 제목인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발전방향’ 연구와 연계를 고려하였다.

<표-11> 고아 등 성별 현황 및 발생원인별 분류

(단위 : 명)

구분	성별			발생원인별								
	계	남	여	유기	미혼 부모	미아	비행 가출	학대	부모 빈곤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2019	4,047	2,135	1,912	237	464	8	473	1,484	265	297	83	736
2018	3,918	1,914	2,004	320	623	18	231	1,415	198	284	92	737
2017	4,125	2,080	2,045	261	847	12	227	1,442	223	279	87	747

\* 출처 :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김우림, 『보호대상아동지원사업』, 국회예산처, 2021, p.10에서 일부 재인용.

가장 최근의 2019년 통계자료를 보면 그 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양육시설 등을 모두 포함)은 4,047명이다. 이 중에서 학대로 발생한 원인이 가장 높다(1,484명). 부모이혼으로 인한 인원이 736명, 비행가출한 인원도 473명으로 적지 않다. 미혼부모 및 혼외자인 경우가 464명, 유기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237명이다. 부모사망에 의한 경우는 297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다.

위의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에는 본래 의미의 고아, 즉 부모의 사망으로 돌볼 수 없는 아이들보다는 연고자가 있는 고아가 오히려 많은 상황이다. 보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이 '부모가 사망한 불쌍한 아이(본래의 의미에서 고아)'가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나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버림받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발생하는 아이'가 다수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 대안에서 이를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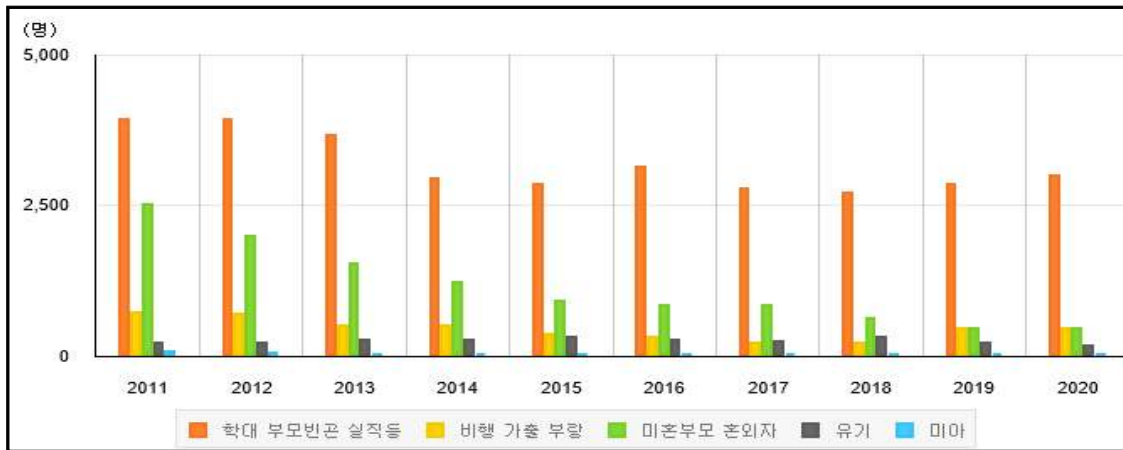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보호 대상 아동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호대상 아동 수는 총 12,085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보면, 2018년 3,918명, 2019년 4,047명, 2020년 4,120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보호조치 발생 원인은 아동학대가 4,6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이혼 등(2,178명), 미혼 부모·혼외자(1,550명), 비행·가출·부랑(1,172명), 부모 사망(860명), 아동 유기(729명), 부모 빈곤·실직(644명), 부모 질병(249명), 미아(37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보호 대상 아동은 만7세 미만인 미취학 아동이 38.9%(4,703명)로 가장 많았고, 만13세~만19세가 31.5%(3,808명), 만7세~만13세가 29.5%(3,574명)로 조사되었다.<sup>41)</sup>

다음의 <그림-5>를 통하여 2010년 이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원이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학대나 빈곤, 실직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다수가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5>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



\* 출처 :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potal/main/>, 검색일: 2021. 7. 29)

이렇게 발생된 아동들은 정부 및 자치단체 등의 보육 또는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하거나 또는 개인 가정에 위탁이나 입양 등의 형태로 맡겨져 양육되며, 그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2>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4,503	4,583	4,125	3,918	4,047
시설보호	2,682	2,887	2,421	2,449	2,739
가정위탁	1,582	1,447	1,417	1,294	1,199
입 양	239	243	285	174	104
소년소녀가장	0	0	2	1	5

\*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www.index.go.kr/potal/main/>: 검색일:2021. 10. 10)

41) <https://blog.naver.com/coq/222510602183>

이렇게 보육 또는 양육시설에 맡겨져 양육되거나 개인 가정에 맡겨져 양육되면서 따뜻하게 양육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아동학대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일명 ‘정은이 사건’ 등 최근에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보육시설이나 양육시설 또는 개인 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이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 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sup>42)</sup>

### 1) 관련법령

아동관련 법령은 「아동복지법」, 정책관련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과 등)이다. 여기서는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아동복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서비스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조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국내외 입양 제도개선 및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국내외 입양 실태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지원조직과 업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도 및 감독하는 공공부분 전달체계와 민간위탁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부분 전달체계로 이원화 되어 있다.

공공부분 전달체계인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정책 결정, 예산지원, 연도별 아동분야 사업 작성 및 시달 등 보호대상아동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며 지역 내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의 아동복지사업을 지도 및 감독한다.

종전에 민간부분 전달체계로서 중앙입양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운용되던 민간부분의 전달체계가 「아동복지법」이

42) 김우림, 「보호대상아동지원사업」, 국회예산처, 2021.

개정되면서 2019년에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과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지원,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등 아동의 권리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sup>43)</sup>

<표-13>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위기아동 발굴	아동학대	가정위탁	입양	자립지원	취약계층 아동
정보 시스템	e아동 행복지원 시스템	국가아동 학대정보 시스템	가정위탁 전산 시스템	입양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자립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행복e음 시스템
관리주체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보장정보원	
연계정보	학생장기 결석현황, 예방접종 정보 등	APO(학대 예방경찰관) 업무관리 시스템	-	-	-	-
비고	2022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 출처 : 김우림,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1, p.24.

보호대상아동 관련 정보 시스템은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곳에서 하고 있으나 이는 2022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되어 통합관리가 될 예정이다.

### 3) 주요 사업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시설에서 나온 뒤의 어려움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생활을 위한 생계비 등의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의 주요 재정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의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43)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129&cntntsId=1105>(검색일: 2021. 8. 1)

<표-14> 보호대상아동 관련 주요 재정사업

구 분		주요 재정사업	
정책추진체계		아동권리보장원 운용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및 교육	
아동보호시설 구축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보호대상 아동지원 사업	보호대상 아동 유형별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위탁	가정위탁 지원 및 운용
		입양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보호대상아동 일반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사업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발달지원 계좌 도입

\* 출처 : 김우림,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1, p.27.

정부는 고아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이 주도하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기본방향은 보호아동이 충분한 자립준비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영역별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및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하여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5>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주요 추진 내용<sup>44)</sup>

구분	추진과제 / 내용
보호받을 권리	· 보호종료 연령: 18세 → 24세(본인의사에 따라) · 보호연장기간 생계급여 지급 검토 ·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
소득 및 주거 안전망 강화	· 자립수당(30만원) 지급대상기간 연장: 3년 → 5년으로 연장 ·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 비율 확대: 1:1 → 1:2 · LH임대주택 확대 지원, 대학가 등 신축임대주택 공급 확대 · 군 복무로 불가피한 경우 보호종료기간 5년 이내 불산입 ※ 국무조정실에서 제도화 발표(2021.7.)

4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0070>(검색일: 2021. 8. 2)



자립전담기관 및 인력 확충	· 전국 단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자립전담지원 인력 확충: 생활 및 주거, 진로상담 등
진로 및 진학, 취업 등 역량 강화	· 대학과 협의, 사회적 배려차원 선발 확대 ·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강화, 행복기숙사 입소 확대 · 교육부 연계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 운영, 학습역량 지원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해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 · 보호아동 통합정보체계 준비
심리 및 정서 지원	·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 확대, 보호아동 심리지원 서비스 체계화 · 정신건강복지센터 244곳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이용
법령 등의 정비	· 아동복지법령 규정 구체화, 자립지원 업무 법적근거 확립 ·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 ·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_View.do?newsId=148890070](https://www.korea.kr/news/policyNews_View.do?newsId=148890070), 검색일: 2021. 8. 2)

위의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의 주요내용과 고아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동기부여 및 복무 이후의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연계를 검토할 수 있는 분야는 소득 및 주거와 안전망 강화, 진로 및 진학과 취업 등의 역량 강화 분야 등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호기간 연장(現18세 → 본인 의사에 따라 24세),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 → 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 → 17개 시도), 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 → 1:2, 지원한도 월 5만원 → 10만원),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보호대상아동 지원과 관련된 2021년 중앙정부 재정사업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834억 8,300만 원), 경찰청 일반회계(128억 8,200만 원), 기획재정부 소관의 복권기금(51억 2,400만 원),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283억 6,200만 원) 등을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재원을 모두 포괄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2021년 계획된 재정 투입액은 1,766억 5,100만 원이다.<sup>45)</sup> 이 가운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222억 2,400만 원이 책정되었다.

45) 김우림, 『보호대상 지원 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1, p.31.

## 2. 탈북주민 현황 및 실태 분석

### 가. 탈북주민 현황

탈북주민은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서 한반도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전 세계에는 없는 유일한 현상이다. 탈북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이 맞으나 이와 유사한 용어로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동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sup>46)</sup>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동일하게 탈북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의미는 병역에서 말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과 동일한 개념을 말한다. 탈북주민은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229명이 입국하였다. 2020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주민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16> 탈북주민 현황

(’20년 기준)

구 분	계	남성	%	여성	%
인 원	33,752명	9,435명	28.0	24,317	72.0

\* 출처 : 통일부(<https://www.unikorea.go.kr/unikorea>: 검색일: 2021. 7. 25)

탈북주민이 북한을 이탈한 동기는 다양하다.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식량부족 등 굶주림으로 인한 것이고 이외에도 북한 체제의 감시와 통제가 극심하여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가족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탈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다음의 <표-17>은 2020년 탈북주민의 탈북동기에 대한 1순위 통계자료이다.

4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17> 탈북주민 탈북동기<sup>47)</sup>

(단위 : %)

탈북이유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식량 부족	11.6	26.3	3.5	7.2	24.9	26.2	28.6	23.8
감시, 통제가 싫어서	27.0	18.5	3.9	16.0	20.6	19.7	27.3	20.6
가족생활 여건개선	14.2	14.2	6.3	9.6	10.6	16.3	16.7	10.5
먼저 탈북한 가족과 살자	13.1	9.1	17.5	18.3	13.5	4.8	4.5	12.5
돈을 더 많이 벌고자	6.4	10.9	1.3	8.5	9.5	14.4	8.2	5.1
북한에 있던 가족 따라서	12.5	6.3	57.2	23.1	6.3	2.0	2.0	5.4
신변 위협을 느껴서	9.8	4.1	1.1	2.0	3.8	5.9	7.2	10.7
먼저 탈북한 사람 권유로	6.0	4.5	6.8	8.6	4.9	3.7	2.8	6.3
주변의 사람 권유로	2.3	3.1	1.8	4.9	2.9	3.5	2.0	0.7
기타	1.6	3.0	0.6	1.7	2.9	3.6	0.8	4.2

\* 출처 : 통계청(kosis.kr) (<https://kosis.kr/statHtml/statHtml>. 검색일: 2021. 7. 29)

## 나. 탈북주민의 트라우마

탈북주민은 북한에서 출생 및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통, 탈북과정에서 겪은 고통, 한국입국 이후 겪은 무시와 차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고통이나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알아야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불안과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주요 정신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되며, 그 요인으로는 북한과 탈북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 남북한 문화적 차이, 한국에서 정착이후의 자립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8)</sup>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 300명 (여성:245명, 82%, 남성:55명, 18%)을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인권침해 관련 여부를 조사한 것을 보면 다음의 <표-18>과 같다.

47) 2020년 1순위 탈북 동기만을 정리하였음

48)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pp.31~32.

<표-18> 탈북주민이 경험한 인권침해

구분	인권침해 사건(다빈도순)	인원(%)
인 권 침 해 요 소	공개적인 자아비판을 직접 경험함	247명(82.33)
	심한 굶주림과 질병을 직접 경험함	188명(62.67)
	이웃과 당원의 감시와 고발을 직접 경험함	171명(57.00)
	통신검열 또는 녹화기 단속을 직접 경험함	167명(55.67)
	토대가 나쁘다는 이유로 차별을 직접 경험함	120명(40.00)
	국가기관 또는 군대에서 매질을 직접 경험함	65명(21.67)
	탈북으로 인하여 처벌 또는 강제송환을 직접 경험함	65명(21.67)
	탈북기간 중 여성 또는 아동 인신매매를 직접 경험함	65명(21.67)
	잘못 없이 국가기관에 끌려가는 것을 직접 경험함	62명(20.67)
	가족들이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을 직접 경험함	31명(10.33)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직접 경험함	22명( 7.33)
	탈북기간 중 심한 굶주림 또는 질병을 경험함	10명( 3.33)
	정치범수용소의 잔혹성을 직접 경험함	10명( 3.33)
	가족들이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함	3명( 1.33)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p.59~62.

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 개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인권침해 경험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에서의 굶주림이나 인권침해 경험, 탈북기간 중의 고통, 한국 입국 이후의 정신적·문화적 충돌 등이 트라우마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감,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2,373명의 일반 국민과 593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비교해 본 결과 나타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한국 정착 이후 많이 완화되기는 하지만 우울, 불안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9)</sup>

한국에 입국 및 정착과정에서 문화적 소통방식의 차이나 언어사용, 경제력, 전문기술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차별과 무시 등은 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소외감을 가져다준다. 이것은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영향을 줄 요인이다.

49)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p.31.

아래의 <표-19>를 보면, 일반 국민과 탈북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임금 등 여러 경제지표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19> 일반 국민과 탈북주민의 경제여건 추이 비교<sup>50)</sup>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경제활동 참 가 율	탈북주민	56.5	54.1	56.9	56.6	59.4	57.9	61.2	64.8	62.1
	일반국민	61.6	61.8	62.1	63.2	63.0	63.4	63.5	63.4	63.3
	차이	△5.1	△7.7	△5.2	△6.6	△3.6	△5.5	△2.3	1.4	△1.2
고 용 률	탈북주민	49.7	50.0	51.4	53.1	54.6	55.0	56.9	60.4	58.2
	일반국민	59.8	59.9	60.2	61.1	60.9	61.2	61.2	60.9	61.4
	차이	△10.1	△9.9	△8.8	△8.0	△6.3	△6.2	△4.3	△0.5	△3.3
실 업 률	탈북주민	12.1	7.5	9.7	6.2	4.8	5.1	7.0	6.9	6.3
	일반국민	3.0	3.0	3.0	3.3	3.4	3.6	3.6	4.0	3.0
	차이	9.1	4.5	6.7	2.9	1.4	1.5	3.4	2.9	3.3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탈북주민	121.3	137.7	141.4	147.1	154.6	162.9	178.7	189.9	204.7
	일반국민	203.3	210.9	218.9	224.0	230.4	237.2	243.0	255.8	264.3
	차이	△82.0	△73.2	△77.5	△76.9	△75.8	△74.3	△64.3	△65.9	△59.6
생활만족도	탈북주민	69.3	67.4	74.5	67.6	63.0	67.0	73.6	72.5	74.2

\* 출처 : 남북하나재단, 『2019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남북하나재단 보도자료, 2020.

연도별 추이를 보면 일반 국민과 탈북주민의 경제활동에서 격차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 참여율 및 고용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며, 실업률과 월평균 임금의 차이도 일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탈북주민의 한국 사회에서의 정착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 다. 탈북주민의 소외감 인식 정도<sup>51)</sup>

50) 이 조사는 199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중 3,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741명이 응답한 조사의 결과이다. 생활안정, 직업교육 훈련, 경제활동 등 3개 분야에 걸쳐 실시되었다.

51)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2020.

탈북주민이 한국으로 입국 이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거나 무시를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투와 생활방식이나 태도 등으로 인한 소외감과 탈북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남한 사회에서 정착 및 생활 등을 위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 등 능력의 부족, 언론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등 제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고 있다.

다음의 조사 결과를 통하여 탈북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 또는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먼저 탈북주민 연령대 구성이다.

<표-20> 탈북주민의 연령대별 구성<sup>52)</sup>

구분	계	1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인원(명)	29,400	776	4,052	7,343	8,491	8,738
비율(%)	100	2.6	13.8	25	28.9	29.7

\* 출처 :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2021, p.13.

이들 탈북주민의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이 80.5%이고 5년 미만은 19.9%이며, 한국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인 사람들이 약 59%, 느끼지 않는 편인 사람들이 41%를 차지하며, 탈북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지난 1년간 차별·무시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82%가 관련 경험이 없었고, 18%는 차별·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우선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53)</sup>

<표-21> 탈북주민이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에서 차별·무시당한 이유

구분	이유	선택비율(%)
1순위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74.9
2순위	(남한사람의 북한주민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44.3
3순위	언론에서 북한체제와 북한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 영향으로	19.3
4순위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에 있어 남한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	16.8
5순위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라서	9.4

\* 출처 : 남북하나재단,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2021, p.57.

52) 이 자료는 2020년 5월 통일부 등록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총 33,752명(2020년 12월 기준)에 비하면 일부 차이가 있다.

53)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2021, p.57.

다음은 병역의무부과 대상이 될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관한 것이다. 통일부에 등록된 만 10~18세의 탈북청소년 95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남성이 49.3%이고 여성이 50.7%이며, 연령대로는 초등연령이 13.2%(126명), 중등연령이 28.3%(269명), 고등연령이 58.5%(557명)이었다. 거주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이 29.1%, 5~10년 미만 41.9%, 3~5년 미만 9.6%, 3년 미만은 19.5%이다.

재학 현황을 보면 일반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87.4%이고 그 외 대안학교 등에 재학 중이며, 일반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초등학교 17%, 중학교 35.7%, 고등학교 47.2%이다.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학생이 81.4%, 보통이 16.9%로 조사되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학생이 62.9%였고 학교 수업을 따라 하기 어려움이 23.7%,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 4.4%가 답을 하였으며, 학교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별 어려움이 없다는 답변이 54.2%,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어려움이 11.7%, 숙제나 과제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9.0%가 답변하였다.<sup>5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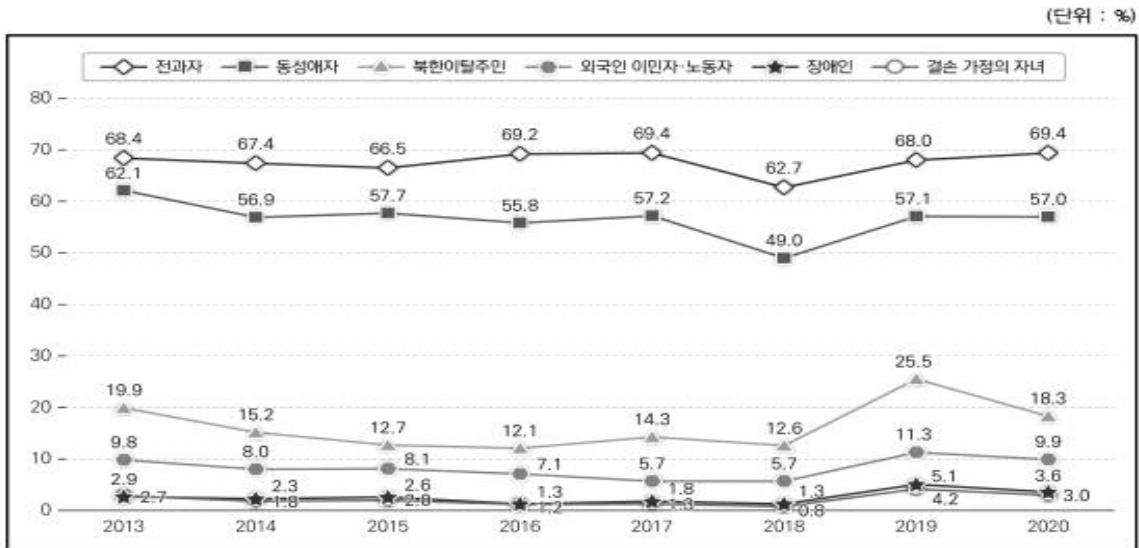
탈북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탈북주민은 한반도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현상인 만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 장애인 및 결손 가정의 자녀 등과 비교하여 소수자 배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를 사회통합실태 조사 차원에서 조사한 바 있다.

탈북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 배제 인식도는 우려될만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사회는 탈북주민에 대하여 배타적인 면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직장 등에서도 이웃이나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한 수치는 사회통합 실태 조사나 연구자료 등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54) 남북하나재단, 『2020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2021, pp.11~27.

<그림-6>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배제 인식도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경성문화사, 2021, p.67.

위의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탈북주민은 전과자와 동성애자에 이어서 3위로 외국인 이민자나 노동자보다도 앞선 순위에 있다. 그만큼 탈북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제는 높은 순위에 있다.

또한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주민을 이웃이나 직장 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이 2013년 19.98%에서 2016년 13.71%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에 16.25%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에는 다시 12.68%로 감소하였다. 2018년에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보다 약 2배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민자·노동자보다 국민의 탈북주민에 대한 포용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sup>55)</sup>

<표-22> 북한주민을 이웃·직장 동료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율(%)	19.98	14.69	13.69	13.71	16.25	12.68

\* 출처 : 주유선·김기태·김보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p.99.

55) 주유선·김기태·김보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pp.98~99.



집단구성원의 포용정도인 사회적 포용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범위를 살펴보면,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와 마찬가지로, 2013년에는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46.24%로 가장 높았지만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36.27%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2013년 19.82%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31.71%로 이웃(36.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2017년에 비해 2018년에는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약 7%p(43.67% → 36.27%) 감소한 것과 달리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약 5%p(10.54% → 15.99%)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들은 우리 사회의 탈북주민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연구 자료에도 우리 사회가 탈북주민에 대하여 포용의 정도가 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23> 탈북주민에 대한 집단구성원 포용정도

(단위 : %)

구분	받아들일 수 없음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2019	25.5	31.6	27.3	13.0	2.7
2020(I)	18.5	29.6	37.9	12.5	1.5
2020(II)	18.3	30.5	37.7	12.0	1.4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경성문화사, 2021, p.263.

위의 <표-23>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탈북주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포용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탈북주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면서 그러한 현상이 아래의 도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표-24> 탈북주민에 대한 집단별 감정적 거리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평균 (5점)	0°C 차갑다	25°C	50°C	75°C	100°C 따뜻하다
2020(I)	2.6	10.0	32.9	48.6	8.2	0.3
2020(II)	2.5	10.2	33.6	48.1	7.8	2.5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경성문화사, 2021, p.281.

위의 <표-24>에서도 탈북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같은 동포로서, 이웃으로서 별로 따뜻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에 탈북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무시 경향, 이를 느끼는 탈북주민들의 생각, 남한사람들의 탈북주민에 대한 낮은 포용성 등은 탈북주민에게 향후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소이다.

즉, 트라우마가 형성 또는 내재되어 있을 탈북주민이 군에 입대할 경우, 군 지휘관이나 병사들의 인식에서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인들은 이러한 불편한 시선을 느끼며 군 복무하는 과정에서 배타적인 감정을 느끼고 복무에 대한 열의가 낮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라. 탈북청소년 현상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대상은 탈북청소년일 것이다. 탈북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알기 위하여 남북하나재단에서 2020년 7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조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국한 탈북주민으로서 2020년 5월 1일 기준 만 10~18세의 탈북청소년 952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로서, 탈북학생들은 북한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44.8%이며, 경험이 없는 사람은 24.6%에 달하였다.

한국 입국 이후에는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교 유형은 일반 정규학교(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87.4%였으며, 그 외 학력인정 대안학교나 미인정 대안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이 11.8%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81.4%로 이는 일반학생의 59.3%에 비하여 22.1%가 높았다.<sup>56)</sup>

이들이 희망하는 교육 수준은 대학이 62.5%로 일반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대학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57.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31.2%였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이 91.3%였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보통’이 51.6%, ‘잘 산다.’가 13.1%, ‘못 산다.’가 21%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탈북주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검토함에 있어 참고와 군 복무에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 볼 수 있다.<sup>57)</sup>

56) 남북하나재단, 「2020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p.21~25.

57) 남북하나재단, 「2020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p.38~45.

## 마. 탈북주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 1) 법령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 「월남귀순용사특별법」('69), 「귀순북한동포법」('93)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이 되었으나 현재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탈북주민의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기본 계획(3년 주기) 신설, 자산형성제도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 지원조직과 업무

탈북주민 관련 조직으로 정부조직인 통일부(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에서는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보호 결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1997년에 설치된 탈북주민의 정착지원 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한국으로 입국 이후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한국에서 조기 적응 및 정착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탈북주민 정책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2010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여기서는 초기정착·생활안정지원, 정착지원금, 취업·창업지원, 취업지원사업 운영, 교육·인재양성지원, 사회통합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다음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로 여기서는 탈북주민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상담사는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종합 상담서비스 제공과 전국으로 탈북주민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지 편입 이후 탈북주민의 빠른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지원내용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은 정착금, 주거시설, 취업, 사회복지, 교육,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다음은 탈북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표-25> 탈북주민 정착지원 제도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장려금	취업장려금 최대(수도권 1,800, 지방 2,100만원)
	가산금	노령, 장애, 한부모, 제3국 출생자녀양육 등 요건별 지급
주거	주택알선	임대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1세대 1,600만원
취업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취업보호대상자(채용기업주 지급)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60여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 및 알선
	기타	취업보호(우선구매),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부담 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보호결정 당시 50세~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학비지원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출처 : 통일부(<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 Policy/ settlement/ System/>)(검색일: 2021. 8. 1)

위의 탈북주민 정착지원 제도 중에서 병역의무 정책과 연계하여 볼 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군 복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 교육지원 및 전역 이후 취업지원 분야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고아 및 탈북주민의 자료수집 및 관리와 향후 정책관리 방안

#### 가. 자료수집 및 관리

고아 관련 통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여 매년 발표하는 ‘e나라지표’에서 발표하는 보호아동 조치현황보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통계자료에서는 해당연도의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 원인별 인원과 보호조치 현황 등을 통계가 시작된 이후의 자료를 각각 수치와 그래프 등의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국가 통계포털에서 유사한 내용의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에서는 시·도별 발생현황도 동시에 제공한다.<sup>58)</sup>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개하는 해당 기관의 통계를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보육아동의 통계자료로는 보호대상 아동현황보고, 아동종합실태 조사보고, 가정위탁 국내입양 소년소녀가장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sup>59)</sup> 그 외에 아동권리보장원 등 아동보호관련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동보호관련 정책연구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이용할 수 있다.

탈북주민관련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이나 e나라지표의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통하여 탈북주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하나재단을 이용하여 탈북주민의 현황이나 거주 지역, 연령별 현황, 직업 분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확인이 가능하다.

탈북주민관련 정책 자료는 통일부 및 통일 교육원 등 산하기관이나 남북하나재단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2011년 이후부터 탈북주민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 실태조사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각종 지원정책이나 사업수립 등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 나. 정책관리 방안

### 1) 정책의 수립

고아가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등을 이유로, 탈북주민이 북한에서 출생 및 성장과정에서의 고통, 한국입국 이후 소외 및 멸시 경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를 감면할 경우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감을 확대하거나 차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들도 국민의 일원인 만큼 병역의무를 떳떳하게 이행하도록 하면서 활동 공간을 넓혀주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학업이나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개인적인 발전은 물론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 검토 및 부과를 위해서는 먼저 유사한 환경에서 다문화 가족에 병역의무를 부과하였던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고아 및

58)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검색일: 2021. 8. 1)

59) <http://www.mohw.go.kr/react/jb/sjb1101ls.jsp>(검색일: 2021. 8. 1)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감면 민원신청을 폐지하여 병역의무부과에 타당성을 검토 및 분석하고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어서 국방부, 보건복지부 및 통일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 및 사회통합의 기여도 등의 잠정적 평가가 필요하다.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가 잠정적으로 결정되면 유관기관과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며, 병역의무부과 시 법령 등의 개정과 각종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병역의무부과 및 이행 방안의 수립과 동기부여 방안,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 2) 정책의 집행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가 이행되면 군부대에서는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 관리와 적극적 복무자세 유도, 군복무 이후에 대비하여 학업지원이나 기술 습득 등 실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역 이후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시 동기부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 3) 정책의 평가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이 병역의무 공정성, 형평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 정도의 평가와 군 복무에 대한 군의 수용성, 전역 이후 지원책 등을 평가한다.

<표-26>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정책관리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정책수립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감면 사유 등의 분석</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검토 필요성 및 유사사례 분석</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관련 유관기관 의견 수렴</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의무부과 시 기대효과 등의 분석</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방안 결정 및 세미나</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 방안 및 동기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li> </ul>
정책이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 전역이후 사회진출 지원 사항</li> <li>· 군복무 중 학업, 기술습득 등의 지원 사항 이행</li> <li>· 일반병사와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간의 갈등 등</li> </ul>
정책평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이행 효과</li> <li>· 군 복무의 수용성, 복무이행자의 사회진출 지원책 등</li> </ul>

#### 4. 소결론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甲論乙駁)의 논쟁이 있는 만큼 먼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전제 아래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는 군 복무에 따른 사회 및 국가와 군에 대하여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이 동시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할 시는 강점을 살리고 약점 및 기회를 보완하며 위협요인을 극복하도록 연구와 정책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시 최대 위협요소는 성장과정에서 형성되었을 심리적 취약요인과 병역의무부과에 따른 사회적 편견, 군 지휘관 및 장병 등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고아는 발생원인과 현재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의 최대 위협요인은 북한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이념적 문제와 탈북이후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 기간의 차이에 따른 학력의 차이, 병역의무부과 시 군 지휘관 및 장병의 편견 등으로 인한 지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탈북주민이 한국에 입국할 당시의 연령이나 보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아나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는 어떤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IV.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타당성 분석

### 1. 병역자원 부족 시대의 병역제도 쟁점

#### 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 수준이었으나, 1960년대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이 도입 및 추진되면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으로 떨어졌고, 1983년에는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인 2.06명을 기록하여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다. 이후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수준에 도달하였고, 최근까지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8년에 1.0명 미만으로 떨어진 후 2019년에는 0.92명에 이어 2020년에는 0.84명까지 하락,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2017년 OECD 국가의 평균은 1.65명)이다.

반면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 3.1%이던 것이 2017년에 14.2%까지 증가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60)</sup> 이러한 저출산의 지속은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학령인구와 병역의무자의 감소, 지역 인구의 감소 및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을 초래하고 있다.<sup>61)</sup>

「저출산기본법」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5년 5월 18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1차 기본계획기간(2006~2010) 중 5년간 40.3조원, 2차 기본계획기간(2011~2015) 중 5년간 109.5조원, 3차 기본계획기간 (2016~2020) 중 197.5조원 등을 투입하였다.<sup>62)</sup>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심각하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인구절벽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저하

60) 감사원,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원, 2021, p.1.

61) 감사원,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원, pp.2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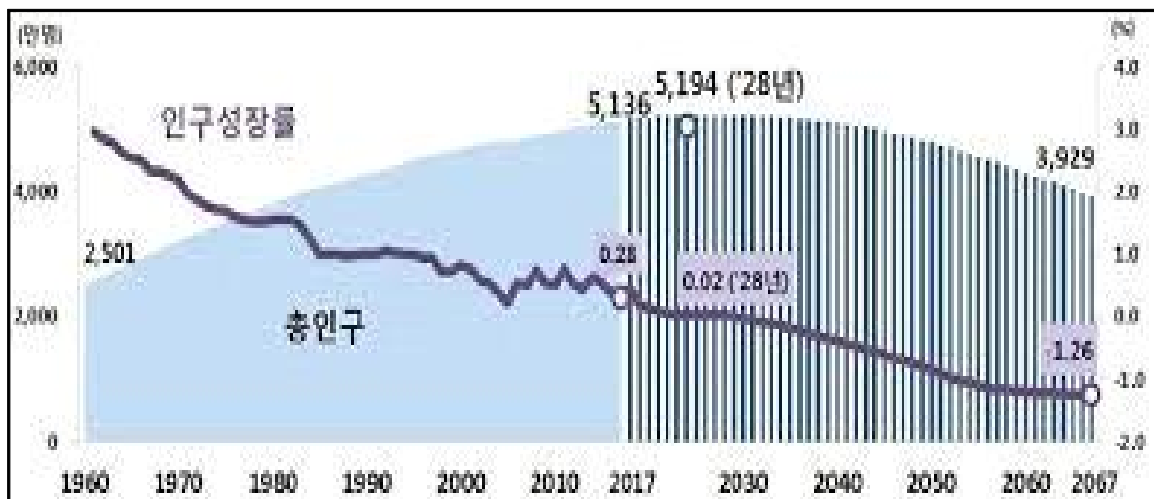
62) 감사원,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원, pp.34~38.



시키는 한편으로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부족하여 학교가 폐교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생산연령의 인구가 줄어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유소년 인구 역시 감소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합계 출생률이 1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국가이다.

먼저 인구절벽으로 야기될 현상을 보자. 장차 인구의 변화를 전망하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7년 3,929만 명(1982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으로 출생아는 2017년 35만 명에서 2067년 21만 명(2017년의 2/3 미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7> 장래 인구 특별추계(2017~2067)(1)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통계청, 2019.

2017년과 2067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감소(73.2%→45.4%)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13.8%→46.5%)하며,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감소(13.1%→8.1%)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2067년에 1,784만 명 수준일 전망이다. 유소년 인구는 2017년 672만 명에서 2030년 500만 명, 2067년 318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sup>63)</sup>

이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일본을 뛰어 넘어 2056년이 되면 환갑을 넘은 사람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비관적 보고도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고령화율(28.9%)이

63)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pp.1~2.

한국의 고령화율(15.7%)에 비하여 높지만 2045년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여 2060년에는 한국의 고령화율(43.9%)이 일본(38.1%)보다 높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sup>64)</sup>

## 나. 병역 가용자원 감소에 따른 병역제도 쟁점

이렇게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병역가용 자원의 부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병력 규모의 축소와 육군의 일부 부대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병역 가용자원의 부족에 따라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폐지, 병역특례제도 축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여군 인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시점에서 다소 이르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나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나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자는 등의 주장도 가용자원의 부족 때문에 나오는 현상일 것이다.

또한 지금은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를 일반 국민의 자녀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와 비교하여 공정성이나 형평성, 사회적 통합 차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병역자원을 다수 확보할 필요성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안보 위협과 북한군의 군사전략 및 전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의 대비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기습전(奇襲戰)’, ‘단기전(短期戰)’, ‘속전속결전(速戰速決戰)’이다. ‘기습전’이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하며, ‘단기전’이란 전쟁이 발발하면 짧은 시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속전속결전’이란 북한이 보유한 정규전 수단 외에 비정규전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전력을 이용하여 전쟁을 신속히 북한군의 승리로 결정적으로 끝내겠다는 것이다.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작되면 국가의 총력이 동원되는 형태의 전쟁으로 진행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국가의 인적자원 동원 능력은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사, 6.25 전쟁사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의 <표-27> 및 <표-28>을 이용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동원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4) “한국, 2045년엔 일본보다 늙은 나라 된다.”(조선일보, 2021. 10. 1)

<표-27>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당시 주요국의 동원규모

(단위 : 만명)

구 분	협상국				동맹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1913년 인구	9,730	4,560	3,970	17,100	6,690	5,210
1914년 병력	16.4	53.2	91	135.2	89.1	44.4
최대병력동원	380	950	820	1,300	1,325	905

\* 출처 :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Vintage Books, 1987, p.199, p.203. p.274.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예를 들면, 1915년에는 「국민등록법(National Registration Act)」을 제정하여 군복무를 하지 않는 15~65세의 모든 사람을 등록하였고 1916년 1월에는 「군복무법(Military Service Act)」을 제정하여 18~41세의 모든 미혼 남성을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4월에는 51세로 확대하였다. 이 법에서는 결혼한 남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성직자, 교사 및 특정 산업 노동자는 면제하였다. 이렇게 해서 전쟁기간 중 950만여 명을 동원하였다. 다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요국의 동원규모이다.

<표-28>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당시 주요국의 동원 규모

(단위 : 만명)

구 분	연합국				추축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독일	일본
1939년 인구	12,982	4,769	4,160	16,730	6,842	7,059
1939년 병력	19	22	80	170	80	32
최대병력동원	1,236.4	468.3	500	1,250	1,000	609.5

\* 출처 : Robert Goralski, *WORLD WAR II ALMANAC: 1931~1946*, BONANZA BOOKS, New York, 1982, p.89, p.421.

미국의 예를 들면,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40년 9월 「선발훈련 및 복무법(Selective Training and Service Act)」을 제정하여 21~45세의 모든 남성을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였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확대되어 종전시기인 1945년에는 18~45세까지로 등록이 확대되면서 5,000만여 명이 등록하였으며 이 가운데 1,200만여 명이 군에 복무하였다.<sup>65)</sup> 위의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동원병력 규모가 보여주듯 국가별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10명당 1명의 비율로 동원되어 전투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2020년 기준 한반도의 상비군 병력(한국: 55.5만, 북한:128만)과 예비전력(한국: 310만, 북한 762만) 규모, 북한의 핵을 포함한 첨단무기의 규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전쟁발발 시 그 피해는 예상을 초월할 것인 만큼 철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예비전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고아 및 탈북주민도 총력적 대응 관점에서 예외는 아닌 만큼 이제는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2.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시 예상되는 쟁점

### 가.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예상되는 쟁점은?

고아는 출생 시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법적인 보육시설이나 양육시설 등에서 숙식과 보호를 받아 성장한 사람을 말한다. 고아는 출생 또는 출생 이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애의 결핍, 경제적 어려움, 보육시설 등에서 부적응 등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에 대하여 불만과 저항심, 편견을 갖기 쉽다.

고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갖고 부모 없이 성장한 사람에게 우리 사회는 종종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업신여기는 등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향도 많다.

지금까지 고아의 병역의무를 감면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불우한 성장환경과 군이라는 폐쇄 및 집단적인 생활에 적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출생 또는 성장환경을 갖는 고아에 대하여 앞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사회적 편견 및 인식의 문제, 병역제도 수용의 문제, 입대 시 운용상의 문제 등의 쟁점이 예상된다.

탈북주민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북한지역에서 출생 및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이념적 문제,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고통과 한국 입국 이후 차별 및 무시 등으로 인하여 유사한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65) <https://www.nationalww2museum.org/students-teachers/student-resources/research-starters/draft-and-wwii>(검색일: 2021. 8. 3)

## 나. 사회적 편견 및 인식의 문제는 없을 것인가?

‘편견(Prejudice)’이라 함은 특정한 집단에 대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갖는 태도이며, ‘인식(Recognition)’이라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어떤 특정한 사회적 이슈나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 또는 인식의 독단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폐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발전소, 정신병원, 교도소 등과 같은 시설은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 시설이지만 소음과 악취 등 환경적 피해와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우려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기피 시설로서 이를 설치하려 할 때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이른바 ‘님비(NIMBY)’ 현상도 그러한 문제의 하나로서 이는 사회적 편견 및 인식으로 인한 문제이다.

아동양육시설이나 화장장이 인근 지역에 들어설 경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는 등의 아동양육시설이나 화장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따른 문제로,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이는 다 필요한 시설들이지만,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집단적 이기주의를 대표하는 갈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탈북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도 존재한다. 탈북주민의 상당수는 북한에서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거나 북한 사회에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어서 오는 사람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북송되면서 갖은 고통을 겪고 다시 탈북하여 온 사람도 있다. 3만여 명의 탈북인들에게는 3만여 가지의 탈북이유와 사연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자유를 찾아 탈북을 하였지만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인원도 발생하고 있고 몇몇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탈북주민은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도 발급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일부는 이들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탈북주민이라며 차별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탈북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대안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또는 인식은 어느 수준일까? 어느 방송에서 최근 10년간 드라마와 영화 가운데 고아 역할로

나오는 등장인물 46명의 특성을 분석한 바 그 캐릭터는 주로 악인 또는 범죄자, 불륜 여성, 왕따, 비현실적 긍정파 등으로 그려졌다고 한다.<sup>66)</sup> 이 분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고아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많다.

근래 들어 일부 방송에서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탈북주민을 다수 출연시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북한관련 부정적 인식을 주는 것도 있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의 배제가 병행되어야 하겠다.

<표-29>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사회적 편견 해소 요건

구 분	내 용
일반 국민	· 사회구성원 일부로서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아/탈북주민	· 사회구성원으로서 고아 및 탈북주민 본인들의 자기 발전 노력
정부	· 법령 및 제도를 통한 고아 및 탈북주민의 발전노력 지원

#### 다. 병역제도 수용성의 문제는 없을 것인가?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있어 병역제도 ‘수용의 문제’라 함은 이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병역제도에서 이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논하는 것이다. 이는 고아 및 탈북주민이 출생과 성장과정에서 보편적이라 할 수 없는 경험과 이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또는 형성될 수 있는 성격이나 태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군 복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부정적인 영향 요소 때문이다.

고아의 경우 “출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망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사회적 어려움이나 학업 등에서도 적지 않은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였는데 여기에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아에게 군 병역의무가 부과될 시 병영생활에서 지휘관 또는 장병과의 마찰요인이 발생할 경우, 뜻하지 않은 사고의 발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혼 부모, 가족 폭력이 잦은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성격 역시 군 복무과정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66) <https://news.joins.com/article/23908613>(검색일: 2021. 7. 29)

탈북주민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북한에서 경험이나 탈북 이후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수년간 방랑하면서 교육은 물론 생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입국 이후 경과기간 및 경제적 활동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기에 한국의 사회는 물론 군도 잘 모르는데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입대할 경우, 지휘관 또는 장병 간 마찰요인이 발생할 경우 뜻하지 않은 사고의 발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사회 일각에서 탈북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의 발생은 탈북주민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탈북주민에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탈북주민에게 수차례 설문조사를 한 바 있는데 대체로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많다.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정체성을 위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등등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탈북주민으로서 군 복무를 이행한 예비역 A씨의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A씨는 ○○○○ 출신으로, 부모와 탈북하여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되어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다시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바 있다.

A씨가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지원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그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남성으로서 군대에 다녀온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A씨가 원만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탈북자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비밀에 부치고 직속상관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sup>67)</sup>

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가 탈북주민이라고 알려질 경우 군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건·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안보 당국 관계자는 "탈북주민으로 위장한 간첩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군 입대 문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sup>68)</sup>

67) <https://www.yna.co.kr/view/AKR20160609030800014>(검색일: 2021. 7. 29)

6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1579.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1579.html)

<표-30>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수용요건

구 분	내 용
일반 국민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인식
고아 / 탈북주민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적극적 자세
정부 / 군	· 고아 및 탈북주민의 군 복무를 위한 법령 등의 정비

**라. 입대병사 운용상의 문제는 없을 것인가?**

고아나 탈북주민에게 있어 ‘입대병사 운용상의 문제’라 함은 법령의 개정으로 이들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에 입대하였을 때 군 생활에 적응하여 복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지휘관과 병사 또는 병사와 병사간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군은 집단의 특성상 폐쇄적이고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며,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할 수 없는 환경이 많은 곳이다. 많은 부대는 전방으로 갈수록 민간인 접촉도 줄어들고 최전방 지역의 철책선 경계부대는 주야를 바꿔 생활하는 부대도 많다. 훈련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야간에 잠을 자기 싫어도 때가 되면 취침을 해야 하는 곳이다.

본인의 의도 또는 뜻과 무관하게 생활해야 하는 과정에서 지휘관과 병사, 병사와 병사간의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여러 사건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군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사고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갈등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대상자가 고아나 탈북주민이라면 군 지휘관들은 일반 병사와는 다르게 선입견을 갖고 지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병사와 병사간의 갈등 역시 군 복무 중 사고요인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표-31>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운용요건

구 분	내 용
고아 / 탈북주민	· 고아 및 탈북주민의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 자세의 견지
군	· 고아 및 탈북주민의 군 복무에 대한 군의 수용성
정부	· 군 당국의 고아 및 탈북주민 입대 수용 노력



#### 마.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몇 명이 병역의무를 할 것인가?

고아나 탈북주민에게 실제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할 때 대상자 본인들의 반대는 물론 국민의 일부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를 하면서 갑론을박의 논쟁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논쟁거리가 발생할지라도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를 통하여 어느 정도 병역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은 얼마 안 되는데 실익은 없이 논쟁만 야기한다면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고아 및 탈북주민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될 경우 몇 명이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병무청의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감면 처분 현황자료에 의하면 고아는 그 대상자가 매년 약 600~700명, 탈북주민은 약 150~250명으로 연간 750~95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상자들이 모두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처분에 따라 입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실제로 군 복무하게 될 인원은 이보다는 감소할 것이다. 이 제도를 검토하고 도입함에 있어 적지 않은 논쟁을 유발하면서 도입을 하였는데 막상 제도를 시행하고 보니 그 대상자가 몇 명 되지 않아서 그 효과가 없을 것이라도 판단된다면 현행 제도의 유지가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주민의 경우 적어도 어릴 때 한국에 입국하여 초등학교부터 한국식 교육을 받았다면 병역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정신적 혼란 내지 정체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 입국하였을 경우, 이미 북한에서 소년단 생활 등 각종 집단생활을 거치면서 북한식 사상학습의 잔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습성의 탈피가 어려운 경우라면 병역의무부과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에는 국회부의장실에 탈북주민 B씨(22세)가 '군대에 보내달라'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하나원에 있을 때 '병역면제 신청서'에 서명했지만 하나원을 나온 뒤 2014년 군 입대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으며, 같은 해에 국방부에도 민원을 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는 "한 번 신청한 병역 면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하나원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해 잘 모를 때 병역면제를 신청했다."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군대에

갈 수 없다니 안타깝다."고도 하였다.(2017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현재 병역 면제자가 현역 등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의 변경 가능)

탈북주민은 신청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병역법」 제64조 1항). 입국 시 나이가 만 18세 이상 탈북주민은 하나원에서 군입대 여부를 대부분 결정하는데 하나원에서 군 면제를 선택한 B씨는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면 회사 입사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라며 "만약 사회 경험을 더 했더라면 군입대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군 사건·사고 뉴스를 보고 한국 군대 문화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탈북주민이 많았다."며 "하지만 만기 전역한 탈북주민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하였다.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 군에 입대하고 싶다는 18세 미만 탈북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sup>69)</sup>

이와 같은 사항은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를 논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사항일 것이며, 점차 이러한 주장들이 탈북주민들에게 확산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처럼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를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될 수 있으며, 탈북주민의 한국 사회로의 통합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 **바. 고아 및 탈북주민 여성이 부사관 또는 장교를 지원할 시 어떻게 할 것인가?**

고아 및 탈북주민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하면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고아 및 탈북주민 여성이 군 복무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남성의 경우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여성은 현행 법령상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서 직책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고아 및 탈북주민으로서 부사관 또는 장교를 지원할 경우, 지원 및 자격요건을 제시하겠지만 남성에게는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하면서 여성이라고 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의 진출을 막을 명분이 희박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다만, 부사관이나 장교의 경우는 신원조회 등 절차가 있는 만큼 이러한 과정은 필요하다.

실제로 탈북주민 여성인 C씨는 한국입국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을 이수한 뒤 학군장교(ROTC)을 지원하여 현역 장교로 복무하고 있다. C씨는 학군

6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1579.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1579.html)(검색일: 2021. 6. 29)

후보생을 지원하여 졸업 후 현재는 육군 ○○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장교뿐만 아니라 부사관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되는 정책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연구기간 중 어느 탈북주민은 현재 탈북주민들이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 등을 갈 수 없는데, 앞으로는 여기도 갈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 3.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검토 필요성

#### 가. 병역의무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

「헌법」이나 「병역법」에 규정한 대로 원칙적인 면에서만 보면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도 일정한 신체적 조건이 될 경우 공정성, 형평성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논의는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적으며,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4년에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합위원회에서는 탈북주민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입국 후 보호기간(5년) 이내의 병역의무 대상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토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그 외의 의무 대상자에 대해선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측은 이 같은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sup>70)</sup>

다음은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주장이다. 이는 이미 국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2015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수가 증가하고 특히 탈북청소년 수가 급증하면서 대다수의 탈북청소년이 병역면제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국민통합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북한이탈주민의 무조건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70) <https://www.news1.kr/articles/?1528086>(검색일: 2021. 6. 29)

현행법을 개정해 군복무 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병역면제가 가능하게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은 “국내에서 태어난 탈북자 가정 자녀들은 군 복무의무가 있는데,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3,4살 어린이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다.”며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북한이탈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기한 것이다.<sup>71)</sup>

예비군 제도 중 훈련보류제도가 있다. 예비군 ‘훈련보류제도’란 ‘전·평시 국가 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에 대해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비군 보류제도를 시행한 배경에는 평시는 물론 전시에든 국가의 기능유지와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필수 종사자의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1968년도 향토예비군이 창설될 당시부터 도입되었다.

그해 5월 29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대한민국의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시행을 위해 도입되었고 이후 국가의 기능과 공공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이 확대되면서 더불어 국가시책 관련 종사자 및 산업역군 등의 임무수행 보장을 위하여 계속 확대되었다.

현재는 전체 예비군 300만여 명 가운데 62개 직종에 715,000여 명이 보류되면서, 4명 가운데 1명의 비율로 보류자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류제도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 사회적 형평성 문제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20대 초반의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여 예비군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는 인원들이 대학생 보류제도에 대하여 민원과 헌법 소원 등을 제기하였다. 누구는 가정형편이 좋지 못하여 대학도 가지 못하였는데 누구는 대학에 가면서 훈련까지 적게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보류제도가 확대되면서 전쟁초기대응 측면, 전쟁지속능력 측면, 형평성 측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측면에서 이 제도의 폐지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전면 폐지 또는 부분적으로 존속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sup>72)</sup>

71) <https://news.joins.com/article/18014340>(검색일: 2021. 7. 29)

예비군 보류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가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와 연관되는 이유는, 고아 및 탈북주민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처럼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든 예비군 자원도 법령에 규정된 대로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1973년 도입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일종의 병역특례제도로 이공계 대학생들은 그동안 이 제도를 이용하여 다수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병역가용 자원이 부족해지자 그동안 이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갑론을박의 논쟁이 있었으며, 2019년 1,500명이던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을 2025년까지 1,200명으로 축소하는 등의 제도를 축소하고 있다.<sup>73)</sup> 전문연구요원의 축소가 병역가용 자원의 축소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는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병역감면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보다도 비교된다.

#### 나. 병역가용 자원의 감소로 현존 전력의 어려움 발생 부분적 해소

##### 1) 출생률 저하에 따른 병역가용 자원 감소

<그림-8>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의 변화(2009~2020)



\* 출처 : 통계청(<http://www.index.go.kr/potal/main/>)(검색일: 2021. 10. 1)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72) 21세기 군사연구소,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육군본부 정책과제, 2015, pp.59~71.

73) “이공계생들, ”연구요원 가느니 현역입대“”(동아일보, 2021. 10. 4)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미흡하였다.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저출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을 기울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금은 인구절벽을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발전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ty Rate)’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적 지표이다.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한 여성이 출생하는 자녀 수가 많다는 의미이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970년에는 4.53명, 1980년에는 2.82명, 1990년에는 1.57명, 2000년에는 1.47명, 2010년에는 1.23명으로 계속 하락하였다.<sup>74)</sup>

2020년 출생통계 결과를 보면 총 출생아 수는 27만 2,300여 명으로 2019년보다 30,400여 명 감소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9년 0.918명에서 2020년에는 0.84명으로 전년(0.918명)에 이어 0.078명 또 감소되었다.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사회적 경제적 활력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부족하여 폐교되는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 지역은 소멸될 위기가 계속 경고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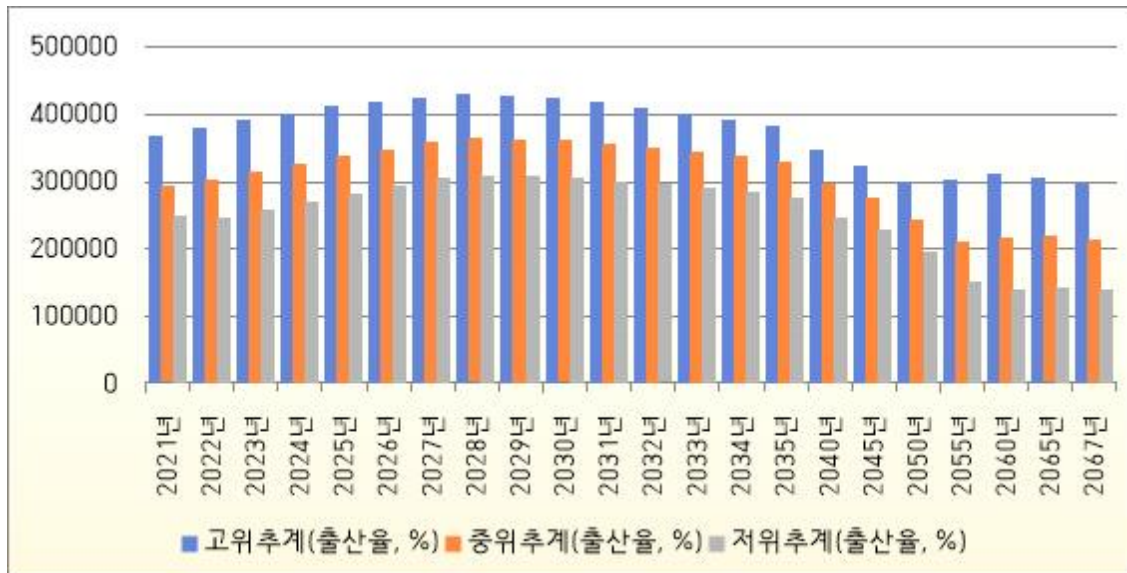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 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며 특별법을 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토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sup>75)</sup>

---

74) 감사원 감사자료를 보면, 1970년대 초반에 100만여 명의 출생아를 기록하였지만 지속적인 산아제한 정책과 저출산 현상 등에 따라 계속 감소하면서 2000년 64만여 명, 2010년 47만여 명으로 떨어졌다. 2019년에는 30만여 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감사원,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원, 2021, p.15).

75)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1. 5. 31)

<그림-9> 향후 출산율 변화 전망(2021~2067)



\* 출처 : 통계청(KOSIS), 장래인구특별추계(2020~2067), 2019.

위의 <그림-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2067년까지의 고위, 중위 및 저위 출산율 변화 전망치를 보면 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 2)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역가용 자원 감소 전망

출산율의 저하는 사회적·경제적 활력의 저하는 물론 병역가용 자원 감소에 따라 현시점에서 병력 규모의 축소와 부대 수의 축소가 진행 중이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남성 20세 중위 추계인구를 발췌한 결과를 보면 만 20세 장기 인구 추계는 2020년 약 33만여 명에서 2023년에는 25만여 명으로 감소되고 2065년에는 15만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병역가용 자원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sup>7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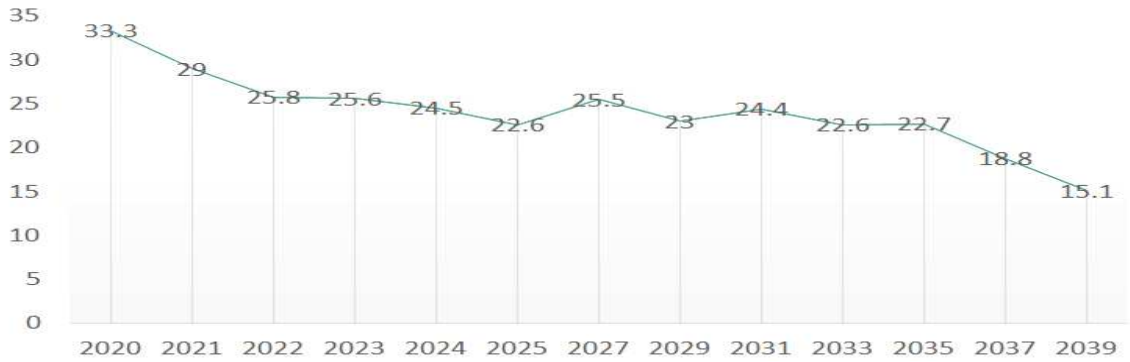
감사원 보고서에서 병역의무자는 2020년 33.3만 명에서 2025년 22.6만 명으로 감소하고, 2037년 이후에는 19만 명 이하로 급감하여 향후 병력자원 충원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sup>77)</sup>

76) 고시성, “인구 절벽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안 연구”, 「KIMA 정책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통권 제2호, 2020, p.14에서 재인용.

77) 감사원,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원, 2021, pp.26~27.

<그림-10> 병역의무자 변화 예상

(단위 : 만명)



\* 출처 : 감사원,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원, 2021, p.27에서 일부 발췌한 것임

### 3) 병역가용 자원 부족 감소로 인한 상비병력 및 부대조정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촉발된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복지비용의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현장 역시 학령인구 규모가 급감하여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수천개소의 학교가 폐교되는가 하면, 지방대학 역시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또는 닫아야 할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면서 병역 가용자원의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렇게 우리가 당면하는 저출산과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부족 심화로 군 병력의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여 병력 규모의 축소와 부대 규모를 줄이고 있다.

<표-32>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및 부대조정 계획<sup>78)</sup>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계획)
병력(만명)	63.9	63	62.5	59.9	55.5	50
부대(사단수)	46	44	43	40	37	33
비고	「국방백서」(2012, 2014, 2016, 2018, 2020)					「국방개혁2.0」

\*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 2012~2020』 및 『국방개혁 2.0』 참조

78) 국방부, 『국방백서 2012~2020, 및 국방개혁 2.0』 참조



위의 <표-32>를 보면, 이미 10여 년 전부터 병력규모의 축소를 추진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유는 가용 자원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2.0」을 보면 주로 병력 규모가 큰 육군 관련 사항으로, 주로 병력 규모와 부대 규모의 축소가 관련된다. 그 내용을 보면 병력 규모는 46.4만에서 36.5만으로 10만여 명을 축소할 계획이며, 부대 수에서도 군단은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39개에서 34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표-33>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

구분	국방인력	육군	해군(해병대사)	공군
병력	· 상비군: 59.9 → 50 · 예비군: 275	· 작전사: 3 → 2	· 작전사/해병대사: 1	· 작전: 1
부대	· 동원예비군: 130 → 95	· 군단: 8 → 6	· 함대/기능사: 4 → 5	· 전투/기능사: 4
구조	· 민간인력: 3.2 → 5.5	· 사단: 39 → 34	· 전단: 6 → 5	· 비행단: 12 → 13
병력	(‘18년) 59.9 → (‘22년) 50	46.4 → 36.5	7.0 (변동없음)	6.5 (변동없음)

\* 출처 : 국방부, 『국방개혁 2.0』, 국방부, p.28~29.

이미 상비병력 규모는 2012년부터 조금씩 계속하여 감소되어 왔으며 목표 연도인 2022년에는 50만여 명 규모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투력 발휘의 핵심제대인 사단급 부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가용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부대수가 감소할지라도 전력을 첨단화함으로써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병력 규모가 축소되면서 가장 축소의 폭이 큰 대상은 병사들로서 이는 징집의 대상인 가용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다음의 <표-34>를 보면 특히 병사의 규모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34>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규모의 조정계획

(단위 : 만명)

구분	2018년	2022년(목표년도)	비고(증감)
장교	7.1	7.0	-0.1
부사관	12.4	12.7	+0.3
병	42.3	30.3	-12

\* 출처 : 송윤선, 『한국군 병력충원과 정책혁신』, 하음출판사, 2020, p.99.

상비 병력과 부대수가 축소되면서 당연히 전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신형방사포의 개발 등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와 핵무기 고도화 및 소형화,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병력과 부대수를 감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복무기간의 단축, 병력 규모와 부대 수를 축소할지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의 발굴을 확대하여 전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폐지, 병역특례제도 축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여군 인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도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다. 고아 및 탈북주민 사회적 통합에 기여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역과 여건, 학력과 소득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연령과 성별, 보수와 진보 등 다양한 여건 아래서 사는 만큼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갈등이 조화롭게 관리되면 안정되고 사회가 발전하지만 방치되면 불평불만이 누적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폭발한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란 이렇게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사회구성원이 하나의 정체성을 갖도록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과 대립이 폭동과 소요로 나타나며, 빈부격차의 확대와 종교 간의 갈등 등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일에 직면한다. 중남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등 현상은 빈부의 차이 등으로 사회적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제반 갈등 요인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사회통합을 통하여 소통하고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IV):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해치는 전반적인 갈등 수준에 대해 '매우 심하다.' 8.5%, '대체로 심하다.' 71.8% 등 심하다는 의견이 80.3%였다.<sup>79)</sup> 이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남녀 3,839명을 상대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며, 갈등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으로, 응답자의 85.2%가 '매우 심하다.'(40.8%) 또는

79) <https://www.yna.co.kr/view/AKR20180518125100017>(검색일: 2021. 6. 29)

'대체로 심하다.'(44.4%)라고 하였으며,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81.9%),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81.7%),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79.8%)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경제적 갈등들에 대해서도 80% 안팎의 응답자가 '심하다.'고 평가했다.<sup>80)</sup>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해 오는 과정에서, 지역적 발전의 차이 등의 이유로 한국 사회는 동서 분열, 보수와 진보, 계층별 등 분열을 해온 것이 사실로 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가 분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통합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병역의무는 법에 규정한 대로 권력이나 재산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부과함으로써 사회통합을 하는 순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감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sup>81)</sup>

고아가 출생이나 성장과정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탈북주민이 이념적 문화적 차이나 성장 및 학업, 경제 등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로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 병역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사회구성원의 일부로서 역할을 완수하며 이는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향후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할 때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사고를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80) 정해식 외,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사회문제와 사회통합(연구보고서 2017-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pp.109~111.

81) 병무청(<https://www.mma.go.kr/>: 검색일: 2021. 10. 1)

있다. 군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양부모 가정이나 편부 및 편모 가정에서 성장한 병사들도 사고를 유발한다. 고아 및 탈북주민이 군 복무를 하게 될 때 사고 원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막연한 생각 또는 합리적 논리와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에 불과하다.

### 라. 다문화 가정의 병역부과와 형평성 유지

2019년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는 17,939명으로 전년(18,079명)보다 140명 (-0.8%) 감소하였다. 이는 2019년 전체 출생아 303,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7.4%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0.8%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은 것이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전년보다 0.4% 증가하였다. 다문화 가정 출생아 중 남아는 9,194명, 여아는 8,745명,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105.1명으로, 출생기준 한국인 부모의 출생성비 105.7명보다 조금 낮았다.

<표-35>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출생 성비(2017~2019)<sup>82)</sup>

(단위: 명, %, 여아 100명당 남아 수)

구분	전체			다문화						
				다문화 부모			출생기준 한국인 부모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출생아 수	357,771	326,822	302,676	18,440	18,079	17,939	335,713	305,450	281,674	
비 중	100.0	100.0	100.0	5.2	5.5	5.9	93.8	93.5	93.1	
전년 대비	증 감	-48,472	-30,949	-24,146	-991	-361	-140	-46,981	-30,263	-23,776
	증감률	-11.9	-8.7	-7.4	-5.1	-2.0	-0.8	-12.3	-9.0	-7.8
남 아	184,308	167,686	155,416	9,492	9,191	9,194	172,972	156,822	144,722	
여 아	173,463	159,136	147,260	8,948	8,888	8,745	162,741	148,628	136,952	
출생 성비	106.3	105.4	105.5	106.1	103.4	105.1	106.3	105.5	1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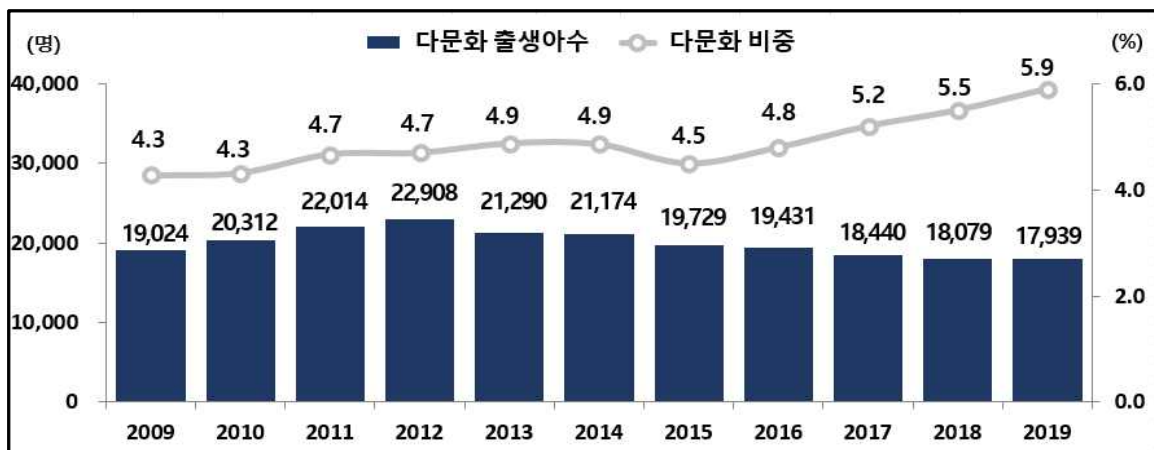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통계청, 2020, p.22.

82) '전체'는 부모 국적 미상(기아, 영아사망 등) 포함한 것이며, '다문화 부모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귀화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출생기준 한국인 부모'는 부모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의 <그림-11>를 보면, 2009년 이후부터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및 비중의 변화를 볼 수 있다. 2019년 다문화 학생은 137,000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2.5%를 차지하며,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sup>83)</sup>

통계청의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는 33만5천 가구, 가구원은 100만 9천여 명으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100명 가운데 2명은 다문화가정일 정도이다.<sup>84)</sup>

<그림-11>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09~2019)



\*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5056100002>(검색일: 2021. 7. 26)

1991년생까지는 인종, 피부색으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신청에 의해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이 감면되었다. 과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병역의무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이나 병역이행 대기자 등 모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보충역 복무에 대해서도 80% 이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그 시기는 준비시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sup>85)</sup>

다문화 가정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입대가 증가하고 있다. 2010~2018년에 약 4,000여 명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가 증가하면서 향후 10여 년간 군복무 인원의 10% 선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83)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7](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7)(검색일: 2021. 7. 30)

84) 연합뉴스(<https://www.yna.co.kr/>, 검색일: 2021. 10. 1)

85) 병무청, 「병역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동서리서치, 2009, pp.11~13.

현재 국방부에서는 다문화 가정 장병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121조에도 “다문화 장병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별도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다른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sup>86)</sup> 별도로 이를 파악하면 이는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는 ‘다문화 장병’의 범주에 외국인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장병, 국외 영주권자 입영 장병,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킨 바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도 다문화 장병 범주에 포함돼 있다. 「병역법」을 보면 탈북주민 가족이 한국에 정착한 이후 태어난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군입대 대상이다.

<표-36> 다문화 가정의 유형(국방부, 2010)

구 분	의 미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
외국인 근로 가정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로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생활하고 있는 가정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 주민이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북한을 탈주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

\* 출처 : 이윤수, ‘다문화 군인에 대한 장교들의 인식과 군 정책 방향’, 「국방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2018년 여름호(통권 제120호), p.52.

그러나 탈북주민의 경우는 「병역법」 제64조 1항 2호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으로서 법적으로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병역의무가 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병역 면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군 입대가 가능하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도 병역의무가 부과되는데 탈북주민은 물론 고아도 공정성, 형평성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군 출신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원할 경우, 국군에 편입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28호)」 제18조(특별임용) 2항에서는 ‘북한군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과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해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6)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273호(2019. 4. 25)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11조(장교 임용자격)에서는 「군인사법」 제11조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는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법 제10호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군인사법」 제10호에 규정된 임용자격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본인이 원할 경우 장교나 부사관에 지원이 가능하고 편입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다. 장교 또는 부사관 등의 편입과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법령은 물론 현실적인 면에서도 탈북주민의 병역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 마. 고아 및 탈북주민 취업 지원 확대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검토과정에서 정부와 군이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 중의 하나는 병역의무를 종료할 당시 이들이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좋겠으나 현재 법적으로 어려운 만큼 군 복무기간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직업교육을 하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을 보상하는 한편, 건전한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고아의 경우, 군 복무 종료 이후 취업 못지않게 거주할 곳의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수립된다면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좋은 동기부여책이 될 것이다. 본인이 원할 경우, 부사관이나 장교 또는 군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한다면, 군 복무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정부와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주는 것도 될 것이다.

#### 바.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 공유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함에 있어 공감대를 이뤄야 할 부분은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고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안보 현실에서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탈북주민은 북한에서 정치적 폭력이나 식량부족으로 인한 고통 등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자유를 찾아서 온 만큼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더 느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아 및 탈북주민도 법령과 능력의 범위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사. 남북통일 과정 및 이후의 대비

지금 우리는 남북분단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향후에는 남북은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일부에서는 멀지 않은 시기에 아무도 모르게 올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시기에 탈북주민의 역할은 많을 것이다. 탈북주민의 병사도 남북의 통일과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선무활동, 북한군의 해산 등 그 역할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와 역할에 대비하여 탈북주민이 군에 복무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며, 본인이 원할 경우는 부사관 또는 장교로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 아. 고아 및 탈북주민의 사회성 함양

군대도 일반사회와 동일한 하나의 사회이다. 다만, 군이라는 집단이 수행하는 임무의 특성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폐쇄적이고 집단적인 생활을 할 뿐이다. 군을 국민교육의 도장이라고 한다. 이는 군 생활을 통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자제와 극기력, 인내력을 배우기 때문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이 사회로 진출하기에 앞서 군 생활은 사회생활에 대하여 배우고 사회에서 필요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함양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각자의 노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군에서 배우고 익히는 여러 기술이나 리더십,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등은 전역 후의 직업 선택 등 인생사에 있어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4. 병역의무부과 타당성 분석

### 가. 병역의무부과 타당성 개념 및 의미



병역의무는 병역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조건, 즉 신체적 조건이나 지적 능력 등을 충족한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병역의무부과의 타당성'이란 병역의무를 부과할 정도로 신체적·지적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병역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신체가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둘째,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현행 법령상 19세에 도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합격한 자를 말한다. 셋째,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이는 군에 복무하면서 특기에 맞는 편제 장비를 취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행정병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한다. 이는 특히 미사일, 레이더 등 고가의 장비를 취급하게 될 병사에게 그에 맞는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넷째, 군 복무에 적합한 신체적 요구 조건에 부합한 자이어야 한다. 전투임무를 기본으로 하는 군에게 사격을 할 수 없거나 보행이 어려운 사람 등을 군에 복무하게 할 수는 없다. 사격은 군인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데 사격을 할 수 없는 신체적 상황이라면 군 복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소아마비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데 이 역시 군에 복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군 복무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에 의거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타당성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군 복무가 집단적 및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에서는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폐쇄된 가운데 집단적인 생활을 하면서 야기되는 갈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만큼 사고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장애요인을 갖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휘관과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에서 지휘관은 법적 권한에 의하여 장병들을 지휘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고를 유발하여 전력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셋째, 병사와 병사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이 종전에 비하여 많이 개방화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병영생활을 같이 하는 병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건 사고로 연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군 장비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적 능력과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군은 소총만 취급하는 단순 특기로부터 전문성이 필요한 고가의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취급하며, 따라서 신체적 조건을 기본으로 지적 능력, 전문적 식견도 보직에 따라 차별적 요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야기될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단순히 군 복무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당위성 내지 필요성만 갖고 부과하기에는 그들이 성장해 온 과정에서 축적된 사회적 불만 등이 군 복무 과정에서 미칠 영향이나 탈북주민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이념적 성향 또는 탈북이후 우리 사회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며 이러한 사항이 군 복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병역의무의 공정성, 형평성, 효과성, 가능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 **나. 병역의무부과의 공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

병역의무에 있어 공정성(Fairness) 또는 형평성(Equity)은 병무행정이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할 대상에 있어 동일한 병역판정검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함을 의미한다.

병역의무부과의 공정성 또는 형평성이 중요한 이유는 4대 의무 중 핵심인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법 정신의 상징이며, 병역의무의 공정성 또는 형평성이 무너지면 국가기반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커다란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때 「헌법」과 「병역법」 등에 규정된 병역의무가 공정성 또는 형평성 있게 부과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만큼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될 경우 이를 평가할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표-37>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의 공정성 및 형평성 척도 평가

구 분	평 가 내 용
일반 국민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가 공정하게 이행되는가
고 아	· 일반국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가 · 고아 발생원인을 고려한 병역의무부과가 필요한가
탈북주민	· 일반국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가 · 한국 입국 후 사회적응기간 등을 고려, 병역판정을 하는가
공 통	· 고아 및 탈북주민은 병역판정검사를 수용하는가

공정성 또는 형평성 측면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고아 및 탈북주민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조건, 즉 연령과 신체적 및 지적 능력을 충족할 경우 병역의무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만, 고아는 성장과정에서의 갖은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과 냉대, 탈북주민은 출생 및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이념의 차이 등을 인정하여 병역을 감면한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에는 고아 및 탈북주민의 관점에서는 물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조차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다만, 고아의 경우, 부모사망 등 발생 원인을 감안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일정한 조건, 즉 연령과 신체적 조건 및 지적 능력, 탈북주민의 경우 연령과 학업, 입국 기간 등을 충족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인 만큼 공정성 또는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에 따라 이미 병무청에서도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병역의무부과의 당위성은 있으나, 국내 정착 및 적응 기간, 사회통합 등을 고려해 향후 탈북주민들의 병역이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거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학력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고아 및 탈북주민이라고 예외로 인정하기에는 국민의 인식 역시 변화하면서 병역감면 이유 역시 가면 갈수록 논리가 부족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만큼 이제는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이다.

#### 다.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

‘병역의무부과에 있어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의미한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가 병역가용 자원 부족 해소 및 전투력 강화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효과의 달성에 기여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효과성에 대한 판단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병역가용 자원 부족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가용한 자원은 600~700명 정도가 되고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가용한 자원은 약 150~25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숫자는 많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병역의무 이행이 누구도 예외가 안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군의 규모가 약 55만여 명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대상자 가운데 약 반인 500여 명이 군 복무를 한다고 가정할 시 전체 병력규모의 약 0.1%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누구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상징적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기피를 하였던 사회지도층에게 있어 고아 등의 병역의무부과는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계도하는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투력 강화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전투력은 유형 및 무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유형의 전투력은 각종 무기체계와 인적자원이며, 무형의 전투력은 장병들의 정신력이 핵심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은 본인들은 물론 일반 장병의 정신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도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공정성 또는 형평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병역감면 대상이었던 고아나 탈북주민도 이제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병역의무의 이행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전 국민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역기피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며 나아가서 사회통합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표-38> 병역의무부과의 효과성 측면 척도 평가

구 분	평 가 내 용
일반 국민	·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공정한가
군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가 병역가용 자원 부족 해소 및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는가
고아 / 탈북주민	· 고아는 본인의 군 복무가 사회성 등의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인가 · 탈북주민 본인의 군 복무가 사회성 및 정체성 등의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 과정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는 국민에게는 사회적 통합의 계기로 인식될 수는 있으나 고아 및 탈북주민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보면,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의 교류, 관계 형성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탈북주민의 사회통합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설문 결과를 보면 차별을 느낀다는 대답이 많은 만큼 병역의무 이행은 사회통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라. 가능성 측면에서 분석

‘병역의무부과에 있어 가능성(Possibility)’이란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이들이 각각의 보직 또는 직위에서 부여된 직책에 알맞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고아나 탈북주민에게 「병역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대로 신체적 요건을 충족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는 군 복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고아의 경우는 성장 과정에서 받았을 사회적 편견과 냉대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 또는 내재적으로 불만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밀한 심리검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군 복무기간 중에도 지휘관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탈북주민도 북한에서 처형과 폭력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굶주림, 김일성 우상화 등을 겪으면서 형성되었을 이념적 문제나 트라우마, 탈북 및 제3국 체류과정에서 겪은 각종 어려움과 한국 입국 이후에 겪은 경험이나 차별 및 무시 행위와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불만 등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병역의무부과 시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아처럼 군 복무기간 중 지휘관 등의 배려도 필요하다.

고아와 탈북주민 모두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거쳐 전투부대에 복무토록 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심리검사가 나올 경우는 복무적응 프로그램과 더불어 학교 기관이나 전투근무지원 부대 등에서 복무하도록 규정화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표-39> 병역의무부과의 가능성 측면 척도 평가

구 분	평 가 내 용
병무청 / 군	· 고아 및 탈북주민 중 복무부적합자는 적절히 식별해 내는가 · 병역의무 이행 시 적절한 특기 및 보직을 부여하는가
고아 / 탈북주민	· 군 복무에 적절한 특기 및 보직을 받는가

이 문제와 연계하여 볼 때 야전 지휘관이 가장 우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입대한 병사들이 총기 및 탄약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고일 것이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심리검사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탈북주민의 경우도 한국 입국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병역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을 지금처럼 신청에 의해 병역을 감면할 경우 국민의 일부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닌 사회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일정한 조건아래서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다른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때 건전한 사회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5. 병역의무부과 시 「헌법」에 보장된 원칙 법리적 검토

### 가. 「헌법」에 보장된 원칙의 개념 및 의미

병역의무는 「헌법」 제39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률로 정한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헌법」 제39조제1항에 근거한 현행 「병역법」에 따라 남성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신념(종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 사유가 없는 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감면되었던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검토를 위해서는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입안의 기본원칙에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최소보장의 원칙’ 등이 있다.<sup>87)</sup>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이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법 적용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평등하게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가지며, 반대로 국가는 법을 특정 개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는 법을 특정 개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명시적·묵시적 언동(言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말한다. ‘최소보장의 원칙’은 입법자는 합리적으로 급부의 대상과 수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법령을 입법해야 함을 말한다.

### 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 측면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복리에 필요

87)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하여 「병역법」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지금까지 감면되었던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부분 침해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이미 일반 국민의 자녀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자유와 권리의 일정부분을 침해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가 그들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부과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정하고 복무에 따른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여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비례원칙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 원칙으로서 병역의무 기간이나 병역의무에 따른 급여의 적정성과 관련 된다고 할 것이다.

#### 다. ‘평등의 원칙’ 측면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원칙을 위배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고아의 성장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탈북주민이 북한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상적 이념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병역의무를 감면 하였으나 탈북이후 한국사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민주적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만큼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병역의무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과 보장의 최대성 원칙에 따라 입법자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고아나 탈북주민에 대해서도 평등원칙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탈북주민의 경우, 한국 입국기간에 따라 한국 사회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병역의무부과도 처음에는 그들의 출생지와 피부색 차이 등을



이유로 일부 병역의무를 감면하였지만 법령을 개정하여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들에 대한 병역의무의 부과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부과되었고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될 시 유사할 것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헌법」 원칙은 평등원칙으로 고아나 탈북주민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모를까 그러하지 않다면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 라. '신뢰의 원칙' 측면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가 이들이 군 복무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을 감안할 시 개인의 가치를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시 이것은 고아 및 탈북주민이 생소한 환경아래 처해지는 것이기는 하나 병역에서도 개인의 기본가치 보호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가 종전에는 감면되었던 것을 변경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뢰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이나 그동안 일반 국민 가운데 병역감면 되었던 학력의 제한을 완화한 것 등은 모두 개인의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부과되었다.

기존의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에 대한 병역면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2021.10.1.부터 시행된다고 할 경우 10월 1일 이후의 탈북주민인 병역대상자가 종전 법에 대한 신뢰이익을 주장하여 자신도 원할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해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탈북주민에 대한 기존법률의 규정은 정책적인 고려로 보이고 탈북주민을 신청에 의해 병역면제를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법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이익 보다는 새로운 법률에 의한 공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신뢰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 마. '적법절차의 원칙' 측면

지금까지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감면은 국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하였다. 향후 이들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역시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할 것이므로 먼저 법률적 근거를 마련 후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한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병역의무 이행을 보면, 문제 제기에 이어 「병역법」을 개정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병역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다.

#### 바. ‘최소보장의 원칙’ 측면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될 경우, 이들의 병역의무부과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될 경우 고아 및 탈북주민의 출생 및 성장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러한 어려움을 판단하여 법적 요건과 복무과정에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복무 이후 취업 알선, 주거지원 등의 내부 규정을 만든 후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사.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고아 및 탈북주민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병역법」의 근거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도 「병역법」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될 것인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헌법」 제39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서 규정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맺고자 한다.

다만,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의 부과가 「헌법」에는 위배되지 않을 지라도 「병역법」 및 시행령 등의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병역의무의 부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복무에 따른 보수도 국가재정력과 사회통상의 임금 등을 종합한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6. 병역의무부과 시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가. 병역의무부과 장애요인 개념 및 의미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에 대한 장애요인(障礙要因)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또는 하기 어려운 어떤 신체적(身體的), 정신적(精神的), 사회적(社會的) 장애요인을 말한다. 먼저, 병역의무를 할 수 없는 또는 하기 어렵게 만드는 '신체적·장애요인'이란 현재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신체적인 장애이며, 이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의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정신적·사회적 장애요인'이란 정신질환과 같은 이유나 고아와 같이 성장환경이 군 복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거나 탈북주민과 같이 북한이라는 통제와 억압된 사회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념과 갖은 고통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이 병역의무부과 및 이행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말한다.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장애요인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병역의무가 갖는 사회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첫째, 병역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일단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집단적·폐쇄적 생활을 유지하면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로 인한 것이다.

집단적·폐쇄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 요인이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나가서 군 복무를 어렵게 만들면서 사고 원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증가한다.

둘째,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함에 있어 집단적 폐쇄된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또는 병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병역의무부과 대상자로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복무를 하게 되면 많은 병사가 총기와 탄약 및 폭발물 등을 취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특히 전방지역과 같은 경우 잠재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군에서 총기 및 폭발물 사고는 병영생활 중 장병들 사이에서 여러 갈등 요인이 누적되거나 군에서의 부적응, 성장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통상 분석되고 있다. 고아 및 탈북주민이 입대할 경우,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갖는 지휘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병역판정검사를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대상자를 식별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군인으로서 임무 수행, 즉 전투를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식별하여 훈련시키고 부대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격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입대시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 나.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부정적 요인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함에 있어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아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겪었을 사회적 냉대와 편견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이다. 고아는 부모 사망, 이혼 및 폭력 등 성장 과정에서 겪었을 트라우마, 보호시설 등에서 거주 및 성장 시 사회적 편견 또는 냉대로 사회에 대한 불만 형성 가능성과 낮은 학업 성취 수준 및 폭력적 성격과 경제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둘째, 탈북주민의 경우는 북한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온갖 어려움 때문이다. 북한에서 성장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정치적 폭력, 인권침해, 모독, 굶주림, 가난과 김씨 일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성장으로 인한 이념 형성, 사회에 대한 불만 등 김씨 일가에 대한 이상화, 잦은 처형 등을 보면서 형성되었을 트라우마, 탈출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 등으로 인한 문제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 도착이후 정착과정이나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겪는 무시와 차별적 대우 및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내재된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편견 및 인식과 이로 인한 고아 및 탈북주민 등의 사회에 대한 잠재적 불만 형성, 군 복무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외부적 요인이 가해질 시 사건 및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한다.

군 복무 시 예상되는 장병들과의 마찰 요인도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고아 및 탈북주민이 병역의무부과 대상이 되어 군에 입대할 시 폐쇄된 병영생활을 하면서 장병과의 눈에 보이지 않은 마찰요인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이 반복 누적될 경우, 사고 요인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휘관의 지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휘관으로서 휘하의 장병에게 어떤 선입관을 갖는 것이 지휘의 원칙에는 맞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고아 및 탈북

주민이 예하 부대의 병사로 전입할 경우 그들이 복무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건 및 사고를 야기하지 않을까?” 등 다양한 선입견을 전혀 부정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일 것이고 내재적으로는 은연중에 잠재적 사고요인이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특히 항상 총기와 실탄 및 수류탄을 휴대하면서 근무하는 전방사단 철책경계를 하는 부대로 갈수록 지휘관의 사고우려에 대한 걱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최전방 철책선을 경계하는 부대에서는 통상 6개월 단위로 철책선 경계부대로 교대로 투입한다. 당연히 해당부대 지휘관은 고아나 탈북주민 병사가 휘하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철책선 경계부대로 투입하는 시기에 부담을 갖고 그 병사들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조치없이 고아나 탈북주민 병사를 지휘부담을 안고 철책선 경계부대로 투입하였는데, 근무 중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이는 고아나 탈북주민 병사 본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대장에 대한 지휘 책임과 사건 사고와 연계된 부대 장병에 대한 문책, 탈북주민 병사라면 탈북주민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거나 후방지역에 잔류시킨 병사는 그대로 본인들이 따돌림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군 복무에 대한 열의가 식을 것이고 나가서 어떤 외부적 갈등 요인이 발생하거나 가해질 경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만큼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와 특히 전방 지역으로 근무지가 결정될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 다.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설문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설문은 없지만, 탈북주민에 대한 설문은 그동안 학교기관에서 설문지에 의한 방법이나 국민신문고에서 간이설문 형태, 병무청의 설문조사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이를 연도별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5년 6월,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타당성 검토를 위해 미래 병역의무 대상자인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탈북주민의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 및 병역이행 의향과 병역면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등에 대해 설문을 하였다.<sup>88)</sup>

88) 병무청, 「탈북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병무청, 2015.

이 설문조사는 2015년 6월 24~25일 이틀간에 걸쳐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38명과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병무청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현 병역면제 규정에 대하여 60명(82%)이 찬성하였으며, 반대 인원은 14명(20%)이었다.

<그림-12> 탈북주민 병역면제 찬성 및 반대(74명)



\* 출처 : 병무청 「탈북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병무청, 2015.

위의 설문에서 병역면제 찬성 이유로는 학업이나 기술습득 등 사회진출에 대한 배려(32%), 군내 내 차별 등 부적응 우려(24%), 정체성 혼란의 방지(22%)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병역면제 반대이유로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33.3%), 입영배제로 인한 자존감 저하(25.9%), 사회통합 저해(22.2%) 등을 제시하였다.

만약에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언제 부과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국 당시 연령을 고려하여 부과하자’는 인원이 22명(29.7%), ‘복무 가능한 부대를 제한하자’는 인원이 8명(10.8%), ‘복무기간을 단축하자’는 인원은 16명(21.6%),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부과하자’는 인원은 28명(37.9%)이었으며, 선호하는 병역 의무 형태로 현역복무 20명(27%), 사회복무 17명(23%), 산업기능요원 8명(10.8%), 장교 및 부사관 29명(39.2%)을 각각 제시하였다.

그 외에 자유 의견으로 ‘한국에 사는 만큼 법에 따라 평등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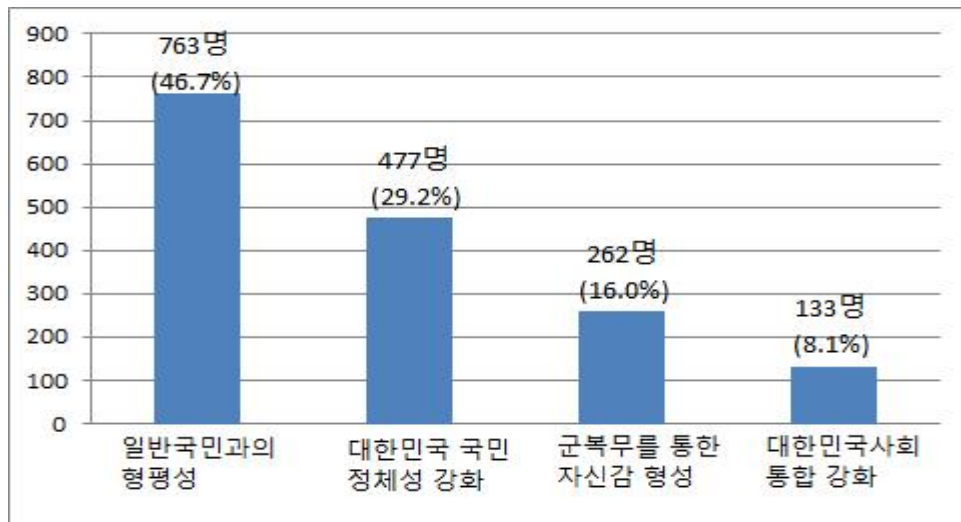
이 설문은 표본수가 적어 유의미한 설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201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만 15세 이상 2,66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면접 조사의 결과이다.

탈북주민의 병역면제 규정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여부에 대한 설문을 보면, 반대의견이 1,648명(62.8%), 찬성의견이 987명(36.2%)으로서 탈북주민도 군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sup>89)</sup>

병역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이라는 의견이 763명 (46.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강화’가 477명(29.2%), ‘군 복무를 통한 자신감 형성’이 262명(16%), ‘남한 사회와 통합 강화’가 133명(8.1%) 순이었다.

<그림-13> 탈북주민 병역면제 반대 이유(1,6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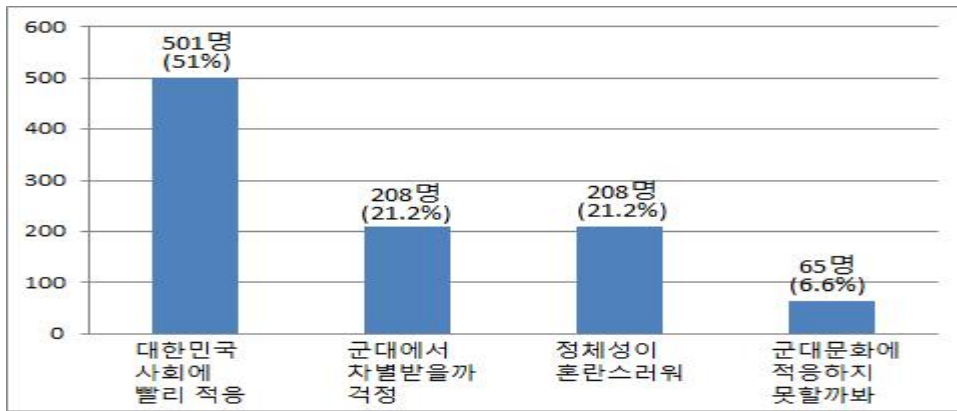
\* 출처 :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2016년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인식조사」, 남북하나재단, 2017, p.16.

다음은 병역면제에 찬성하는 이유로, ‘남한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가 501명(51%), ‘군대에서 차별받을까 걱정’이 208명(21.2%),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가 208명(21.2%), ‘군대문화에 적응하지 못할까 봐’가 65명(6.6%)이었다.<sup>90)</sup>

89)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2016년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인식조사」, 남북하나재단, 2017, pp.11~12.

90)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앞의 연구, 2017, pp.13~17.

<그림-14> 탈북주민 병역면제 찬성 이유(982명)



\* 출처 :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2016년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인식조사」, 남북하나재단, 2017, p.13.

위의 설문조사는 그 표본수가 2,663명으로 많으며, 그 대상도 10대로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기 때문에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 설문에서 주목할 사항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남북통합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는 상관없이 병역면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탈북주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식은 물론 정체성을 강화하며 탈북주민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의식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제기된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탈북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며,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의 <표-40>을 통하여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표-40> 탈북주민의 병역면제 찬성 및 반대에 대한 인식<sup>91)</sup>

□ 연령별 병역면제 찬성 및 반대

(단위 : 명,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찬성(%)	118(51.1)	233(44.1)	230(37.6)	229(32.6)	106(30.5)	71(31.2)
반대(%)	112(47.1)	278(54.5)	379(61.8)	467(66.5)	243(68.1)	169(66.9)

91) <표-40>에서 합이 100이 되지 않은 이유는 일부 무응답 인원이 있기 때문이다.



□ 남한거주 기간별 찬성 및 반대

(단위 : 명, %)

구 분	1~3년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찬성(%)	68(40.9)	181(39.9)	469(34.3)	269(35.3)
반대(%)	99(57.3)	261(48.4)	830(64.9)	458(63.8)

□ 남한통합 학력별 찬성 및 반대

(단위 : 명, %)

구 분	소학교 졸업이하	중학교 졸업이하	전문학교 졸업이하	대학교 졸업이상	기타/무응답
찬성(%)	64(42.1)	681(35.7)	83(33.3)	50(34.4)	5(48.8)
반대(%)	84(54.9)	1,170(63.3)	169(65.8)	99(65.6)	7(51.2)

□ 남한생활 만족도별 찬성 및 반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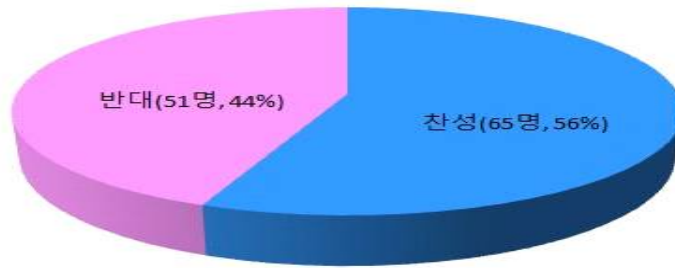
구 분	만족	보통	불만족	무응답
찬성(%)	642(34.4)	288(38.3)	44(46.8)	3(46.2)
반대(%)	1,146(64.3)	444(60.8)	52(53.2)	3(53.8)

\* 출처 :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2016년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인식조사」,  
남북하나재단, 2017, p.12.

이 설문 결과에서 관심을 가질 사항으로, 탈북주민들 자신도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와 군 복무를 통한 자신감 형성, 남한 사회와 통합 강화 등을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두 설문은 모두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다. 다음은 남한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서, 먼저 국민신문고에 의한 병역의무부과 온라인설문 결과를 보자. 이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차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다. 당시 질문은 두 개 문항으로 현재의 병역면제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한이탈주민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116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5> 탈북주민 병역면제 설문조사 결과(2016.11.9.~28)



\* 출처 : <https://www.mma.go.kr/iFrame.do?mc=mma0000915>(검색일: 2021. 6. 23)

찬성하는 이유로는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정체성의 혼란, 군에서 차별, 군대문화에 적응하지 못할까 우려 등을 제시하였다. 이 설문에서는 병역면제 의견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차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7년 9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78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였다. 당시 질문은 첫째,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제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둘째, 병역면제에 찬성할 경우 그 이유 3가지와 반대할 경우 그 이유 3가지에 대한 설문이었다. 당시 78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6> 탈북주민 병역면제 설문조사 결과(2017.9.5.~24)



\* 출처 : <https://www.mma.go.kr/iFrame.do?mc=mma0000915>(검색일: 2021. 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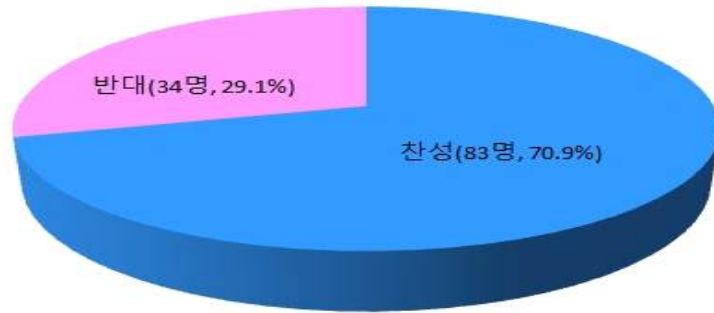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체성 혼란 22명(34%), 한국사회 조기적응 17명(26%), 군에서 차별 14명(22%), 군대문화 부적응 12명(18%)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29명(26%), 사회통합 28명(25%), 정체성 강화 43명(38%), 자신감 12명(11%)을 들고 있다.

3차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으며,

117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였다. 당시 질문은 첫째, 병역면제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과 둘째,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당시 117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7> 탈북주민 병역면제 설문조사 결과(2018.9.10~21)



\* 출처 : <https://www.mma.go.kr/iFrame.do?mc=mma0000915>(검색일: 2021. 6. 23)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체성의 혼란 방지(41명)와 한국사회 조기 적응(28명), 군대 내에서 차별(27명)을 제시하였다. 반대의견으로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20명), 사회통합(18명),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강화(16명)를 들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는 입국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96명)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부과(21명)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위의 3차례의 온라인 설문조사는 참여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유의미한 설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일반 국민이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일단을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탈북주민의 병역면제에 대하여 적지 않은 국민이 반대하는 추세로, 그 이유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사회통합 및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등을 들고 있다. 반면에 병역면제에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정체성 혼란의 방지, 한국 사회에서의 조기 적응의 어려움, 군에서 차별 우려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둘째, 탈북주민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는 한국에 도착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즉, 입국 이후 학업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등 사회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표-41> 탈북주민 병역의무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단위 : 명, %)

구분		비율(%)		
		1차('16.11)	2차('17.9)	3차('18.9)
병역 면제	찬성	65명(56)	33명(42.3)	83명(70.9)
	반대	51명(44)	45명(57.7)	34명(29.1)
병역의무 부과시기	사회적응기간 고려	76명(82.6)	43명(63.2)	96명(82.1)
	일반국민과 동일	16명(17.4)	21명(36.8)	21명(17.9)

\* 출처 : <https://www.mma.go.kr/>(검색일: 2021. 7. 20)

그 외에도 2011년 5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서울과 대전 및 부산시 소재 4년제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군사학과 재학생 375명(남학생 157명, 여학생 218명) 등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탈북주민의 병역면제에 관하여 자유토론을 한 뒤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232명(61.8%)이 병역면제를 찬성하였고, 143명(38.2%)이 반대하였다.<sup>92)</sup>

<표-42> 탈북주민 병역면제에 대한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구분	계	찬성	반대
병역면제	375명(100%)	232명(61.8%)	143명(38.2%)
사유		보안상의 이유(63.9%) 정체성의 혼란(25.2%) 건강상의 이유(1.7%) 기타(9.1%)	남한 국민과 형평성(80.1%) 소수자 인권 문제(12.8%) 통일 시 걸림돌(3.5%) 기타(3.5%)

\* 출처 : 강동완,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징집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8권제2호, 2012년 여름(통권 제96호), p.249~251.

앞에서 제시한 국민신문고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면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평균적으로 60%, 반대하는 의견은 40%에 달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는 병역면제에 대하여 61.8%가 찬성하였고 38.2%가 반대하였다. 대체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학생의 경우 60% 정도가 병역의무부과를 반대하고 40% 정도가 찬성하는 것이다.

92) 강동완,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징집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2012년 여름(통권 제96호), pp.249~251.

여기서 제시된 일반 국민이나 대학생의 의견이 표본수의 제한 때문에 국민의 대체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이나 대학생의 일부에서 탈북주민의 병역면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 라. 해결방안

지금까지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관련 설문조사는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았듯 일반 국민은 면제 의견이 다소 높고, 탈북주민은 면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탈북주민도 한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국민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병역의무를 다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의견은 참고하되, 우리 사회가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를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과 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첫째,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또는 인식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아 및 탈북주민도 국민의 일원이며 사회가 따뜻하게 보듬고 가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아나 탈북주민이 현재는 비록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군 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치가 낮은 사람들은 아니다. 똑같은 국민의 자제로서 충분히 병역의무가 부과될 경우 군 복무를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군의 전투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 등을 바탕으로 정치권에서의 동의와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2015년에 개정안이 발의되었던 적이 있지만, 당시는 탈북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만큼 고아 및 탈북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넷째, 군 지휘관, 병사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고아 및 탈북주민이 군에 입대하여 배치될 때 다른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대우하면서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병사들은 전우로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병역의무부과에 대비하여 군 복무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할 준비가 필요하다. 고아나 탈북주민이 군 복무 중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무지원 프로그램과 병역의무 이행 이후 사회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후방지역 우선 배치 후 전방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때 우려되는 사항도 있는 만큼 우선 후방지역의 비전투 부대나 학교 기관 등에서 운용을 한 뒤 분석 후 점차 전·후방 전 지역으로 근무지를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행초기에는 행정 및 기술특기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이후 모든 특기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과 여러 조건이 충족될 때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 7.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가. 설문 개요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책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인 고아 및 탈북주민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일반 국민과 군 지휘관 및 병사 등의 공감대 형성 등 삼위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부서에서 법령의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앞에서 탈북주민의 병역의무에 대한 설문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개략적인 분석을 하였지만, 이 시점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설문은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 설문지 문항은 병무청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먼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기관을 방문하거나 일부는 온라인으로 설문을 하였다. 군부대는 국방부의 승인 후 육군, 해군, 공군 부대와 협의를 거쳐 사전 준비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영관장교와 위관장교, 부사관 및 병사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을 하였다. 다만,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설문지를 군부대로 보내 부대장 협조 하에 실시하였다.

<표-43>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설문조사

구 분	기 간	대상인원	방 법	설문문항	비 고
일반국민	'21.9.1. ~ 9.28.	180명	대면/온라인설문	12문항	학생, 회사원, 공무원 등
군인	'21.9.3. ~ 9.17.	220명	설문지	17문항	육군, 해군, 공군

이와는 별도로 고아 및 탈북주민으로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과 현역의 장교를 찾아서 메일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인터뷰를 실시한 목적은 군에 입대할 적령기의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과 현역의 복무 중 경험한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 및 향후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제도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등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표-44> 고아 및 탈북주민 예비역 등 인터뷰

구 분	기 간	방법	대상인원	비 고
고아 및 탈북주민	'21.9.6. ~ 10.28.	메일/전화	3명	설문결과 붙임첨부

#### 나.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만큼 학생, 회사원, 공무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가 일반 국민의 병역의무부과와 형평성에 맞는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설문하였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이 입대할 경우 영관장교와 위관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들은 부하로서 관리를 해야 하는 점과 병사들은 동료로서 같이 생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찬성 및 반대와 각각의 이유, 간부를 대상으로 지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병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와 군 복무 중 복무적응 제고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지 등을 설문하였다.

일반 국민에 대한 설문 내용은 붙임 #1(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제도에 대한 설문: 일반 국민), 군인에 대한 설문지는 붙임 #2(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제도에 대한 설문: 군인), 고아 및 탈북주민과의 병역의무부과 관련 심층 인터뷰 질문사항은 붙임 #3(고아 및 탈북주민 인터뷰 질문지)에 첨부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은 붙임 #4(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설문 결과 분석: 일반 국민), 군인의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은 붙임 #5(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설문 결과 분석: 군인), 고아 및 탈북주민과의 병역이행 인터뷰 답변 사항은 붙임 #7(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이행 관련 인터뷰)에 첨부되어 있다.

#### 다. 설문조사 결과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과 군 지휘관, 간부,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협조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제시하고 진행하였으며,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문 취지를 설문서에 포함한 설문조사지를 이용하였다.

##### 1) 일반 국민 대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총 180명(남자: 128, 여자: 52)이 참여하였으며 여기에 참여한 성별, 연령별 구성 및 직업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45> 일반 국민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 □ 성별 구성

(단위 : 명, %)

구분	계	남성	여성
인원(%)	180명(100)	128명(71)	52(29%)

##### □ 연령대별 구성

(단위 : 명, %)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인원(명)	180	77	23	38	35	7
비율(%)	100	42.8	12.8	21.2	19.4	3.9



□ 직업별

(단위 : 명, %)

구분	계	학생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	기타
인원(명)	180	63	66	39	8	4
비율(%)	100	35	36.7	21.6	4.4	2.3

고아에 대한 설문은 첫째,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으며, 찬성할 경우는 찬성하는 이유와 적합한 방안, 반대할 경우는 반대하는 이유와 적합한 방법을 각각 표기하도록 하였다. 둘째, 향후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병역의무부과 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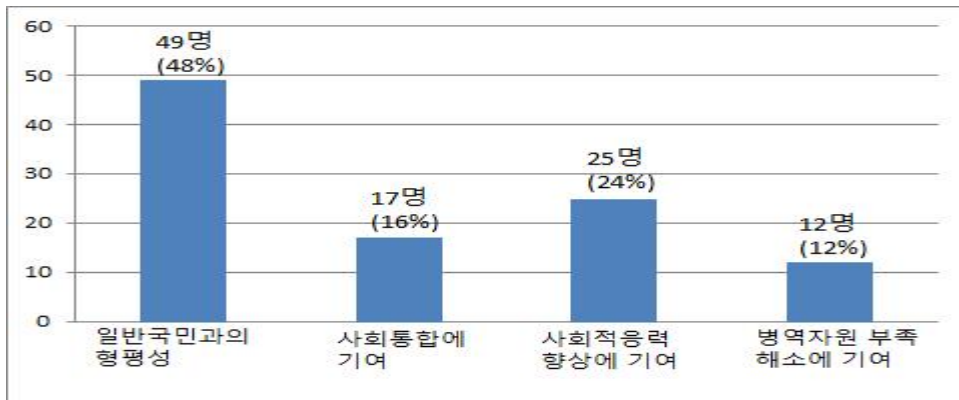
<그림-18> 고아 병역의무부과 찬성 및 반대(일반 국민)



위의 <그림-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은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찬성하는 비율이 103명(57%)이었으며, 반대하는 이유는 77명(43%)이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로 인하여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은 물론 병력 규모의 축소와 부대의 해체 등이 알려지면서 병역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찬성하는 이유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사회통합에 기여, 사회적응력 향상 기여, 병역자원 부족 해소에 기여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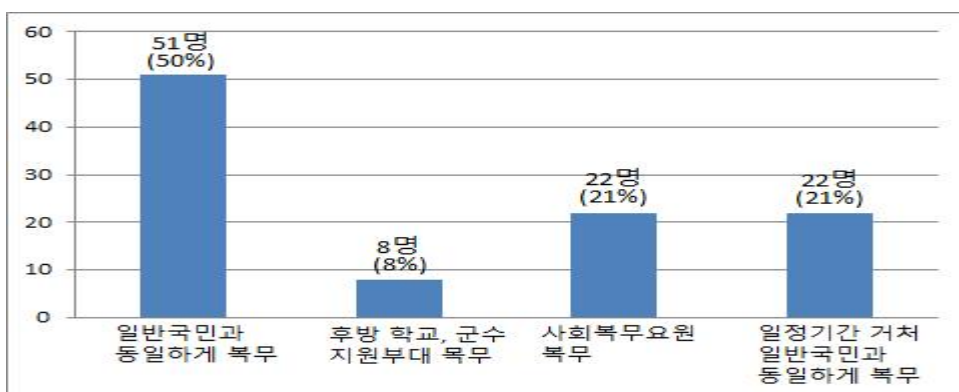
<그림-19> 고아 병역의무부과 찬성 이유(일반 국민)



일반 국민은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49명(48%), 사회 적응력 향상 25명(24%), 사회통합에 기여 17명(16%), 병역자원 부족 해소에 기여 12명(12%)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고아의 병역의무부과를 일반 국민의 병역의무와 형평성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후방의 군수지원부대나 학교 기관 등에서 우선 근무토록 할 것인지,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토록 할 것인지, 일정 기간 단계별 적용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림-20> 고아 병역의무부과 시 적합한 방법(일반 국민)



위의 <그림-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아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인원이 51명(50%),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및 일정기간을 거쳐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가 각각 22명(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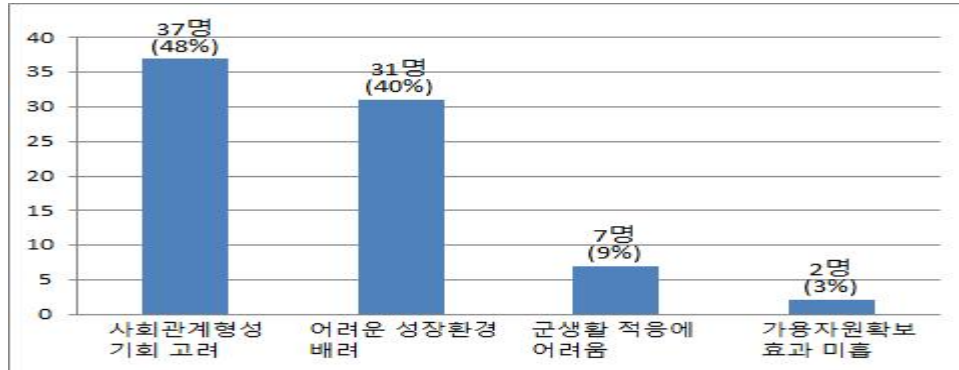
이어서 후방지역의 학교 및 군수지원 부대 8명(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아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적합한 방법으로는 신청에 의거 병역의무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59명(77%)이었으며,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면제하자는 인원은 18명(23%)으로 신청에 의거 병역의무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높았다.

향후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병역의무부과의 기준으로는 아동양육 시설 재원 등 상황을 고려하자는 의견은 112명(62%),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자는 의견은 68명(38%)으로 고아들이 군에 입대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높았다.

다음은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의 반대하는 이유를 고아의 어려운 성장 환경을 감안한 배려의 필요, 병력자원 부족에 따른 확보 효과의 미흡, 경제적 독립과 사회관계 형성 기간의 필요, 군 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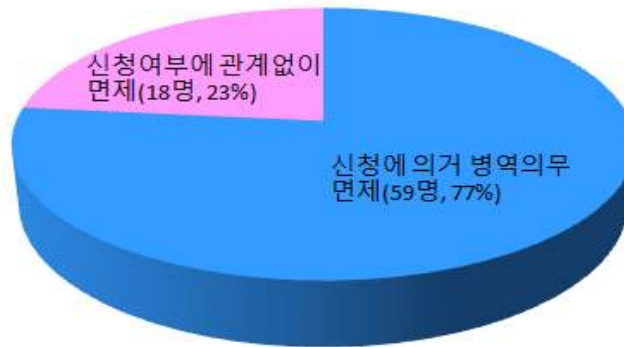
<그림-21> 고아 병역의무부과 반대 이유(일반 국민)



위의 <그림-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은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를 고아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적응 등 사회관계를 형성할 기간을 고려하자는 인원 37명(48%), 고아들의 어려운 성장환경을 배려하자는 의견이 31명(40%), 군에 입대할 경우 군 생활의 적응 어려움 7명(9%), 고아에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할지라도 가용자원 확보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2명(3%)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고아가 성장과정에서 겪은 여러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 등 향후 사회 적응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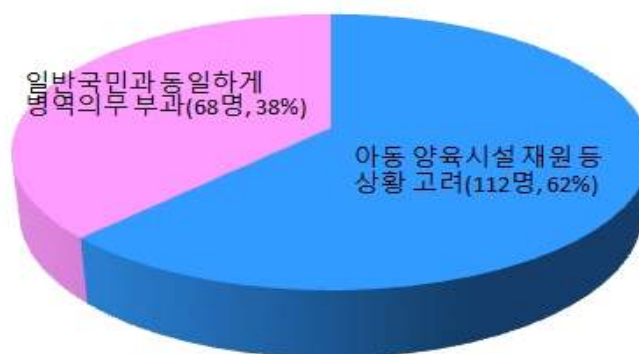
다음은 고아의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현재와 같이 본인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를 면제할 것인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면제할 것인지 등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림-22> 고아 병역의무 미부과 시 적합한 방법(일반 국민)



일반 국민은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의거 병역의무 면제를 우선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향후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재원하였던 기간 등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림-23> 향후 고아 병역의무부과 시 기준(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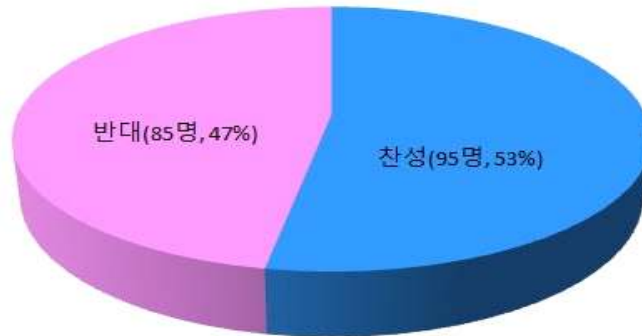


국민은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머물렀던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고아들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재원하는 도중에 경험 또는 형성되었을 성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설문이다.

첫째, 탈북주민에게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및 각각에 대한 이유 등을 물었다. 또한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가장 적합한 방법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둘째, 향후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병역의무부과 방법을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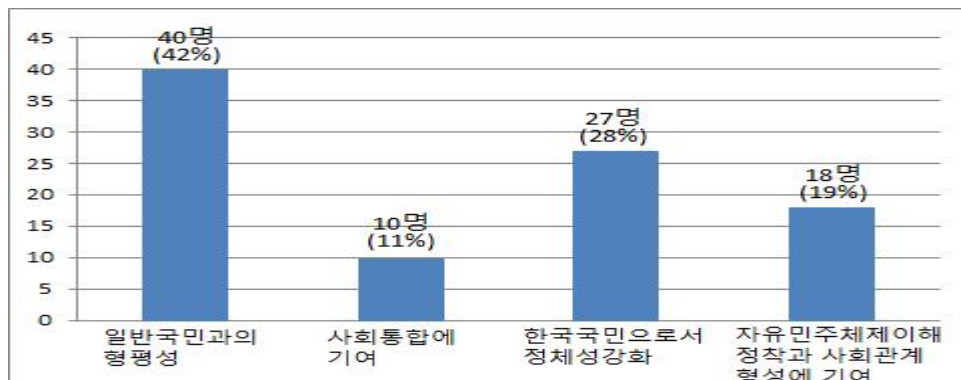
<그림-24>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찬성 및 반대(일반 국민)



일반 국민은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95명(53%)이 찬성하였고 85명(47%)이 반대하였다. 이는 탈북주민은 국민의 일부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사회통합에 기여,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자유 민주체제의 이해와 한국 사회 정착 및 사회관계 형성 등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림-25>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찬성 이유(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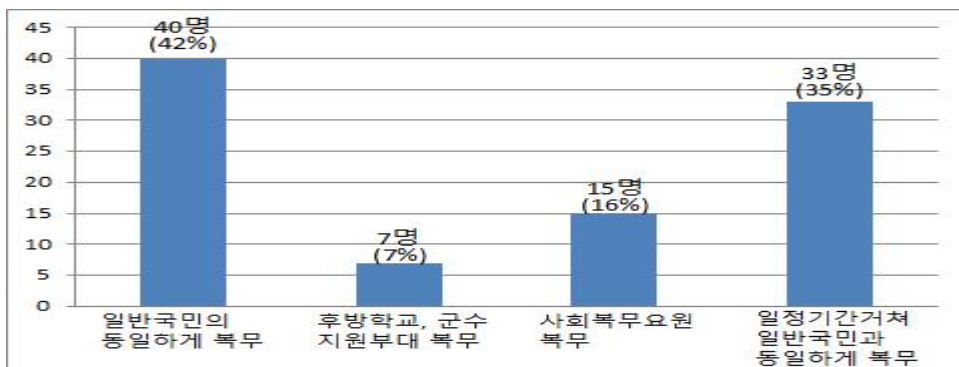


일반 국민은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찬성하는 이유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40명(42%)을 우선으로 하여 한국 국민으로서 정체성 강화 27명(28%),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이해 및 한국 사회 정착과 사회관계의 형성 18명(19%), 사회통합의 기여 10명(11%)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역시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와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우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복무, 후방의 학교 및 군수지원부대에서 복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일정기간을 거쳐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복무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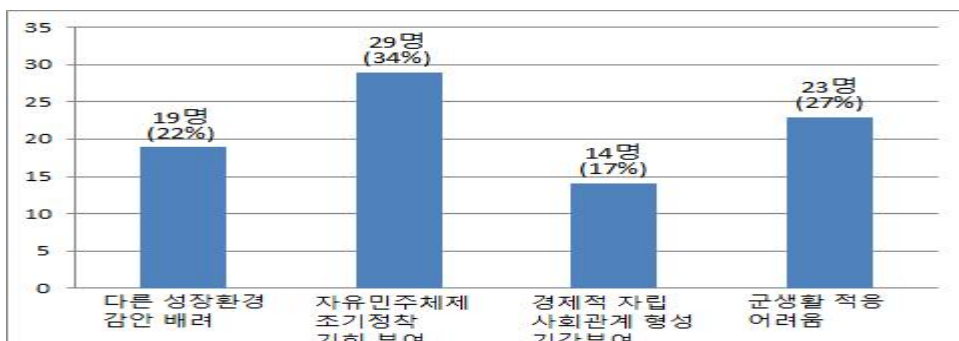
<그림-26>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적합한 방법(일반 국민)



일반 국민은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복무하는 방안 40명(42%)을 우선으로 하여 일정 기간을 거쳐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하는 방안 33명(35%),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는 방안 15명(16%), 후방의 학교 및 군수 지원부대 복무 7명(7%) 등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다음은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를 반대하는 이유로 다른 성장환경을 감안한 배려 필요, 입국 이후 자유민주체제 조기 정착을 위한 시간 부여, 경제적 독립과 사회관계 형성기간 고려, 군 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림-27>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반대 이유(일반 국민)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은 이들이 북한지역에서 입국한 점을 고려하여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한 시간의 부여 29명(34%), 체제가 다른 사회에서 왔음을 고려할 시 군 생활에 있어 적응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 23명(27%), 북한지역에서 성장한 환경을 배려할 필요성 19명(22%), 한국 정착이후 경제적 자립과 사회관계 형성 기간의 필요성 14명(17%)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탈북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병역의무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57명(67%)으로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면제하자는 의견 28명(33%)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 향후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는 입국 시의 연령과 사회적응 등을 고려할 필요성과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를 제시하였다.

<그림-28> 향후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방법(일반 국민)



향후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병역의무부과 방법에 대해서는 입국시의 연령과 학업 등 사회적응 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인원 134명(75%)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부과하자는 인원 46(25%)에 비하여 높다. 이는 탈북주민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한국 사회에 적응한 뒤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탈북주민이 북한에서 성장이후 이념적으로 형성된 과정에서 뒤늦은 나이로 군에 입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감안한 대담으로서 그만큼 입국시의 연령과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 2) 군인 대상

다음은 군의 영관급, 위관급 장교, 부사관 등의 간부와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관련 군인대상 설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군에 입대할 경우, 직접 지휘해야 대상으로 군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설문에는 총 220명(영관장교: 101명, 위관장교: 74명, 부사관: 15명, 병사: 3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다시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별로 분류하면 육군 170명, 해군 25명, 공군 25명 등이다.

이렇게 군별 및 계급별로 구분하여 설문하는 이유는 각 군의 대체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다만, 각 군 및 계급별 설문결과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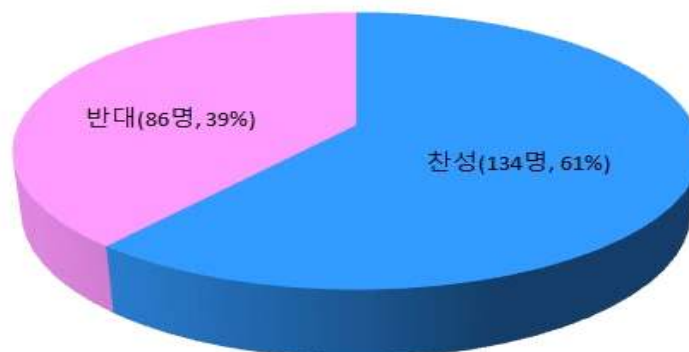
<표-46> 계급별 설문조사 참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영관급	위관급	부사관	사병
계	220	101	74	15	30
육군	170	75	50	15	30
해군	25	25			
공군	25	1	24		

먼저 고아에 대한 설문으로 첫째,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찬성할 경우는 찬성에 대한 의견을, 반대할 경우는 반대하는 의견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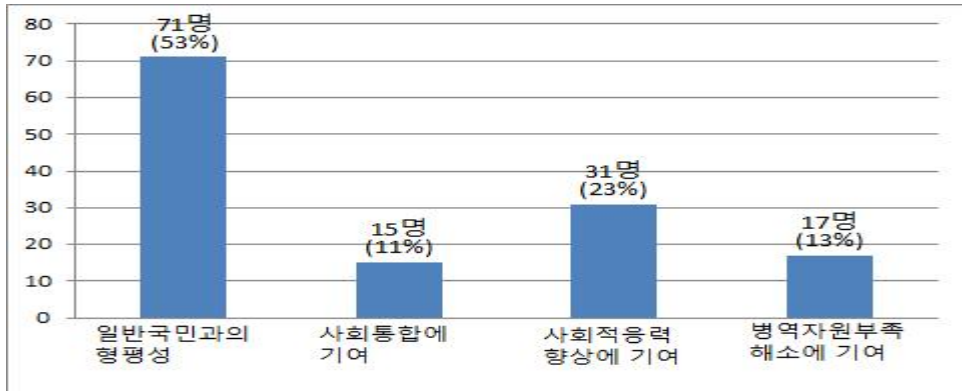
<그림-29> 고아 병역의무부과 찬성 및 반대(군인)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찬성 134명(61%), 반대 86명(39%)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의 찬성 비율(57%)에 비하여 다소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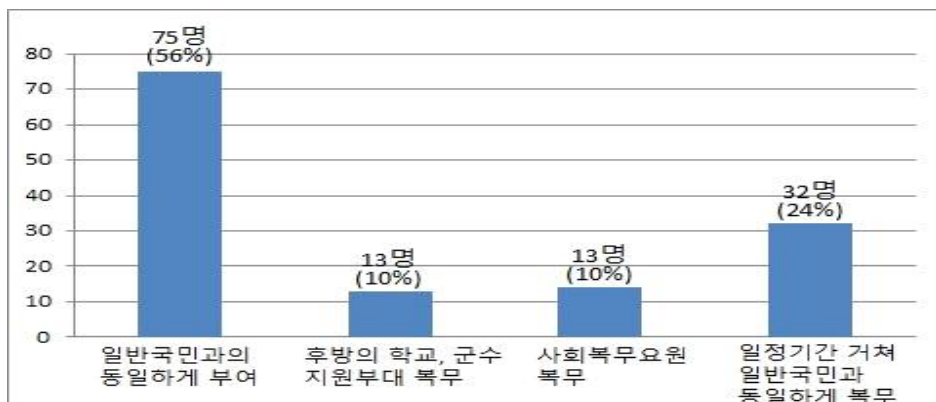
<그림-30> 고아 병역의무부과 찬성 이유(군인)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찬성 이유를 보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71명(53%), 사회 적응력 향상 기여 31명(23%), 병역자원 부족 해소 기여 17명(13%), 사회 통합에 기여 15명(11%)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이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에 찬성하는 이유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우선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의 방법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후방의 전투근무지원부대 및 학교기관 등에서 복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일정기간을 거쳐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복무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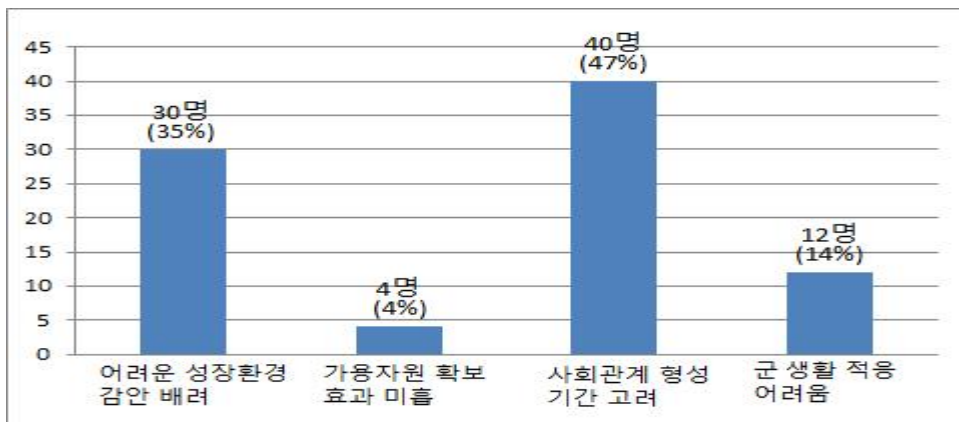
<그림-31> 고아 병역의무부과 시 적합한 방법(군인)



군인들은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에 적합한 방법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75명(56%), 일정 기간을 거쳐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근무 32명(24%),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14명(10%), 후방의 전투근무지원부대 및 학교기관 등에서 복무 13명(10%) 등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복무토록 하자는 의견이 일반 국민(50%)이나 군인(56%)에게 모두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반대하는 이유로 어려운 성장환경을 감안하여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확보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의견, 고아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관계 형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고아가 군에 입대할 경우 군 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32> 고아 병역의무부과 반대 이유(군인)



군인들은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반대하는 이유로 고아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관계 형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 40명(47%), 어려운 성장환경을 감안하여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30명(35%), 고아가 군에 입대할 시 군 생활 적응의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12명(14%),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확보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의견 4명(4%) 순으로 병역의무부과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 재원 기간 등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과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등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림-33> 향후 고아 병역의무부과 시 기준(군인)



향후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기준은 아동양육시설 재원기간 등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이 122명(56%)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자는 의견 98명(44%)에 비교하여 높았다.

다음은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설문으로, 먼저 탈북주민에게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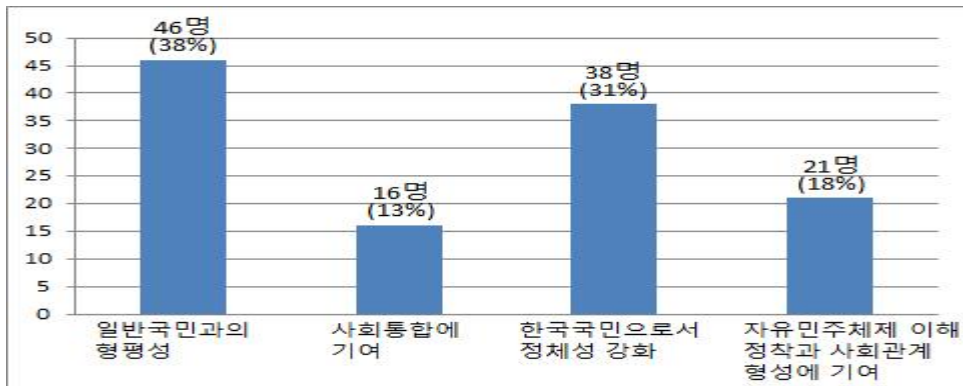
<그림-34>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찬성 및 반대(군인)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한 군인들의 의견은 찬성이 121명(55%)으로 반대 99명(45%)에 비하여 다소 높다. 이는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볼 때 비슷한 수치(일반 국민: 찬성 53%, 반대 47%)이다. 군인들 역시 탈북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은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찬성하는 이유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사회통합에 기여, 한국 국민으로 정체성 강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 및 정착과 사회관계 형성의 기여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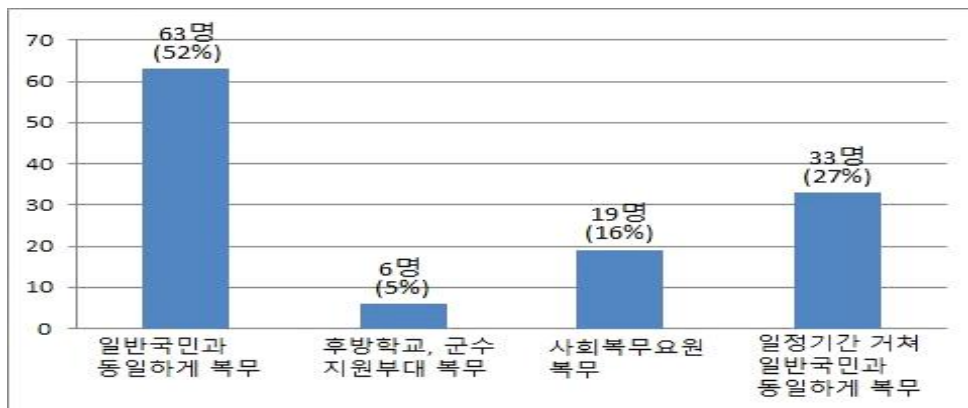
<그림-35>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찬성 이유(군인)



군인들은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찬성의 이유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46명(38%), 한국 국민으로서 정체성 강화 38명(31%),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 및 정착과 사회관계 형성 21명(18%), 사회통합에 기여 16명(13%)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순서와 같은 것으로, 군인들도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은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후방의 군수지원부대 및 학교기관 등,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일정기간 단계별 적용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향후 탈북주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부대 근무처는 특히 초기단계에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의미가 있다.

<그림-36>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적합한 방법(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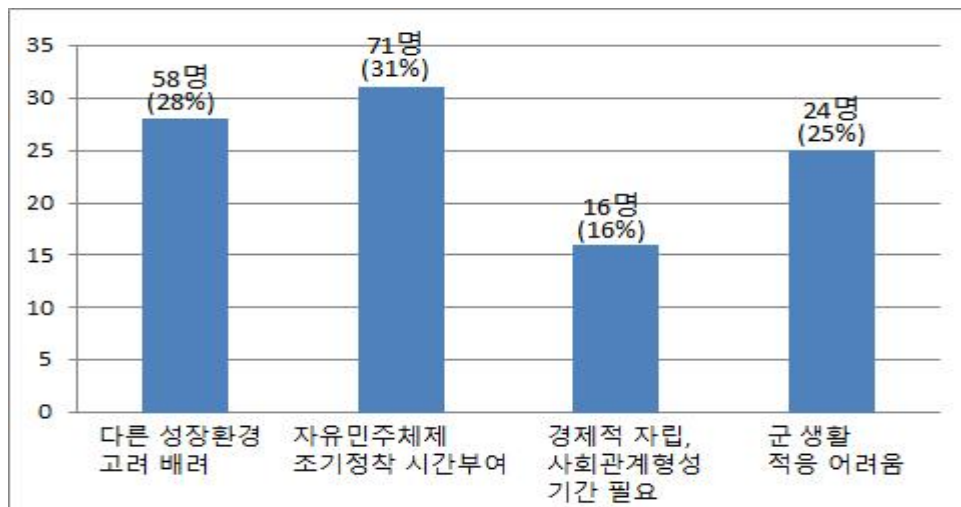


군인들은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 의무부과 63명(52%), 일정기간 단계별 적용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33명(27%),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19명(16%), 후방의 학교기관이나 군수지원부대 근무 6명(5%)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순서와 같은 것으로, 군인들도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때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복무하도록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다른 성장환경을 감안할 필요성과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한 시간 부여, 경제적 독립과 사회관계 형성기간의 필요, 군생활 적응 어려움 등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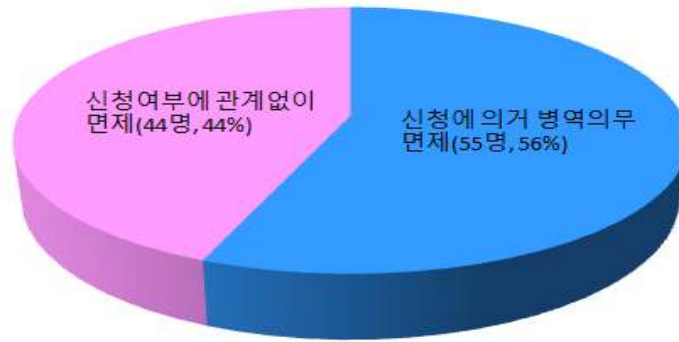
<그림-37>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반대 이유(군인)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군인들은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반대 하는 이유로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한 시간 부여 31명(31%), 다른 성장환경을 감안할 필요성 28명(28%), 군생활 적응 어려움 24명(25%), 경제적 독립과 사회관계 형성기간의 필요 16명(16%)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이 본인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 면제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면제를 면제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하여 설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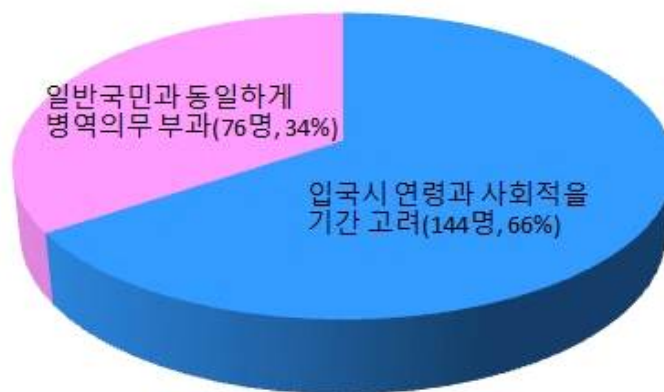
<그림-38> 탈북주민 병역의무 미부과 시 적합한 방법(군인)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병역의무 면제 55명(56%),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면제 44명(44%)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향후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병역의무부과 방법으로 입국 시의 연령과 사회적응 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성과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군인들은 향후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입국시의 연령과 사회적응 기간 등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144명(66%),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자는 의견 76명(34%) 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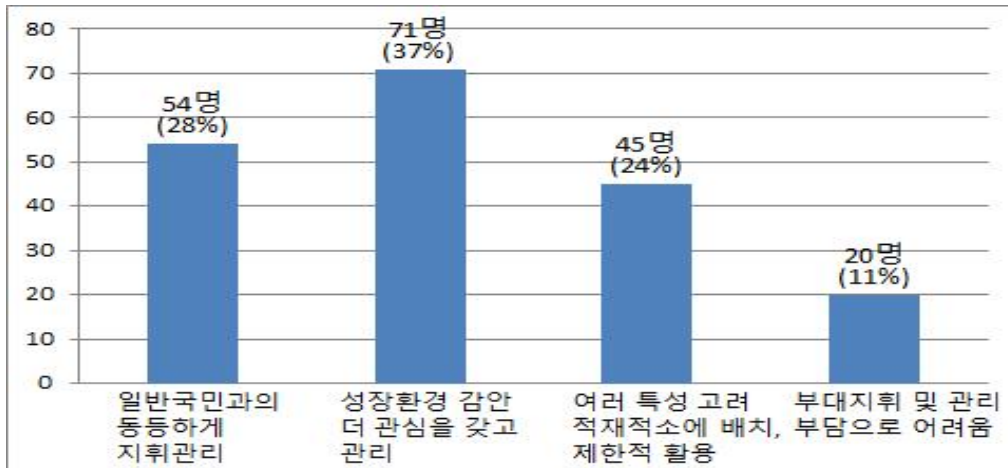
<그림-39> 향후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방법(군인)



다음은 간부만을 대상으로 고아 및 탈북주민이 입대할 경우 지휘 및 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지휘 및 관리할 것인지, 고아 및 탈북주민의 성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더 관심을 갖고 지휘 및

관리할 것인지,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제한적 활용할 것인지, 부대 지휘 및 관리 측면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림-40>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지휘 및 관리(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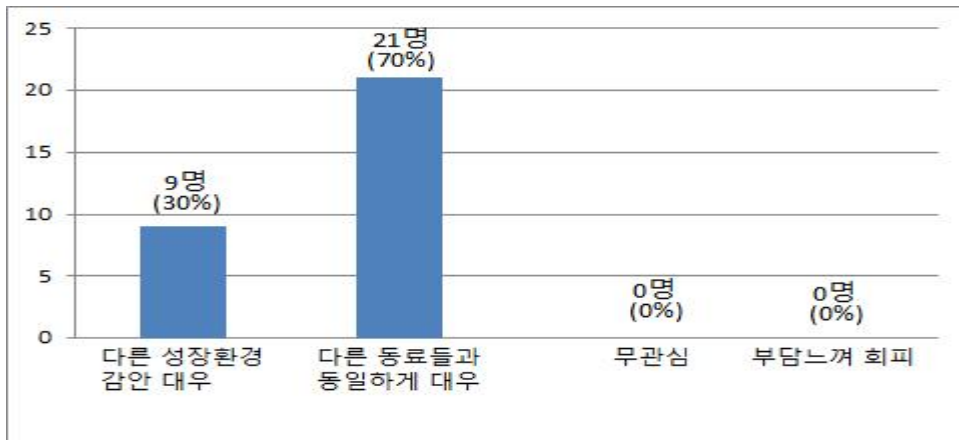
군 간부들은 고아 및 탈북주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그들의 출생 및 성장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트라우마 등을 감안하여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는 의견이 71명(37%)으로 높고 이어서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지휘 및 관리하겠다는 의견이 54명(28%), 고아 및 탈북주민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제한적으로 활용할겠다는 의견이 45명(24%), 부대 지휘 및 관리에 부담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20명(11%)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군 지휘관들이 고아 및 탈북주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들이 출생 및 성장한 환경을 감안하여 지휘 및 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병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으로, 고아 및 탈북주민에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할 경우 다른 동료들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인지, 다른 성장환경을 감안하여 대우할 것인지, 다른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인지, 부담스럽게 느껴 회피할 것인지 등을 제시하였다.

이 설문이 중요한 이유는 고아 및 탈북주민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직접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 과정서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을 일반 병사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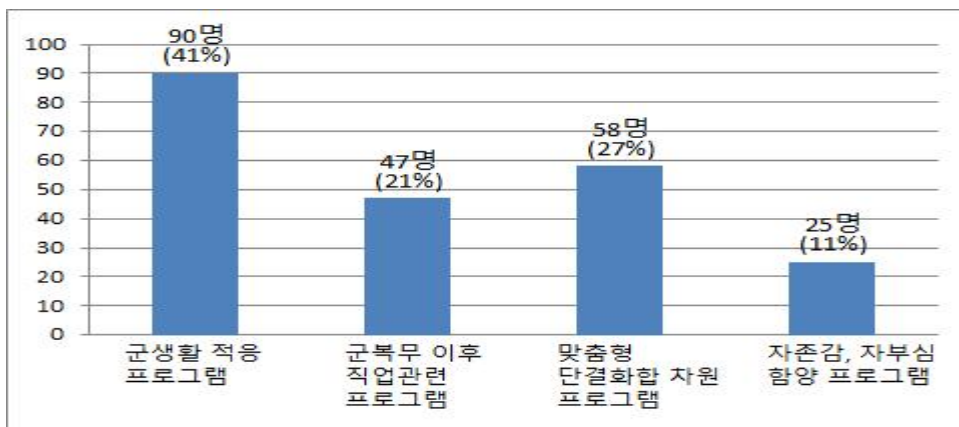
<그림-41>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에 대한 대우(병사)



병사들은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가 같은 병영생활관으로 올 경우, 전우로서 동일하게 대우하겠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고아 및 탈북주민이 군에 입대할 경우, 병영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군 생활 적응 프로그램, 군 복무이후 직업관련 프로그램, 장점을 살리면서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단결 및 화합 차원 프로그램, 자존감 및 자부심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42>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의 병영생활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군인)



위의 설문결과를 볼 때 군에서는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들을 위하여 병영생활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필요성 90명(41%), 고아 및 탈북주민에 맞는 맞춤형 단결 및 화합차원 프로그램 58명(27%), 군 복무이후 구직 관련 프로그램 47명(21%), 자존감 및 자부심 함양



프로그램 25명(11%)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들이 입대할 경우에 대비하여 복무적응 프로그램과 군 복무이후 구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제기된 고아 관련 기타의견으로서 “간부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여 간부로 근무할 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고아에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부과 시 소득이 없는 어려움으로 생계유지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역이후 목돈 마련 또는 안정적 취업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 “고아는 전역이후 갈 직장도 집도 없는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접근으로 생각한다.”, “입대 후 간부전환될 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고아라고 해서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신체 건강한 남성은 군에 오는 것이 합당하다.”, “고아가 아니어도 어려움이 있는 일반 국민도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다.”, “군 생활 중 적금이나 자기계발비용 등 사회복귀 대비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부사관 복무 등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붙임 #6 참조)

한편, 탈북주민 관련 기타의견으로 “군 조직에서 잘 융화될지, 사상교육과 이념 차이로 어려울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무라도 이행해야 한다.”, “탈북 이후 정착기간과 적응을 위하여 상근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방식이 옳바를 것 같다.”, “탈북주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비밀누설 등의 우려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탈북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탈북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은 맞지만, 귀순 목적, 출신 등 면밀한 조사이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도 병역의무 이행하는 만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탈북주민 병사를 군에서 북한 실상 등을 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도 제시하였다.(붙임 #6 참조)

### 3) 인터뷰 결과

한편 군 복무 연령대의 고아 및 탈북주민으로서 지원하여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과 지원하여 현역장교로 복무 중인 인원을 대상을 이메일로 의견을 청취하였다. 별도의 대담은 먼저 질문지를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한 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전화 인터뷰 형태로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고아인 육군에서, 탈북주민은 해병대에서 복무한 예비역이며 현재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여군 장교는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들과의 대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붙임 #7,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이행 관련 인터뷰 참조)

<표-47>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이행 면담 결과(요약)

구분	#1(고아 예비역)	#2(탈북주민 예비역)	#3(탈북주민, 현역 장교)
성장환경	4남2녀 중 다섯째, 고교졸업	한국입국 이후 유치원 등 정상 교육, 대학 재학	15세 입국, 대학졸업, 학군장교 지원
지원배경	국민으로 역할, 군복무로 자신의 정신 개조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면제는 역차별, 해병대 지원 자부심	탈북주민도 군에 갈 수 있다는 인식 전환, 어려움에 대한 도전
복무이유	대한민국은 휴전 중, 국민으로서 역할 이행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실천	장교로서 군 본연의 모습 홍보에 성취감 인식
보람 사례	군복무 마쳤다는 자신감	국방부 대회 참여 (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	정훈공보병과 장교로 정신 전력 강화에 기여
장병관계	특별한 문제점 없었음	특별한 문제점 없었음	-
지원필요 분야	고아 주거 문제 중요, 휴대폰 통신비 등 지원	자기계발 경제적·제도적 지원(가산점 등)	특별한 것 없음
전역 소감	군 복무를 통해 자신감 형성	군 복무에 시원섭섭함	(현역 복무 중)
복무후기	군복무 중 건강 유지하면서 복무 요망	군 복무가 결코 쉬운 길을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선택, 선택 후 최선을 다하는 것	장교 및 부사관 등으로 근무 시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바람
복무소감	휴가 시 주거지원 필요	군인에 대한 시선 개선	군에 대하여 이해 증진

## 라. 분석

### 1)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표-48> 고아 병역의무부과 찬성 및 반대

(단위 : 명, %)

설문대상	기 간	계	찬성	%	반대	%
일반 국민	'21. 9. 1. ~ 9. 28.	180명	103명	57.2	77명	42.7
군 인	'21. 9. 13. ~ 9.17.	220명	134명	60.9	86명	39.1

\* 출처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설문조사」,  
단국대학교, 2021. 8.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설문은 그간 실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기간 중 실시한 설문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본 설문에서 일반 국민은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찬성 103명(57.2%), 반대 77명(42.8%)으로서 찬성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병역의무 찬성 이유로는 일반 국민의 병역의무부과 형평성을 주로 들었으며, 반대이유로는 사회관계 형성 기간이 필요함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군에서는 찬성 134명(61%), 반대 86명(39%)으로서 찬성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이유로는 일반 국민과의 병역의무부과 형평성을 주요 이유로 제시하였고 반대이유로는 사회관계 형성 기간을 고려할 필요성 등을 들었다.

### 2)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의 찬성 및 반대 등에 대한 설문은 이미 여러 차례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까지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표-49>와 같다.

<표-49>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찬성 및 반대(설문 결과 종합)

(단위 : %)

설문대상	기 간	계	찬성		반대	
				%		%
일반대학생	'11. 5. 1. ~ 7. 29.	375명	143명	38.2	232명	61.8
탈북청소년	'15. 6. 24. ~ 6. 25.	74명	14명	18.9	60명	81.1
탈북 주민	'16. 6. 1 ~ 7. 31.	2,663명*	1,648명	62.8	987명	36.2
일반 국민	3회('16, '17, '18년)	311명	130명	41.8	181명	58.2
일반 국민	'21. 9. 1. ~ 9. 28.	180명	95명	52.8	85명	47.2
군 인	'21. 9. 13. ~ 9. 17.	220명	121명	55.0	99명	45.0

2663명\* : 실제 참여인원에 비하여 일부 답변하지 않은 인원 있음(설문조사에서 2,635명만 답변함)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표-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이나 탈북주민간 찬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럼에도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찬성의견이 적지 않은 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탈북주민의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병역의무를 다함으로써 떳떳하게 사회의 역할을 다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군의 설문에서는 일반 국민의 의견에 비하여 다소 높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군인들도 탈북주민이 군에 복무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실시된 설문조사 및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표-50>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비교검토 결과(잠정 결론)

구 분	결론 (잠정)	공정성 제고	형평성 유지	사회통합 기여	병역자원 확보	전투력 강화	설문결과 종합
고 아	○	○	○	○	△	△	○
탈북주민	○	○	○	○	△	△	○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찬성하는 이유는 <표-50>에 제시된 사항 외에도 타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아라고 해서 병역의무를 감면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아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통하여 사회성을

강화하고 전역 후에는 구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다만, 고아일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등 실제적인 감면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찬성하는 결론을 도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탈북자가 한국 사회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병역의무를 면제해 왔지만, 그러나 사회 경험 못지않게 군 경험을 통하여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을 통하여 자유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을뿐더러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본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아와 탈북주민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위의 잠정적인 결론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부과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전제 요건을 검토하여 이러한 조건이 해소되거나 어느 정도 충족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8. 소결론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는 당사자인 고아 및 탈북주민의 이해 및 참여 정신, 국민적인 공감대와 군 지휘관 등의 수용성,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당국의 제도 보완 등이 모두 공감을 이루어야 한다.

병역의무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탈북청소년은 병역의무부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반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탈북주민의 기성세대 다수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이나 군 지휘관 및 병사 가운데서도 찬반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공정성이나 형평성, 사회통합 차원에서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은 시대적 흐름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책당국에서는 이러한 여러 견해를 참고하되,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검토한 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어느 정도 해소될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병역의무부과 대안의 설정과 분석

### 1. 병역의무부과 기준 판단

공정한 병역의무부과 및 이행이 공정성, 형평성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제하는 법적인 조치이며, 그 대상자는 일정 기간 병역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대한 헌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모든 대상자에게는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아의 경우는 발생한 원인과 병역의무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예외로 하며, 탈북주민은 입국 당시의 연령과 보호기간 종료여부를 기준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병역의무부과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의무를 부과하되 일반 국민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부과하면서 근무처 및 보직 등을 일체 구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하는 방안과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고아는 출생이후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과 탈북주민은 북한에서의 출생 및 성장 과정에서 각종 어려움 및 한국 입국당시의 연령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근무처 및 보직을 달리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아는 병역의무부과를 적용하는 시기에 제도 시행 초기단계 3년간은 후방지역의 학교기관이나 군수지원부대 등 비전투 부대에 근무처와 보직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주민은 한국에 입국할 당시의 연령과 보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을 정상적으로 다녔으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조금 늦게 입국하여 정착기간이나 보호기간이 짧은 등으로 아직 한국 사회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병역판정검사에 따라 병역의무는 부과하되 현역은 배제하면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하는 것이다. 입국당시의 연령이 늦어서 한국적응 기간 등이 짧은 경우는 현행처럼 면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입국 당시의 연령과 보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탈북주민이 병역판정 검사에서 1~3급 판정으로 현역 복무를 하게 될 경우, 고아처럼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의 3년여 기간에는 후방지역의 학교기관이나 군수지원부대 등에 근무하면서 점차 전·후방 및 보직에 구분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병역의무부과 대안

### 가. 병역의무부과 대안 판단 요소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과의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또는 형평성 유지와 더불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병역가용 자원의 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를 감면하였던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하는 것인 만큼 대안을 설정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고아를 모두 병역의무부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발생 원인과 현재의 상태에 따라 달리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는 어떤 기준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그런 만큼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달성이나 사회적 통합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병역가용 자원의 부족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고아는 일반 국민의 자녀에게 부과하는 동일한 병역판정 기준을 적용하거나 또는 현행방침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탈북주민은 한국 입국 당시의 연령과 보호기간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하거나 또는 현재처럼 병역면제 처분을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입국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정부의 보호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

## 나. 병역의무부과 대안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검토를 위한 방안, 즉 대안(對案)은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고아는 모든 고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발생원인 및 현재의 상태를 감안하여 부과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탈북주민은 모든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입국 당시의 연령과 보호기간 등 조건을 달리하여 부과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고아나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감면은 병역의무부과 발전방향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에서 제외한다. 18세에는 병역준비역, 19세에는 병역판정검사, 20~35세에는 병역판정검사에 따라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처분 등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한 처분과 동일하다.

### <표-51>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대안 판단 고려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아 발생원인 등의 고려 없이 모두에게 병역의무부과</li><li>- 고아 발생 원인 및 현재의 상태 고려</li></ul></li><li>□ 탈북주민<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병역의무부과 적령기의 모든 탈북주민</li><li>- 한국 입국당시의 연령과 정부 보호기간 경과</li></ul></li></ul>
---

#### 1)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대안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의 대안은 모든 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고아의 발생원인과 현재의 상태 등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대안 ①은 고아의 발생원인 및 현재의 상태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고 대안 ②는 고아의 발생원인 및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를 달리하는 것이다.



<표-52>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대안

구분	대안①	대안②
적용	모든 고아에게 병역의무부과	고아 발생원인 및 현재 상태 고려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부과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제외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는 모든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고아 발생원인 및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나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병역감면하며,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2)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대안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대안은 병역의무부과 적령기의 모든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한국에 입국할 당시의 연령과 정부의 보호기간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53>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대안

구분	대안③	대안④
적용	모든 탈북주민에게 부과 (입국당시 연령 및 보호기간 미고려)	입국당시 연령 및 보호기간 고려
대상	병역의무부과 대상자로서 당시 입국 연령 등 고려 없이 병역의무부과	-12세 이전 입국, 보호기간 5년 이상 경과자 -13~15세 입국, 보호기간 이내자 -16세이후 입국, 보호기간 이내자

탈북주민 병역의무는 모든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한국 입국 당시의 연령과 보호기간 5년 이상 경과자는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그 외에 13세 이후에 입국한 탈북주민은 입국연령과 정부보호기간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탈북주민의 한국입국 당시의 연령을 고려하는 이유는 입국 당시의 연령에 따라 한국 사회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입국 당시의 연령이 낮으면 그만큼 한국 사회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서 이는 병역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어린 나이, 즉 7세에 소년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면서 사상학습을 시작하며, 비록 탈북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대략 12세 이후에는 소년단 학습 내용이 남아 있어서 북한식 사상학습의 사고가 잔존할 가능성도 예상되기 때문이며, 입국당시 연령이 많을 경우,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낮으면서 이는 군 복무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아나 탈북주민으로서 현역 등에 복무하기를 원할 경우는 현행과 같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병역의무부과 대안별 분석

#### 가. 분석요소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대안별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SWOT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 기법은 내적인 면을 분석하는 강점과 약점 분석, 외적 환경을 분석하는 기회와 위협 분석으로 나누며, 긍정적인 면을 보는 강점과 기회 그리고 그 반대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약점과 위협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강점(Strength)은 병역의무의 기본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며, 약점(Weakness)은 사회와 군에서의 부정적 인식 등의 문제점, 기회(Opportunity)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의 일정부분 해결 정도, 위협(Threat)은 병역의무 도입 시 우려되는 갈등 내지 사고 우려 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첫째, 강점으로서 일반 국민의 자녀와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과 사회통합 효과의 달성, 고아 및 탈북주민의 사회성 및 정체성 강화 여부 둘째, 약점으로서 사회적 편견의 가능성 및 군 지휘관과 병사들의 부정적 인식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셋째, 기회로서 병역가용 자원의 부족 해소 가능성,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고아 및 탈북주민의 한국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넷째, 위협으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및 군복무 중 잠재적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표-54> 병역의무부과 대안별 분석 요소

구 분	분 석 요 소
강점(S)	· 병역의무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 · 병역의무부과를 통한 사회적 통합의 달성 · 고아 및 탈북주민의 사회성 및 정체성 강화
약점(W)	·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편견 · 군 지휘관 등의 부정적 인식, 지휘 부담 가능성 · 사병들과 병영생활 내 갈등 발생의 가능성
기회(O)	· 병역자원 부족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 ·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 인식의 계기 · 고아 및 탈북주민의 한국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위협(T)	· 병역의무부과 시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 병역의무부과 시 잠재적 갈등 발생 요인 · 병영내, 사회내 갈등유발요인 잔재

## 나. 대안①의 분석과 추진전략

대안①은 모든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고아사유 감면인원인 600~700여 명(2020년 617명)<sup>93)</sup>이 병역 가용자원으로 예상된다. 이 대안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점(S)이다. 모든 고아가 예외 없이 법에 규정된 대로 병역의무를 부과

93) 병무청 자료(2020년 고아사유 병역감면 처분 현황)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10명,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4명, 18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양육 시설 등에서 5년 이상 재원하고 있는 사람이 503명이다.

함으로써 병역의무에 대한 공정성 또는 형평성의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그간 고아는 출생 및 성장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의 여러 이유로 병역의무를 감면하였는데 병역의무가 공정 및 형평성 있게 부과됨으로써 일반 국민의 병역의무에 대한 불만의 해소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약점(W)이다.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과연 그들이 군에서 훈련은 물론 병영생활 등을 다른 병사들과 동등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편견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한 모든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군 지휘관 및 지휘자 등의 부정적 인식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군 지휘관 등이 고아 부하병사를 지휘함에 있어 다른 일반 병사들과 달리 지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기회(O)이다. 모든 고아가 군 복무를 하게 될 경우, 군은 약 600~700여 명의 병역 가용자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군 전체 병력을 놓고 볼 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또한 나가서는 종전에 병역의무가 감면되었던 고아도 이제는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국민에게 전파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유지와 사회통합 등의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은 위협(T)요소이다. 모든 고아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군 복무를 할 경우 군 지휘관 등이 가장 우려할 사항, 즉 위협적인 사항은 이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사고요인이 누적되거나 일반 병사와 고아 병사 간에 병영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여 사고로 발생할까 우려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SWOT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SO(강점-기회) 전략은 강점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살리고, ST(강점-위협) 전략으로는 강점을 유지하면서 위협을 회피 또는 최소화하는 한편, WO(약점-기회) 전략으로는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살리며, WT(약점-위협) 전략으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대안①, 즉 모든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55> 대안① 추진전략

구 분	추진전략
SO(강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병역의무 이행의 필요성 및 제도적 방안</li> <li>· 공정성 및 형평성, 사회통합 등의 제고 및 기대성과 홍보</li> <li>· 병역가용 자원 추가 확보를 통한 군 전력 강화 기여</li> <li>· 고아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 발전 기여</li> <li>· 우수복무자는 장기복무 지원시 가점부여 방안 강구</li> </ul>
WO(약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병역의무 이행의 단계화</li> <li>· 입대 시 고아 표기 금지</li> <li>· 고아 병역의무부과 필요성 및 긍정적 사항 홍보</li> <li>· 고아 현역복무자 발굴, 홍보대사로 활용</li> </ul>
ST(강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병역의무 이행 우수자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li> <li>· 고아 병역의무를 통한 사회적 적응성, 통합성 기여</li> <li>· 고아 병역의무를 통한 사회적 기회비용 감소 기대</li> <li>· 고아 병역근무 우수자 발굴 및 포상</li> <li>· 병역판정검사 시 특히 심리검사 유의-부적격자 입대 금지</li> </ul>
WT(약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는 일반병사와 동일하게 병역판정검사</li> <li>· 초기단계 후방지역 비전투병과 위주 보직</li> <li>· 복무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li> <li>· 군-사회 연계, 전역이후 구직 등의 경제적 지원 방안</li> <li>· 군 복무기간 중 또는 이후 학업 등의 지원 방안</li> <li>· 제도 안정화 정착 시 일반병사와 동일하게 근무처, 보직 부여</li> <li>· 복무부적응 병사 보호 및 전역 등의 기준 정립</li> </ul>

#### 다. 대안②의 분석과 추진전략

대안②는 고아 가운데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현행과 같이 감면처분 하는 것이다. 이 대안에서는 병역의무부과 대상의 고아는 일반주민의 자녀와 동일하게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처분을 한다.

대안②를 도입할 경우,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등을 제외할지라도 연간 500~600여 명이 병역 가용자원으로 예상된다.

이 대안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②를 추진함에 있어 강점은 고아 가운데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제외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비교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아래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반면에 약점은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나 지휘관 등의 부정적 인식과 사병들과의 갈등 발생이 될 것이다.

기회는 연간 500~600여 명 정도의 병역가용 자원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면에 위협은 고아들이 군에 입대할 시 갈등과 이로 인한 전력의 약화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대안②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56> 대안② 추진전략

구 분	추진전략
SO(강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의 병역의무 이행의 필요성 및 제도적 방안</li> <li>· 공정성 및 형평성 사회통합 등의 제고 기대성과</li> <li>· 병역가용 자원 추가 확보를 통한 군 전력 강화 기여</li> <li>· 고아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발전 기여</li> <li>· 우수복무자는 장기복무 지원 시 가점부여 방안 강구</li> <li>· 고아로서 병역의무 약자를 고려, 의무부과에서 제외</li> </ul>
WO(약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의 병역의무 이행의 단계화</li> <li>· 고아 병역의무부과 필요성 홍보 및 긍정적 사항 홍보</li> <li>· 고아 현역복무자 발굴, 홍보대사로 활용</li> <li>· 고아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등은 감면</li> </ul>
ST(강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병역의무를 통한 사회적 적응성, 통합성 기여</li> <li>· 고아 병역의무를 통한 사회적 기회 비용 감소 기대</li> <li>· 고아 복무병사 노출 금지</li> <li>· 고아 병역근무 우수자 발굴 및 포상</li> <li>· 병역판정검사 시 특히 심리검사 유의-부적격자 입대 금지</li> </ul>
WT(약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 및 복무이후 결과 등의 홍보</li> <li>· 고아는 일반병사와 동일하게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li> <li>· 초기단계 후방지역 비전투병과 위주 보직</li> <li>· 복무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li> <li>· 군-사회 연계, 전역이후 구직 등의 경제적 지원 방안</li> <li>· 제도 안정화 정착 시 일반병사와 동일하게 근무처, 보직 부여</li> <li>· 복무부적응 병사 보호 및 전역 등의 기준 정립</li> </ul>

## 라. 대안③의 분석과 추진전략

대안③은 모든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대안은 모든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한국 입국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에서의 갈등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대안③에 따라 모든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는 연간 150~25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안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57> 대안③ 추진전략

구 분	추진전략
SO(강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의 필요성 및 제도적 방안</li> <li>공정성 및 형평성 사회통합 등의 제고 기대성과</li> <li>병역가용 자원 추가 확보를 통한 군 전력 강화 기여</li> <li>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 발전 기여</li> <li>우수복무자는 장기복무 지원 시 가점 부여 방안 강구</li> </ul>
WO(약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의 단계화 추진</li> <li>입대 시 탈북주민 등의 표기 금지</li> <li>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필요성 홍보</li> <li>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 시 긍정적 사항 홍보</li> <li>탈북주민으로서 현역복무자 발굴, 홍보대사로 활용</li> </ul>
ST(강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북주민 병역의무를 통한 사회적 적응성, 통합성 기여</li> <li>탈북주민 병역의무를 통한 사회적 기회비용 감소 기대</li> <li>탈북주민 병사 노출 금지</li> <li>탈북주민 병역근무 우수자 발굴 및 포상</li> <li>병역판정검사 시 특히 심리검사 유의-부적격자 입대 금지</li> </ul>
WT(약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관리의 어려움 대두</li> <li>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 및 복무이후 결과 등의 홍보</li> <li>탈북주민은 한국 입국 이후 경과 기간 고려, 병역판정</li> <li>초기단계 후방지역 비전투병과 위주 보직</li> <li>복무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li> <li>군-사회 연계, 전역이후 구직 등의 경제적 지원 방안</li> <li>제도 안정화 정착 시 일반병사와 동일하게 근무처, 보직 부여</li> <li>복무부적응 병사 보호 및 전역 등의 기준 정립</li> </ul>

## 마. 대안④의 분석

대안④는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한국입국 당시의 연령 및 정부의 보호기간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한국 입국당시 및 정부보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표-58> 대안④ 추진전략

구 분	추진전략
SO(강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의 필요성 및 제도적 방안</li> <li>· 공정성 및 형평성 사회통합 등의 제고 기대성과</li> <li>· 병역가용 자원 추가 확보를 통한 군 전력 강화 기여</li> <li>·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 발전 기여</li> <li>· 우수복무자는 장기복무 지원 시 가점 부여 방안 강구</li> </ul>
WO(약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의 단계화 추진</li> <li>· 입대 시 탈북주민 등의 표기 금지</li> <li>·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필요성 홍보</li> <li>· 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 시 긍정적 사항 홍보</li> <li>· 탈북주민으로서 현역복무자 발굴, 홍보대사로 활용</li> </ul>
ST(강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주민 병역의무를 통한 사회적 적응성, 통합성 기여</li> <li>· 탈북주민 병역의무를 통한 사회적 기회 비용 감소 기대</li> <li>· 탈북주민 병사 노출 금지</li> <li>· 탈북주민 병역근무 우수자 발굴 및 포상</li> <li>· 병역판정검사 시 특히 심리검사 유의-부적격자 입대 금지</li> </ul>
WT(약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 및 복무이후 결과 등의 홍보</li> <li>· 탈북주민은 한국 입국 이후 경과 기간 고려, 병역판정</li> <li>· 초기단계 후방지역 비전투병과 위주 보직</li> <li>· 복무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li> <li>· 군-사회 연계, 전역이후 구직 등의 경제적 지원 방안</li> <li>· 제도 안정화 정착 시 일반병사와 동일하게 근무처, 보직 부여</li> <li>· 복무부적응 병사 보호 및 전역 등의 기준 정립</li> </ul>

## 바. 대안의 분석 결과

앞에서 제시한 대안을 각각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59> 대안의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대안①	· 병역의무 공정성, 형평성 공감대 · 병역가용 자원 확보 확대 · 병역의무 이행 중요성 확산 계기 · 병역감면 원칙 기조 유지	· 사회적 약자 병역의무 논란 야기 · 군지휘관 지휘 부담 논란
대안②	· 고아 발생원인 고려, 병역의무부과 · 병역가용 자원 확보 · 병역의무 이행 중요성 홍보 효과 · 병역감면 원칙 기조유지, 융통성 확보	· 사회적 약자 병역의무 논란 야기 · 군지휘관 지휘 부담 논란 · 병역감면 원칙 기조 준수 미흡
대안③	· 병역가용 자원 확보 · 탈북주민의 한국국민 정체성 강화 · 병역의무 이행 중요성 홍보 효과	· 사회적 약자 병역의무 논란 야기 · 지휘관리 부담 논란 · 보안 등의 문제점 야기
대안④	· 탈북주민 정체성 사회성 강화 · 탈북주민 합리적 병역의무부과 · 병역의무 공정성 형평성 제고	· 지휘관리 부담 논란 · 병역감면 원칙 기조 준수 미흡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 사회통합의 효과, 병역 가용자원의 확보, 군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60> 대안별 분석 결과

구분	대안①	대안②	대안③	대안④
병역 공정성	△	○	△	○
병역 형평성	△	○	△	○
사회통합 효과	△	○	△	○
가용자원 확보	△	△	△	△
군 수용성	×	○	×	○
결론	△	○	△	○

본 연구에서는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등은 병역의무를 감면하고 그 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안②,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한국 입국 당시의 연령과 정부보호기간 등을 고려하는 대안④를 제안한다.

## 4. 병역의무부과 대안의 적용

### 가. 고아에게 병역의무부과(대안②의 적용)

#### 1) 대안의 요약

이 대안은 고아에게 전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고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과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은 감면처분 하며 그 외의 대상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 2) 적용방안

고아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적용하며,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표-61>와 같이 적용한다.

<표-61> 대안②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적용(안)

구 분	병역판정검사				
	1~3급	4급	5급	6급	7급
보호대상 <sup>94)</sup>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아 <sup>95)</sup>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나.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대안④ 적용)

#### 1) 대안의 요약

이 대안은 탈북주민의 한국 입국 당시 연령이 12세 이전이며, 정부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하여 병역의무부과 연령에 도달한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판정 검사를 거쳐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그 외에 입국 연령과 정부보호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94)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95)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보호 치료시설에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

## 2) 적용방안

탈북주민은 한국 입국 당시의 연령과 보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의 <표-62>와 같이 적용한다.

<표-62> 대안④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적용(안)

구 분	병역판정검사				
	1~3급	4급	5급	6급	7급
12세이전 입국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13~15세 입국	보충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16세이후 입국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			

## 다. 기타

### 1) 적용시기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가 아무리 병역의무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과 고아 및 탈북단체의 공감대 형성 및 홍보, 정치권의 협조와 제도적 보완 등을 거쳐서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감안하여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를 적기로 판단한다. 이는 대국민 홍보 기간, 고아 및 탈북단체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정치권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감안한 것이다.

### 2) 적용방안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는 병역판정검사에 따라 병역을 처분하되 근무처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먼저 병역의무부과를 시작한 초기 3년간은 후방지역 위주로 학교기관이나 군수지원부대 등 비전투 부대의 행정 및 군수와 교육 등의 특기를 위주로 보직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기 단계 고아 및 탈북주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한 군의 지휘부담 등을 해소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초기단계의 복무실태를 분석한 뒤 점차 전방지역 및 모든 병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고아 및 탈북주민으로서 해군이나 해병대 및 공군을 지원할 경우 다른 일반 국민 지원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표-63>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의 단계적 적용(육군 기준, 안)

구 분	초기단계(초기 3년 간)	지속단계(4년차 이후)
근무지역	후방지역(학교기관, 군수지원부대 등)	전·후방 지역
특기/보직	교육·행정·군수 특기/보직	일반병사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고아나 탈북주민으로서 현역복무를 지원한 자는 이러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병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5.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성공 요인

### 가.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도입 및 정착 성공 요인

고아가 성장과정에서 겪은 경험 및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 탈북주민이 성장과정이나 한국 입국 이후 경험한 각종 어려움 등에 대한 이해는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여기에는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 국방부 및 병무청, 그 외의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통일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노력 외에 병역의무부과의 대상자인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 형성, 일반 국민의 사회적 편견 및 인식의 제거, 군부대에서의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편견 지양 및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먼저 일반 국민의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지양과 병역의무부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는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가 병역의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기여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또한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실제 근무할 때 이들의 군 복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복무적응 제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와 관련되는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보호아동의 병역부과 및 지원 등), 통일부(탈북주민의 병역부과 및 지원 등), 교육부(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학비 지원 등), 고용노동부(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 이후 취업 알선 및 지원 등) 등의 협조도 필요하다.

병역의무부과의 대상자인 고아 및 탈북주민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될 때 본인의 병역의무 이행이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자세 및 태도가 필요하다.

고아 및 탈북주민이 실제 군에 입대할 경우 이들을 지휘할 지휘관과 함께 병영생활을 하게 될 병사에게는 그동안 혹시 갖고 있었을 편견을 배제하고 부하이자 동료 및 전우로서 이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병역의무부과의 대상인 고아 및 탈북주민으로부터 국방부 및 병무청, 보건복지부 등의 유관기관, 군부대, 일반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 상호이해가 맞아야 병역의무부과가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법령의 개정을 포함한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표-64>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성공 요인

구 분	성 공 요 인
일반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편견 배제 및 포용성</li> <li>·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불가피성 인식</li> <li>·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지지 및 지원</li> </ul>
정책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관련 법령 등의 정비</li> <li>· 고아 및 탈북주민에 적합한 병역의무 이행 제도 정립</li> <li>· 군 복무 이후 지원대책(구직, 주거 등)</li> </ul>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수용성</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 관리 대책</li> <li>· 복무 중 갈등관리 및 동기부여 대책(학업, 구직 등)</li> </ul>
고아 및 탈북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 자세의 견지</li> <li>·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성 정체성 함양 노력</li> <li>·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개인 발전 기회 확보 노력</li> </ul>

## 나. 고아 및 탈북주민 자녀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제도 발전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병무청과 군의 역할이 각각 필요하다. 먼저 병무청에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 등의 개정소요를 판단하고 개정해야 하며, 병역판정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군에서는 병역의무부과 대비 복무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종전의 제도를 수정하여 적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먼저 병역의무부과에 따른 특기 및 보직부여 지침의 수립과 복무의욕 고취 및 동기유발 프로그램의 발전이 필요하다. 성장환경과 이후 직업 선택에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군복무 후 사회 진출 및 취업지원 사항은 동기 부여를 위하여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다.

<표-65>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발전 소요

구분	성공요인
정책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홍보</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의 판단 식별</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의 복무 및 전역 이후 지원대책</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관련 법령의 개정, 홍보</li> </ul>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복무 멘토링 시스템</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 특기 및 보직 부여 지침</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 복무 및 관리지침</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 복무 동기부여 및 전역이후 지원대책</li> </ul>

예를 들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탈북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여기에는 통일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청, 산림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여기서 추진하는 과제는 탈북주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으로부터 정착지원 시설 및 인력 기반의 강화에 이르기까지 6대 분야에 걸쳐 24개 과제로 다양하다.<sup>96)</sup>

향후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가 시행될 경우, 국방부도 ‘북한이탈주민

96)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2021.5, p.38.

정착지원 기본계획’ 작성에 참여하여 군 복무를 마친 탈북주민 전역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 다.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전제조건

「병역법」에 따라 고아 및 탈북주민은 병역의무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고아는 출생 및 성장과정, 탈북주민은 출생 및 성장과정, 탈북과정과 한국입국 이후 여러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청에 의해 병역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검토하면서 앞에서는 대안②와 ④, 즉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조건부로 타당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맺었다. 그렇다면 이 결론대로 「병역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가 단순히 법령의 개정만으로 되기에는 국민의 정서 및 동의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소한 뒤에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전제조건으로서 이를 충족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전제조건’이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 가능한 변수 정의 및 의사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일이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식별하고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전제조건은 일반 국민과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인 고아 및 탈북주민, 군 및 병무청, 행정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66>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전제조건

구 분	전제조건
일반 국민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은 군 전력 강화에 대한 동의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관련 정책적 검토사항 동의

구 분	전제조건
고아 및 탈북주민	·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과 수용 태도 유지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유지 및 개인 발전 노력
군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 · 병역의무 이행이 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긍정적 판단 · 병역의무 이행 시 특기 및 보직 등의 규정화 공감 및 정책화 · 병역의무 이행 시 복무지원 프로그램 시행 공감 및 정책화
병무청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 및 공감대 형성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관련 법령의 개정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판정검사 중 심리검사 관련 조항 등의 개정
행정부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관련 유관기관 공감대 형성 · 병역의무 이행 시 주거 지원 공감 및 정책화(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병역의무 이행 시 취업 등 지원 동의 또는 공감(고용노동부) · 병역의무 이행 시 경제적 지원 공감 및 정책화(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병역의무 이행 시 학업 지원 공감 및 정책화 등(국방부, 교육부)

먼저,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병역의무부과 시점에 여론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국민이나 고아 및 탈북주민 등 병역의무부과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군에 가기 싫어하는 공통적인 현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고아 및 탈북주민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이 본인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군이나 행정부에서 제도적인 지원책이 수립된다면 이는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이 될 것이다.

병무청 등 정부기관에서는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위해 정부 정책 발전에 대한 공감 또는 동의와 정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바탕으로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고아 및 탈북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병역의무 이행 후 해소되면서 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여러 전제조건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여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의사결정과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 V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시 복무 적응성 제고방안

고아와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복무를 잘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입영하는 것은 물론 군복무 중 병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대의 배치와 보직과 직무를 부여, 복무 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군의 전투력 강화와 더불어 군 복무 이후 사회인으로서 본인의 긍정적 삶과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판정검사와 신병훈련소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에 대한 훈련, 훈련 이후 보직 및 직무부여, 군복무 중 복무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동기부여 방안에 관하여 기술한다.

### 1. 병역판정검사

현재의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진행된다. 고아나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다른 대상자들처럼 병역판정검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일반 국민 자녀와 동일한 병역판정 기준을 적용하되 특히 고아나 탈북주민에게 심리검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고아나 탈북주민은 일반 국민의 자녀에 비하여 출생 및 성장과정에서 심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트라우마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체검사 못지않게 심리검사는 중요하다. 고아에게 심리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성장과정에서 받았을 심리적 충격이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내향적인 성격으로 되고 이러한 성격이 평시에는 잠재하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외부적 외력이 가해지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어린 시절에 형성되고 축적된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진 상태에서 군이라는 특성을 갖는 폐쇄된 집단에서 생활을 하면서 평시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여 커다란 사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탈북주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특히 북한지역에서 정치적 폭력이나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공개처형 등을 보면서 악몽을 꾸는 등의 트라우마가 심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런 심적부담은 군 생활에 있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심리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 2. 훈련병 교육

### 가. 현재의 훈련병 교육 장소 및 기간

고아나 탈북주민이 병역판정검사를 통과하여 현역입영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지방병무청에서는 육군이나 해군 및 공군 등의 병력소요에 맞춰 입영할 훈련소를 지정하여 통지서를 발부할 것이다.

육군을 기준으로 훈련병에 대한 교육은 육군훈련소에서 진행되는 훈련과 전·후방 각 사단별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구분한다. 훈련기간은 각 5주이며, 이 기간 중 처음에는 동화교육으로 이 시기에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전환되는 최초의 행사로 정든 부모형제, 애인의 곁을 떠나 진정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입영행사를 하고, 이어서 개인물품지급으로 신체치수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개인별 신체치수를 확인하고 전투복, 전투화, 속옷, 체육복 등 개인 피복류를 지급하며 치약, 칫솔, 휴지 등 군 생활에 필요한 품목을 지급한다.

이어서 신체검사로 신장체중 등 기본적인 검사 외에 개인별 질환, 특이체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특기적성검사로 개인별 보유 특기에 대한 검사로 장차 특기병으로서의 임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1~2주차(2주)는 군인기본자세 확립주간으로 총기수여식을 통하여 군인에게 가장 소중한 개인화기를 지급받아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고 관리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지며, 훈련병으로서 장차 5주간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빛나는 이등병 계급장을 달기 위한 입소 행사를 한다.

정신전력교육에서는 군인정신, 국가관, 안보관 등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정신 자세를 배우는 시간으로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인식하는 시간이며, 이어서 군인이 갖춰야 할 기본자세를 배우는 시간으로 걸음걸이, 경례요령 등을 훈련한다.

3주차~5주차(3주)는 기본전투기술 구비 주간으로 개인화기의 특성을 익히고 소총의 조작 및 관리 요령에 대해서 숙달하는 훈련을 하며, 사격술 훈련에서는 사격을 하기 전에 자세, 조준, 격발은 어떻게 하고, 주의사항을 배운다.

경계훈련을 통하여 군인의 기본인 수하요령과 관측/보고요령에 대해서 교육하며, 구급법을 통하여 전장에서 다친 전우를 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응급처치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화생방 훈련을 통하여 적의 화학, 생물학, 핵 공격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방독면

착용, 가스실습 등을 훈련하며, 수류탄의 특성과 제원을 숙지하고 사용 요령을 숙달하여 전투에서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영점 사격 훈련을 통하여 일정한 사거리에서 조준점과 탄착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격 훈련을 한다.

기록 사격을 통하여 사거리별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숙달하기 위한 훈련을 하며, 각개전투 훈련을 통하여 방향유지, 다양한 지형지물을 이용한 주·야간 이동하는 기술과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고 적의 진지를 탈취하기 위한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하고 전장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투체력을 구비하기 위해 완전군장으로 장거리를 행군하는 훈련을 한 뒤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훈련소를 떠나 각자 배정된 부대(또는 병과학교)로 이동한다.<sup>97)</sup> 이것이 육군훈련소를 기준으로 5주간의 훈련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기본 신병교육을 이수한 각 병사는 주특기에 따라 각 병과학교로 이동하여 주특기 교육을 실시하며 주특기별 교육은 병과학교 계획에 의거하여 2~5주의 주특기 교육을 실시 후 자대배치를 받게 된다. 그 외에 전·후방 사단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신병훈련을 실시한다.

육군훈련소나 각 사단의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을 하는 동안, 고아 및 탈북주민 훈련병에게 훈련실시기관에서 관심을 가질 사항으로 교관 및 조교들은 이들 병사들이 고아 또는 탈북주민이라는 개인사정의 노출을 기피하는 것을 밝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나. 초기단계(시행 후 3년 이내)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 등 여러 논쟁사항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훈련병 교육은 초기 단계, 즉 제도 시행 3년 이내에는 후방사단의 신병교육대로 입소하여 신병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따른 여러 논쟁을 불식시키면서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면서 제도의 정착을 위한 것이다.

97) 육군훈련소(<https://www.katc.mil.kr/katc/eduinfo/active.jsp>: 검색일: 2021. 6. 29)

예를 들어, 처음부터 전방사단 등의 전투부대에 고아 및 탈북주민들이 입소하여 훈련을 마친 뒤 최전방의 철책선 경계에도 투입될 경우, 군 지휘관 등에게는 사실 커다란 지휘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항상 총기와 실탄 및 수류탄 등을 휴대하고 경계작전에 투입되면서 혹시나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탈북주민 병사는 북에 가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군 복무를 할 시 북한과 연계되어 병사가 북한의 조종을 받아 총기관련 또는 보안 관련 사고를 우려하는 군에서의 일부의 시각도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의 보직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해·공군에도 고아 및 탈북주민의 자녀가 지원할 경우가 예상되는 만큼 해·공군은 각각의 훈련소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받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초기단계 3년간은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거쳐 확대를 위한 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일단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 이후 이를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복무실태를 분석 및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완함으로써 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다. 지속단계(4년 이후)

초기단계의 3년간 적용을 거쳐 분석된 결과를 갖고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지속단계에 들어서 육군훈련소 및 전·후방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여 훈련을 이수한 뒤 각급 부대별 병역수요에 따라 전·후방 사단, 학교기관, 군수지원부대 등에 구분 없이 각각의 특기에 맞춰 보직을 부여토록 한다. 해·공군은 각각의 지원에 따라 각 훈련소에 입소하여 신병교육을 마친 뒤 특기에 따라 보직을 받도록 한다.

<표-67> 고아 및 탈북주민 훈련병 교육 실시(육군 기준, 안)

구 분	초기단계(초기 3년간)	지속단계(4년차 이후)
입소지역	후방사단 신병훈련소	육군훈련소, 전후방 사단 훈련소
특기/보직	교육·기술·행정특기 위주	전투병, 비전투병

### 3. 보직 및 직무 부여

#### 가. 현재의 훈련병 분류 및 보직 부여 제도

병사들의 군사 특기는 군에서 수행하는 임무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육군 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누구나 1개의 군사 특기를 부여받으며 군사 특기 직위에서 전역할 때까지 복무한다. 부여된 특기는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기검사는 개별면담으로 진행하며 신체조건과 학력, 학과 자격, 면허, 사회경력, 기술검사점수, 인성/지능검사 등을 거쳐 부여한다.

11개 특기검사 분야별 검사장(정보, 공병, 통신, 항공, 화학, 병기, 병참, 수송, 의무, 어학, 기갑)에서 실기 또는 필기검사를 받으며, 인성/지능검사에서는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제작한 인성검사와 지능검사표를 특기부여와 신체검사에 활용한다.

군사 특기는 ‘육본특기분류시스템’을 활용하여 분류하며, 육군의 충원소요에 따라 결정된다. 학력과 경력 및 특기검사결과, 신체검사, 인성/지능검사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특기가 분류되므로 개인의 특정요건에 의해서만 군사 특기가 결정되지 않는다.<sup>98)</sup>

그러나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제도가 도입될 시 도입 초기단계에는 군사 특기를 비전투 분야의 특정한 특기로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탈북주민의 병사는 정보계통의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특기를 부여하자는 의견 제시도 있다.

병무청과 육군은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으로 확인된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신병훈련소는 후방지역으로 지정하여 신병교육을 받고 후방지역으로 배치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나. 초기단계(시행 후 3년이내) 부대 배치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를 그동안 감면해왔던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를 극복하면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만큼 초기에는 여러 우려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특히 군복무 중 우려되는 여러 사고요인에 관한 것이다.

98) 육군훈련소(<https://www.katc.mil.kr/katc/guide/specialty.jsp>: 검색일: 2021. 6. 29)

그만큼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초기에는 후방지역의 사단이나 학교 기관, 군수지원 부대 등의 부대로 배치하며, 보직 및 직무는 비전투 병과 위주로 부여하는 것이다. 해·공군도 학교 기관, 군수지원 부대 등을 위주로 배치 및 보직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후방지역의 사단 등에 비전투 병과 위주로 배치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이들 부대가 전방사단의 전투부대와는 달리 비전투 부대로서 상대적으로 지휘관들이 부대 지휘 및 각종 사고우려에 대하여 자유로우며,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들도 군 복무의 중압감이나 부담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3년여의 기간을 정하여 후방지역 위주로 부대를 배치하는 이유는 육군을 기준으로 현재의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서 두 번의 근무 주기를 통하여 복무 상황의 평가 및 분석을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표-68> 초기단계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 평가사항(안)

구분	평가사항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복무적응 프로그램의 발전시킬 사항</li> <li>· 군복무 중 행동 특이 사항으로서 지휘참고사항</li> <li>· 일반 병사와 고아/탈북주민 병사간 갈등 요인 및 유형</li> <li>· 복무중 부적응 사례 및 조치</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에 적합한 보직</li> <li>· 일반 병사와 비교한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의 체력, 정신력</li> <li>· 복무지역 및 군사특기 부여 제한사항 해제 필요성</li> <li>· 군 복무 동기부여 방안</li> <li>· 전역 후 지원대책 이행 정도</li> </ul>
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판정검사 개선사항</li> <li>·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분석</li> </ul>

#### 다. 지속단계(4년 이후) 부대 배치

고아 및 탈북주민이 후방지역 위주의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한 뒤 3년여의 기간이 지나면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 부대 및 보직 분류 방침에 따라 전·후방 부대 구분 없이 배치하며, 전투 및 비전투 병과 구분 없이 특기에 따라 보직을 부여한다.

해·공군은 해·공군의 방침에 따라 전투비행단, 함정 근무 등에 구분 없이 특기 및 소요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한다.

<표-69>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 보직 및 특기부여(안)

구 분	초기단계(초기 3년간)	지속단계(4년차 이후)
근무지역	후방지역(학교기관, 군수지원부대 등)	전·후방 전 부대
특기/보직	교육·기술·행정특기 위주	전 병과 / 전특기

현재 일반 병사의 군사 특기는 개별면담을 거쳐 신체조건과 학력, 학과 자격, 면허, 사회경력, 기술검사점수, 인성/지능검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부여한다.

고아 및 탈북주민의 군사 특기 부여는 위의 사항 외에 개인의 의견과 교육, 자격 및 경험 등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아 등에 대한 보직 및 직무 부여를 군 적응력 향상을 위한 조치로 간주하되 다만, 보직 및 특기부여 과정에서 일반 병사에게 알리는 것은 갈등방지 차원에서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군 복무 중 본인이 원할 경우 국제평화유지군(PKO)의 일원으로 해외파병 부대에도 보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군 복무에 대한 긍지를 높이고 지급되는 수당 등을 저축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조금이라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군에서는 고아 및 탈북주민의 군 복무 적응은 물론, 전역이후 그들이 사회진출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기나 보직부여는 물론 자격취득의 지원 등 다양한 대책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복무 적응 프로그램 개발

##### 가. 고아 및 탈북주민 군 복무의 기대 효과

군 복무를 하면서 흔히 하는 또는 들었던 말로 ‘군대 가면 썩는다.’, ‘군 생활은 인생의 블랙홀이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 군대가 대한민국의 국방은 물론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나 개인의 정신적이거나 사회적 성숙함의 강화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이 군 생활의 의미를 평가 절하하거나 잘못 전달한다.

이러한 표현의 영향으로 병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18개월이라는 군 복무기간이 본인의 발전에 다소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런 만큼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군 복무기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군 생활의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줄이는 노력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군 생활의 장점으로는 첫째, 군 생활은 위기관리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군대라는 집단은 항상 전시상황 또는 비상상황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군에서 개인의 학습과 경험은 결국 제대 후 인생역정에서 수시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군 생활은 비우호적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군대에서는 모든 행동과 조치는 때로는 자기의 의지와는 달리 진행될 수 있다, 신병 훈련이후 배치되는 자대에서는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로 가게 된다. 이는 한 개인이 군대라는 생소한 상황에서 겪는 가장 비우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군이라는 아무도 모르고, 또한 자신에게 별로 호의적이지도 않은 상황에 처음으로 비우호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병영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말이나 행동 등으로 다양한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한 개인의 성장의 기회와 더불어 위기상황 극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셋째, 군 생활은 사회통합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군대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동일한 거주 공간과 환경에서 함께 생활(Social mix)함으로써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노력의 여하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회계층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러한 사회계층 간 상호이해의 기회는 군대라는 사회에서 통합의 기능을 익히면서 장차 사회갈등의 소지를 줄여줌으로써 군 제대 후에도 폭넓은 시각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넷째, 군 생활은 리더십(leadership)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신병에서 이병, 일병, 상병, 병장으로 진급하면서 계급이 올라가는 동안 많지는 않지만 7~8명의 분대원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군인에게 부여한다. 이것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모든 군인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군에서는 그의 학력, 경제·사회적 지위, 직업 등과 관계없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며, 이는 장차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 요소를 사전에 경험하면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장점 외에 고아 및 탈북주민이 군 복무와 병영생활을 하게 될 경우 가져다주는 일반적인 이익은 무엇일까? 앞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장점 외에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는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신적 능력과 사회성을 배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고아나 탈북주민 모두 이미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생활을 하였겠지만 군 생활 기간 중 훈련이나 병영생활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그렇듯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는 군 생활이 자신의 극기력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둘째, 사회성을 배양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고아나 탈북주민은 일반 국민의 자녀들과는 달리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적으면서 고립·배타적 성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아나 탈북주민은 병영생활을 하면서 타 병사들과 부대끼는 동안 사회성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군 생활 이후 사회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 같이 군 복무를 한 다른 병사들은 전우들로서 고아나 탈북주민이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할 시 구직이나 직장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군에서 고아나 탈북주민에게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면 전역이후 사회진출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아나 탈북주민에게는 과거에 경험하였던 아픈 기억을 극복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군 복무가 개인의 발전과 군 복무 이후에는 사회진출과 직장 구직 등에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나. 군 복무 적응 프로그램**

군에서는 현재 개개인의 장병들이 군 복무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군 복무 적응 프로그램을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고아

및 탈북주민이 군 복무를 함에 있어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 군 적응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지휘관과 입대병사 개별 멘토 연결, 부대별 병영생활지도관 운용, 주기적 고충 의견 수렴 및 조치,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를 위한 별도의 병영생활 적응 캠프운용, 종교활동을 권장하여 심리적 안정 활동 지원, 국방부(각군 본부) 차원 모범장병 선발 및 전국 여행 또는 산업시설 시찰 등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복무 장병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 창구를 운용하는 방안으로 각급 부대별 고충처리 상담창구를 운용하고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도 온라인 고충처리 상담조직을 설치 및 운용하며, 국방 헬프콜 등 운용, 필요 시 보직을 변경하거나 부대전환 등을 통하여 복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다.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군 복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들이 군 복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휘관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아의 경우 정부의 보호아동 자립지원 주요 내용에 연계하여 군복무 중 학업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군 전역 이후 사회로 진출할 때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자립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보호아동 자립지원 주요 내용에 연계하여 군 복무~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 입대 이전 학교 또는 사회생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을 심화하는 방안,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합격 시 전문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자격 취득 시 군 복무이후 관련 업체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다. 자격획득 시 사회업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취업 알선 및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를 검토함에 있어 가장 좋은 동기부여 방안은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향후 취업에 따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인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표-70> 복무지원 동기부여 프로그램(안)

구분	프로그램	지원사항	비고
학업지원	대학진학 지원 <sup>99)</sup>	교육부 협의, 학업지원 연계	교육부, 국방부 협조
	대학학점 취득	사이버 대학 등 지원	
	대학학비 지원 <sup>100)</sup>	정부/군 장학금 지급방안	
기술습득 지원	기술습득지원 <sup>101)</sup>	특성화고, 기술고 등 재학	특기·보직고려
	자격증 취득지원	국가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장기복무 지원	부서관 지원	복무우수자 선발 / 가점 부여 및 선발	규정화
	장교지원	복무우수자 선발 / 가점 부여 및 선발	
	군무원 지원	복무우수자 선발 / 가점 부여 및 선발	
자립 및 취업지원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지원대상 연계 지원방안 강구	보건복지부 계획 연계
	주택제공 <sup>102)</sup>	LH임대주택 확대 제공	
	경제기반 강화	디딤씨앗통장 연계 또는 확대(고아 등) 미래행복통장(탈북주민)	

군복무 중 우수자로 평가되어 군 지휘관들이 추천하는 병사들이 장기복무를 지원할 경우는 가점을 주어 장기복무 또는 군무원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무 동기의 부여와 동시 구직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가 군복무 중 기술습득을 하여 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육군의 경우는 부서관 또는 군무원으로서 정비장이나 보급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으로서는 필요한 정비인력을 용이하게

99) 예를 들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우대조치로써 군 복무에 있는 고아 등의 보호조치 대상이 대학에 진학을 원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제2항에 규정된 정원 외의 학생으로 규정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대학입학에 적극적 우대조치로써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종재 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정책론』, p.241)

100) 예를 들어 교육부의 소외계층특별교부금이나 시·도교육청의 특별회계로 교육복지사업에 재정을 반영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 군의 장학금 지급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의 소외계층대상 교육복지사업 재정은 탈북학생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를 고아의 경우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101) 예를 들어,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이 공군에 입대할 경우, 기술관련 부대의 근무를 통하여 기술습득을 지원함으로써 전역 이후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2) 고아들이 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주거 문제의 해결이다(고아 예비역 인터뷰). 고아가 군 복무를 마치면 국방부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획득할 수 있으며, 정부로서는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다. 기술습득의 지원 및 장기복무자 확보와 더불어 자립 및 취업지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다만,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할 지라도 위에서 제시한 여러 정책적 지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들만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라.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처리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입대 이후 군 복무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복무부적응 병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물론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전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고아 및 탈북주민의 경우는 다른 일반 국민의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군 복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등으로 인하여 군 복무에 영향을 받을 요인이 충분히 있다.

육군의 경우는 매년 5~6,000여 명의 복무 부적응 병사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은 군복무 부적응 병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복무부적격으로 전역 처분이 된다. 고아 및 탈북주민도 입대이후 복무 부적응 병사가 발생될 수 있다. 전체적인 숫자는 일반 병사보다 적지만 그러나 비율만으로 볼 때는 고아나 탈북주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여러 요인을 본다면 더 높을 수 있다.

<표-71> 최근 5년간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심리적 요인		신체적 요인	
	대상	전역	대상	전역	대상	전역
누계	27,937	27,274	21,856	21,349	6,001	5,925
2016년	5,342	5,121	4,080	3,909	1,262	1,212
2017년	5,681	5,538	4,361	4,280	1,320	1,303
2018년	6,214	6,118	4,859	4,789	1,355	1,329
2019년	6,365	6,202	5,047	4,922	1,318	1,280
2020.8월	4,335	4,250	3,509	3,449	826	801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2102000504> (검색일: 2021. 8. 4)

이 가운데 정신질환이나 군 복무 적응 곤란 등 심리적 요인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는 2016년 3,909명, 2017년 4,280명, 2018년 4,789명, 2019년 4,922명, 2020년 3,449명 등 21,349명(78%)으로 집계됐다.<sup>103)</sup>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 의무부과 시 심리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사도 여러 부적응 요인으로 인하여 군 복무가 어렵게 될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절차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

103) 연합뉴스(<https://www.yna.co.kr/>, 검색일: 2021. 8. 4)

## Ⅶ. 결론 및 정책제안

### 1. 결론

한국 사회에서의 병역의 의미는 다른 국가에서의 의미와는 다르다. 분단국가로서 「헌법」과 「병역법」에 규정된 조항에 부합되는 모든 남성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부과되기 때문이며,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의 대명사로 쓰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병역의무 이행은 공정과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사회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는 그동안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북한지역에서 출생 및 성장하는 과정에서 갖은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한국 입국 이후 교육, 경제력 및 문화적 차이 등을 감안하여 병역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의해 병역감면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병역의 공정성, 형평성 및 사회통합 등 차원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불가피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계속하여 병역감면을 할 경우 오히려 고아 및 탈북주민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이 사회로 나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정책이 필요하며, 병역의무부과는 그러한 방법의 하나이다. 병역의무부과는 고아 및 탈북주민의 사회통합 과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사회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대로 감면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법적 준비를 바탕으로 논쟁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병역의무부과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인 고아 및 탈북주민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셋째, 이러한 인식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 넷째, 법령의 개정과 병행하여 고아 및 탈북주민에 입대할 경우 군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복무지원 프로그램 개발 마련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면, 먼저 병역의무부과를 3년 이내의 기간,

즉 초기 단계에는 후방지역, 비전투 병과 위주의 보직부여에서 시작하며 그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4년차 이후에는 전투 및 비전투 병과는 물론, 전방지역은 물론 후방지역으로 근무지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입대한 병사들을 지휘할 야전 지휘관 등도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 의무부과에 대하여 선입견 또는 편견을 배제하면서 다른 병사들과 같은 부하로서 동일하게 지휘하도록 전향적 사고가 필요하다.

국방부를 포함한 각군 본부에서는 군복무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무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군 복무 이후에는 통일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립 기반을 지원해 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주거지원, 취업기회의 제공, 경제적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 못지않게 사회성 함양, 사회에서 활동 공간의 확대, 사회통합 등을 위해서는 기회의 확대도 필요하며, 병역의무부과는 이에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는 「헌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타당성도 인정되고 일반 국민 및 군인, 탈북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가 일부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의견 역시 적지 않음을 감안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징병제가 유지되는 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 유지, 사회통합의 기여와 병역감면 정책의 점진적 해소 등을 위하여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전제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될 경우 대안 ②(고아 발생원인 및 현재 상태 고려 병역의무부과) 및 대안 ④(탈북주민 입국당시 연령 및 보호기간 고려 병역의무 부과) 선택을 건의한다.

다만, 고아 및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시기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정치권의 협조 및 입법 소요 기간, 세부적 시행 준비 등 행정적 준비 소요 기간 등의 전제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할 경우에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고아 및 탈북주민의 근무지로, 시행 후 초기 3년간은 후방지역의 육군, 해군, 공군 등의 학교 기관(예를 들어 육군의 경우 각 병과 학교, 부사관 학교 등)이나 군수지원부대(군수지원사령부, 정비창이나 보급창 등)

등을 중심으로 하며, 이에 적합한 특기가 부여되도록 방침으로 정하고 기간 중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4년차 이후 지속 단계에서는 특기에 따라 전·후방의 각급 부대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는 국제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서 해외파병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군 복무의 조기 적응을 위하여 복무적응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군 복무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주거여건의 보장이나 구직 활동 등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고아 및 탈북주민으로서 군 생활중 우수자는 가점을 부여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부사관이나 장교 및 군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군 당국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일반대학에서 학군장교나 부사관으로 진출을 희망할 인원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며 놓을 것을 제안한다.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력규모는 줄이지만 작전 및 전투중심의 국방인력을 재설계하면서 전투부대는 간부를 보강하며, 비전투 분야는 민간인력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으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구조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고아 및 탈북주민으로서 군 복무를 하는 병사는 물론 예비역에게도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등 국방부의 인력구조 재설계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아는 물론 탈북주민이 군 복무 과정에서 동기부여 및 전역이후의 취업활동 등의 지원 방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고아 및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의 신청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상자의 부양비(가족 구성원), 재산액 및 수입액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그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은 곤란한 점이 있다.

## 2. 정책제안(추진과제)

### 가.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기준

#### 1) 고아 병역의무부과 제외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



- 2) 탈북주민은 한국 입국 당시의 연령 및 정부보호기간 고려 부과
  - 12세 이전 입국 및 정부 보호기간 경과 자
  - 13~15세의 입국 및 정부 보호기간 중인 자
  - 16세 이후 입국 및 정부 보호기간 중인 자

**나.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전제조건 충족 시 시행**

- 1)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전제조건 설정
- 2)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이행 시 관계기관 논의
- 3) 관계기관 동의 및 지원 등 전제조건 충족 시 병역의무부과

**다.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관련 법령의 개정**

- 1) 「병역법」 등의 개정

<표-72> 법령의 개정(안)

구분	~을	~으로	사유
병역법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 면제 등)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2. 00세 이후에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항 제2호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라. 개정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부분개정) 고아 병역의무부과

## 라.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시행

### 1)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이행

#### 가) 필요성 및 이유

-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 유지 및 사회통합의 기여
- 병역감면 대상자의 점진적 축소 정책기조 유지
- 고아 및 탈북주민의 사회성 및 정체성 강화

#### 나) 병역의무부과 시기

-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전제조건 충족 시

#### 다) 병역의무 시행 준비

- 병역의무부과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
- 복무 적응 프로그램 개발
- 정부기관 합동 전역 이후 지원대책 발전 등

#### 라) 병역의무 시행 시

- 초기단계(3년): 후방지역 위주 보직(학교기관 및 군수지원부대 등)
- 지속단계(4년차 이후): 전·후방 전 지역, 전투 및 비전투 부대

### 2) 고아 및 탈북주민 여성이 군 복무를 지원할 경우(부사관 및 장교)

#### 가) 일반 국민의 자녀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동일한 조건 하 선발

- 고아 및 탈북주민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에  
고아 및 탈북주민 여성의 군 복무 지원을 막을 명분 부족

#### 나) 근무처 및 보직은 초기단계와 지속단계로 구분

- 시행초기 3년간은 후방지역 학교기관 및 군수지원부대 등의 보직
- 지속단계 시 전·후방 전 부대 및 전 특기 보직

## 마. 병역의무부과 시 추진과제

고아 및 탈북주민 모두에게 또는 고아 혹은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73>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관련 추진과제

구 분	추진과제
병역의무 준비단계	① 정치권의 우호적 환경의 조성 및 법령의 개정 ②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 ③ 병역의무부과 관련 단체 등의 협조 ④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 및 사회통합 등의 기대효과 홍보 ⑤ 병역의무부과 시 특기 및 보직 운용 지침 마련 ⑥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 특기 및 보직 운용을 위한 단계별 시행방안 구체화 및 적용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병역의무 이행단계	① 병역판정검사 확인 사항 보완 ② 입영관련 규정 등의 점검 및 개정 ③ 특기 및 보직 부여 및 근무지역 지침 마련 ④ 복무 병사 관리지침 마련
복무단계	① 복무 지원 멘토링 시스템 운용 ② 복무 여건 조성 ③ 학업 지원, 기술습득 지원 등의 복무지원 프로그램 마련 ④ 복무 우수자중 부사관 및 장교지원 희망자에 대한 가점부여 ⑤ 복무병사 지원 체계 운용 ⑥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및 처리 등의 지침 마련
전역단계	① 자립 및 취업, 경제적 지원 ② 주거 여건 보장 ③ 복무 이후 지원 체계 운용 ④ 복무이행자 취업 지원(보호아동 및 남북하나재단 취업 지원사업) ⑤ 복무 우수자 선발, 대국민 홍보요원 등으로 운용

여기서 고아 및 탈북주민의 군 복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차원의 지원조직을 운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Lone Soldiers’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정부기구 및 비영리 단체로서 20여 명의 전문인력과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외로운 병사지원 센터(Lone Soldier Center)’를 운용하며, 여기서는 민간인 단체와 복무 병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복무 전, 복무 중, 복무 이후 식사 및 거주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조직을 벤치마킹하여 고아 및 탈북주민 병사의 복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문헌 】

- 21세기 군사연구소,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육군본부 정책과제, 2015.
- 감사원,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원, 2021.
- 강동완,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징집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2012년 여름(통권 제96호)
- 고시성, “인구 절벽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안 연구”, 「KIMA 정책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통권 제2호, 2020.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2021.5.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 국방부, 『2017년 외국의 동원 및 예비군 제도』, 국군인쇄창, 2017.
- 국방부, 『국방개혁 2.0』, 국방부, 2020.
- 국방부, 『국방백서 2012』, 국방부, 2012.
- 국방부, 『국방백서 2014』, 국방부, 2014.
- 국방부, 『국방백서 2016』, 국방부, 2016.
- 국방부, 『국방백서 2018』, 국방부, 2018.
- 국방부, 『국방백서 2020』, 국방부, 2020.
- 김신숙,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천광문화사, 2020.
- 김우림, 『보호대상아동지원사업』, 국회예산처, 2021.
-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2021.
- 남북하나재단, 『2020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2021.
- 노석조,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주)메디치미디어, 2018.
- 병무청, 「병역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동서리서치, 2009.
- 병무청, 「탈북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병무청, 2015.
- 송윤선, 『한국군 병력충원과 정책혁신』, 하음출판사, 2020.
- 싱가포르 병역법(<https://sso.agc.gov.sg/Act/EA1970>)
-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kadoption.or.kr/>)
- 이윤수, ‘다문화 군인에 대한 장교들의 인식과 군 정책 방향’, 「국방정책연구」, 제34권 제2호·2018년 여름호(통권 제120호).
- 이종재 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정책론』, 학지사, 2020.
- 정구진,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경인문화사, 2020.
-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주유선, 김기태, 김보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통계청, 『2019 출생통계』, 2020.

통일부(<https://www.unikorea.go.kr/unikorea>)

통일부, 『2020 북한이해』,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 인쇄사업단, 2019.

통일부, 『2020 통일문제 이해』,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 인쇄사업단, 2019.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2016년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인식조사」, 남북하나재단, 2017.

한국 통계청(KOSIS), “장래인구특별추계(2020~2067)”(2019).

한국행정연구원,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경성문화사, 2021.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potal/>)

Meir Elran and Gabi Sheffer, Editors, *Military Service in Israel: Challenges and Ramifications*, 2016.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Vintage Books, New York, 1987.

Robert Goralski, *WORLD WAR II ALMANAC: 1931~1946*, BONANZA BOOKS, New York, 1982.

<https://www.nbn.org.il/nbnlsp/>.

<https://kosis.kr/statisticsList>.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

<https://www.katc.mil.kr/katc/eduinfo/active.jsp>.

## 【 불 임 자 료 】

### 붙임 #1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제도에 대한 설문(일반 국민)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박계호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 이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설문조사는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제도에 대해 검토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참고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성심껏 질문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은 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질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9.

단국대학교 박계호 교수 드림

※ 현재 고아 및 탈북주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부과 대상이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를 면제(전시근로역, 병역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 내용 중에서 귀하의 의견을 해당되는 곳의 ( )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설문입니다.

1. 귀하는 고아에게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병역의무부과 찬성 ( ): 1-1, 1-1-1번 설문으로 가세요

나. 병역의무부과 반대 ( ): 1-2, 1-2-1번 설문으로 가세요

1-1.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찬성하는 이유는? (1개만 선택)

- 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 )
- 나. 사회통합 기여 ( )
- 다. 사회적응력 향상 기여 ( )
- 라. 병역자원 부족 해소 기여 ( )

1-1-1.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은? (1개만 선택)

- 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 )
- 나. 후방의 학교기관 및 군수지원부대 등에서 근무 ( )
- 다.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 )
- 라. 일정 기간 단계별 적용(사회복지요원 복무, 군수지원부대 배치)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 )

1-2.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반대하는 이유는? (1개만 선택)

- 가. 어려운 성장환경 감안 배려 필요 ( )
- 나.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확보 효과 미흡 ( )
- 다. 경제적 독립과 사회관계 형성 기간 필요 ( )
- 라. 군 생활 적응 어려움 ( )

1-2-1.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은?

- 가. 현재와 같이 본인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 면제 ( )
- 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의무 면제 ( )

2. 향후 고아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병역의무부과 기준은?

- 가. 아동양육시설 재원기간 등 상황 고려 필요 ( )
- 나.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 )

다음은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설문입니다.

3. 귀하는 탈북주민에게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 병역의무부과 찬성 ( ): 3-1, 3-1-1번 설문으로 가세요
- 나. 병역의무부과 반대 ( ): 3-2, 3-2-1번 설문으로 가세요

**3-1.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찬성하는 이유는? (1개만 선택)**

- 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 )
- 나. 사회통합 기여 ( )
- 다. 한국 국민으로 정체성 강화 ( )
- 라. 자유민주체계 이해, 정착과 사회관계 형성 기여 ( )

**3-1-1.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은? (1개만 선택)**

- 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 )
- 나. 후방의 학교기관, 군수지원부대 등에서 복무 ( )
- 다.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 )
- 라. 일정 기간 단계별 적용(사회복지요원 복무, 군수지원부대 배치)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 )

**3-2.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반대하는 이유는? (1개만 선택)**

- 가. 다른 성장환경 감안 배려 필요 ( )
- 나. 자유민주체제 조기 정착을 위한 시간 부여 ( )
- 다. 경제적 독립과 사회관계 형성 기간 필요 ( )
- 라. 군 생활 적응 어려움 ( )

**3-2-1.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은?**

- 가. 현재와 같이 본인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 면제 ( )
- 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의무 면제 ( )

**4. 향후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병역의무부과 방법은?**

- 가. 입국 시의 연령과 사회적응 기간 등 고려 필요 ( )
- 나.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 )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5. 귀하의 성별은?**

- 가. 남성 ( )    나. 여성 ( )



6. 귀하의 연령대는?

가. 10대( ) 나. 20대( ) 다. 30대( ) 라. 40대( ) 마. 50대( )

바. 60대 이상( )

7. 귀하의 직업은?

가. 학생 ( ) 나. 자영업/회사원 ( ) 다. 공무원 ( )

라. 교수/연구직/전문직 ( ) 마. 기타 ( )

-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붙임 #2

###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제도에 대한 설문(군인)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박계호 교수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장병에게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부대의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제도에 대해 검토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참고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성심껏 설문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이 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9.

단국대학교 박계호 교수 드림

※ 현재 고아 및 탈북주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부과 대상이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를 면제(전시근로역, 병역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 내용에서 귀하의 의견을 해당되는 곳의 ( )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설문입니다.

1. 귀하는 고아에게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병역의무부과 찬성 ( ): 1-1, 1-1-1번 설문으로 가세요

나. 병역의무부과 반대 ( ): 1-2, 1-2-1번 설문으로 가세요

1-1.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찬성하는 이유는? (1개만 선택)

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 )

나. 사회통합 기여 ( )

다. 사회적응력 향상 기여 ( )

라. 병역자원 부족 해소 기여 ( )

1-1-1.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은? (1개만 선택)

- 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 )
- 나. 후방의 학교기관, 군수지원부대 등에서 복무 ( )
- 다.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 )
- 라. 일정 기간 단계별 적용(사회복무요원 복무, 군수지원부대 배치)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 )

1-2.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반대하는 이유는?(1개만 선택)

- 가. 어려운 성장환경 감안 배려 필요 ( )
- 나.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확보 효과 미흡 ( )
- 다. 경제적 독립과 사회관계 형성 기간 필요 ( )
- 라. 군 생활 적응 어려움 ( )

1-2-1.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은?

- 가. 현재와 같이 본인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 면제 ( )
- 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의무 면제 ( )

2. 향후 고아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병역의무부과 기준은 ?

- 가. 아동양육시설 재원기간 등 상황 고려 필요 ( )
- 나.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 )

3. 고아의 병역의무부과 관련 기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설문입니다.

4. 귀하는 탈북주민에게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 병역의무부과 찬성 ( ): 4-1, 4-1-1번 설문으로 가세요
- 나. 병역의무부과 반대 ( ): 4-2, 4-2-1번 설문으로 가세요

**4-1.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찬성하는 이유는?(1개만 선택)**

- 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 )
- 나. 사회통합 기여 ( )
- 다. 한국 국민으로 정체성 강화 ( )
- 라. 자유민주체제 이해, 정착과 사회관계 형성 기여 ( )

**4-1-1.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은?(1개만 선택)**

- 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 )
- 나. 후방의 학교기관, 군수지원부대 부대 등에서 근무 ( )
- 다.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 )
- 라. 일정 기간 단계별 적용(사회복무요원 복무, 군수지원부대 배치)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 )

**4-2.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반대하는 이유는?(1개만 선택)**

- 가. 다른 성장환경 감안 배려 필요 ( )
- 나. 자유민주체제 조기 정착을 위한 시간 부여 ( )
- 다. 경제적 독립과 사회관계 형성 기간 필요 ( )
- 라. 군 생활 적응 어려움 ( )

**4-2-1.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은?**

- 가. 현재와 같이 본인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 면제 ( )
- 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의무 면제 ( )

**5. 향후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병역의무부과 방법은 ?**

- 가. 입국 시의 연령과 사회적응 기간 등 고려 필요 ( )
- 나.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 )

**6.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 관련 기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7. (간부만 답변) 고아 및 탈북주민이 군에 입대할 시 지휘 및 관리에 대해?  
(1개만 선택)

- 가. 일반국민과 동등하게 지휘 및 관리 ( )
- 나. 성장환경 등을 감안 더 관심을 갖고 지휘 및 관리 ( )
- 다.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제한적 활용 ( )
- 라. 부대 지휘 및 관리 측면의 부담으로 어려움 ( )

8. (병사만 답변) 고아 및 탈북주민이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할 경우?  
(1개만 선택)

- 가. 다른 동료들과 동일하게 대우 ( )
- 나. 다른 성장환경을 감안하여 대우 ( )
- 다. 무관심 ( )
- 라. 부담스럽게 느껴 회피 ( )

9. 고아 및 탈북주민이 군에 입대할 시 병영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은?

- 가. 군 생활 적응 프로그램 ( )
- 나. 군 복무 이후 직업 관련 프로그램 ( )
- 다. 장점을 살리면서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단결 및 화합 차원 프로그램 ( )
- 라. 자존감, 자부심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 )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10. 귀하의 계급은?

- 가. 영관급 ( ) 나. 위관급 ( ) 다. 부사관급 ( ) 라. 병사 ( )

-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붙임 #3

고아 및 탈북주민 예비역 인터뷰 질문지

이름	복무군별	복무지역	복무기간	특기/보직	비고

1. 성장환경은?

(아동양육시설 등의 입소연령 및 성장, 북한지역 출생 및 성장환경, 탈북동기, 학업 등)

2. 병역감면 대상임에도 복무를 지원한 배경과 현재의 소감 또는 느낌은?

3. 위의 '2'항에서 그 이유와 사례는?

4. 군 복무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경험은?

5. 위의 '4'항에서 그 이유와 사례는?

6. 군 복무 과정에서 지휘관 및 간부, 병사들과의 관계는?

7. 군 복무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해소한 방법은?

8. 휴가 등을 갈 때 간 곳은?

9. 군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 복무자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10. 군 복무이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하여 정부 및 군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11.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느낀 소감은?

12. 군 복무를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은 사항은?

13. 군 복무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느끼는 사항은?(보완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사항)

붙임 #4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설문 결과(일반 국민)<sup>104)</sup>

1. 설문개요

가. 설문기간: 2021. 9. 1. ~ 28.

나. 설문 참여인원

1) 성별

구분	계	남성	여성
인원(%)	180(100)	128(71)	52(29)

2) 연령대별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인원(%)	180(100)	77(43)	23(13)	38(21)	35(19)	7(4)

3) 직업별

구분	계	학생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	기타
인원(%)	180(100)	63(35)	66(37)	39(22)	8(4)	4(2)

2.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관련

가.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찬성 및 반대

구분	계	찬성	반대
인원(%)	180(100)	103(57)	77(43)

나.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 찬성 이유

구분	계	일반 국민과 형평성	사회통합에 기여	사회적응력 향상기여	병역자원 부족해소 기여
인원(%)	103(100)	49(48)	17(16)	25(24)	12(12)

1) 고아에게 병역의무부과한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

구분	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후방의 학교, 군수지원부대	사회복무 요원	일정 기간 거쳐 일반국민과 동일
인원(%)	103(100)	51(50)	8(8)	22(21)	22(21)

다.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반대하는 이유

구분	계	어려운 성장환경 고려, 배려	가용자원 확보 효과 미흡	사회관계 형성기간 고려	군 생활 적응 어려움
인원(%)	77(100)	31(40)	2(3)	37(48)	7(9)

104) 통계자료는 반올림하여 기록하였음

1)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

구분	계	신청에 의거 병역의무 면제	신청여부 관계 없이 면제
인원(%)	77(100)	59(77)	18(23)

라. 향후 고아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병역의무부과 기준

구분	계	아동양육시설 재원 등 상황 고려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인원(%)	180(100)	112(62)	68(38)

3.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가. 탈북주민에게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구분	계	찬성	반대
인원(%)	180(100)	95(53)	85(47)

나.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찬성하는 이유

구분	계	일반 국민과 형평성	사회통합에 기여	한국 국민으로 정체성 강화	자유 민주체제 이해 정착과 사회관계 형성 기여
인원(%)	95(100)	40(42)	10(11)	27(28)	18(19)

1)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가장 적합한 방법

구분	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후방의 학교, 군수지원부대	사회복무 요원	일정 기간 거쳐 일반국민과 동일
인원(%)	95(100)	40(42)	7(7)	15(16)	33(35)

다.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반대하는 이유

구분	계	다른 성장환경 감안, 배려	자유민주체제 조기 정착 시간 부여	경제적 자립, 사회 관계 형성기간 필요	군 생활적응 어려움
인원(%)	85(100)	19(22)	29(34)	14(17)	23(27)

1)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시 가장 적합한 방법

구분	계	신청에 의거 병역의무 면제	신청여부 관계 없이 면제
인원(%)	85(100)	57(67)	28(33)

라. 향후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방법

구분	계	입국 시의 연령과 사회적응 기간 등 고려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인원(%)	180(100)	134(75)	46(25)



붙임 #5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과 설문 결과(군인)

1. 설문개요

가. 설문기간: 2021. 9. 13 ~ 17

나. 설문 참여인원

1) 참여기관 및 인원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인원(%)	220(100)	170(77)	25(12)	25(12)

2) 계급별

구분	계	영관	위관	부사관	병
계(%)	220(100)	101(46)	74(34)	15(7)	30(13)
육군	170	75	50	15	30
해군	25	25			
공군	25	1	24		

2.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관련

가. 고아에게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찬성 및 반대

구분	계	찬성	반대
인원(%)	220(100)	134(61)	86(39)

나. 고아에 대한 병역의무 찬성 이유

구분	계	일반 국민과 형평성	사회통합에 기여	사회적응력 향상기여	병역자원 부족해소 기여
인원(%)	134(100)	71(53)	15(11)	31(23)	17(13)

1) 고아에게 병역의무부과한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

구분	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후방의 학교, 군수지원부대	사회복무 요원	일정 기간 거쳐 일반국민과 동일
인원(%)	134(100)	75(56)	13(10)	14(10)	32(24)

다. 고아의 병역의무부과에 반대하는 이유

구분	계	어려운 성장환경 고려, 배려	가용자원 확보 효과 미흡	사회관계 형성기간 고려	군 생활 적응 어려움
인원(%)	86(100)	30(35)	4(4)	40(47)	12(14)

1) 고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

구분	계	신청에 의거 병역의무 면제	신청여부 관계 없이 면제
인원	86(100)	74(86)	12(14)

라. 향후 고아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병역의무부과 기준

구분	계	아동양육시설 재원 등 상황 고려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인원(%)	220(100)	122(56)	98(44)

3.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가. 탈북주민에게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구분	계	찬성	반대
인원(%)	220(100)	121(55)	99(45)

나.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찬성하는 이유

구분	계	일반 국민과 형평성	사회통합에 기여	한국국민으로 정체성 강화	자유민주체제 이해, 정착과 사회관계 형성 기여
인원(%)	121(100)	46(38)	16(13)	38(31)	21(18)

1)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가장 적합한 방법

구분	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후방의 학교, 군수지원부대	사회복무 요원	일정 기간 거쳐 일반국민과 동일
인원(%)	121(100)	63(52)	6(5)	19(16)	33(27)

다.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반대하는 이유

구분	계	다른 성장환경 감안, 배려	자유민주체제 조기 정착 시간 부여	경제적 도립, 사회 관계 형성기간 필요	군 생활적응 어려움
인원(%)	99(100)	28(28)	31(31)	16(16)	24(25)

1)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시 가장 적합한 방법

구분	계	신청에 의거 병역의무 면제	신청여부 관계없이 면제
인원(%)	99(100)	55(56)	44(44)

라. 향후 탈북주민에게 병역의무부과 시 방법

구분	계	입국 시의 연령과 사회적응 기간 등 고려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부과
인원(%)	220(100)	144(66)	76(34)

4. 고아 및 탈북주민이 군에 입대할 시 지휘 및 관리(간부만 해당)

구분	계	일반국민과 동등하게 지휘 및 관리	성장환경 감안 더 관심갖고 관리	여러 특성 고려 적 재적소 배치, 제한적 활용	부대지휘 및 관리부담으로 어려움
인원(%)	190(100)	54(28)	71(37)	45(24)	20(11)

5. 고아 및 탈북주민이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할 경우(병사만 해당)

구분	계	다른 동료들과 동일하게 대우	다른 성장환경 감안 대우	무관심	부담느껴 회피
인원(%)	30(100)	21(70)	9(30)		

6. 고아 및 탈북주민 군입대 시 병영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구분	계	군 생활적응 프로그램	군 복무이후 직업 관련 프로그램	맞춤형 단결 및 회합 차원 프로그램	자존감, 자부심 함양 프로그램
인원(%)	220(100)	90(41)	47(21)	58(27)	25(11)

## 기타 의견(군인)

### 1. 고아관련

- 2년 임기제 전문부사관 제도를 만들어 병역의무 이행 시 경제적 도움과 사회관계 도움을 주어 병역의무를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간부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가산점 부여, 간부로 근무할 길 마련 필요있음
-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고아에게 상근예비역, 사회복지무원 등 병역부과 시 소득이 없는 어려움으로 생계유지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됨
- 고등교육이상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아 대상으로 병역의무부과 추진 요망
- 고아 군복무 시 부양가족(동생) 등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부과 필요
- 고아가 병역의무 이행 시 경제적 어려움과 숙소 문제 해결 필요, 사회복지무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고아가 군복무 시 군대의 시스템이 사회진출에 도움을 줄 것임
- 고아가 복무 시 경제적 어려울 가능성있는 만큼 사회복지무원 복무 적합
- 고아관계 없이 신체 건강한 남성은 군에 오는 것이 합당함.  
다만, 전역이후 목돈 마련 또는 안정적 취업 확대 대책이 필요할 것임
- 고아는 사회복지무원 근무가 적합할 것임. 다만, 생계 대책 필요  
복무개월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 고아는 전역이후 갈 직장도 집도 없는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접근으로 생각함. 13세 이후 고아가 된 인원은 면제의 혜택조차 없는데 이는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닐까?
- 고아라고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부족한 병력을 보충할 수단임. 보충역보다 현역 활용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임. 입대 후 간부전환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
- 고아라고 해서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3명)
- 고아라고 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옳지 않음.  
다만, 취약계층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체 복무하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
- 고아가 아니어도 어려움이 있는 일반 국민도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음
- 군생활을 하는 것이 향후 사회생활, 인맥형성 등 본인에게 이득이 됨
- 군 생활중 적금, 자기계발 비용 등 사회복지 대비 대책이 필요할 것임.  
부사관 복무 등의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사회적응,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함. 단 사회복지 또는 대체복무 등을 통해 생계유지와 연계시키면 고무적일 듯함
- 개인 형편 및 원에 의해서 면제 가능토록 해야 할 것 같음
- 사회적응 및 적응을 위한 병역의무부과 필요. 단 부작용 요소도 고려
- 군에서 복지제도가 발전하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단순히 보호자가 없는 고아의 경우보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
- 동등한 병역의무가 맞지만 사회에서 기반을 잡기 어려운 점을 감안, 배려 필요
- 성장환경이 다른 만큼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병역의무 수행이 바람직할 것임.  
병역의무 이행 시 부서관 선택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임
- 어려운 성장환경 배려 필요, 필요시 상담을 통해 판단 후 복무토록 요망
- 저출산으로 인해 복무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시기에 신체적으로 복무 가능한 인원은 병역의무부과를 고려해야 함
-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역 25만 명의 장병복무에 비하여 고아들이 병역의무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

## 2. 탈북주민 관련

-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되 2년제 임기제 부서관도 고려하는 방안 필요함
- 군 조직에서 잘 융화될지, 사상교육과 이념 차이로 어려울 것 같음
- 군내 탈북주민에 대한 인식 및 차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임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를 위해 최소한의 의무라도 이행해야 함(3명)
- 우리나라 정착기간 고려, 차등복무, 전방보다는 후방으로 우선적 배치,  
비전투병 우선적 고려 등이 필요할 것임
-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사회복지 등을 거쳐  
군 생활이 가능한지 판단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탈북이후 정착기간과 적응을 위하여 상근 또는 사회복지요원 업무를 부여  
하는 방식이 옳바를 것 같음
- 탈북주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비밀누설 등의 우려가 있음(17명)
- 탈북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함
- 탈북주민의 조기 정착 및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이뤄진 다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군복무는 국가안보의 최일선임을 고려, 탈북주민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는 안보상 문제를 고려하면 시기상조로 판단함
- 탈북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은 맞지만, 귀순목적 등 면밀한 조사 이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 다문화 가정도 병역의무 이행하는 만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임
- 한국입국 이후 정착기간 고려하여 반영, 지휘관리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임
- 보안과 무관한 직위 및 부대에서 근무, 상근 등으로 복무 수행
- 일반 국민 병사와 다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병역의무부과 시 규정 등이 정립된 이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한 뒤 검증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을 것임

## 붙임 #7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이행 관련 인터뷰

#### □ 인터뷰#1 : 고아 예비역 인터뷰

이름	복무군별	복무지역	복무기간	특기/보직	비고
김○○	육군	-	-	-	

#### 1. 성장환경은?

1998년 12월 ○○에서 4남 2녀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많아서 어릴 때 다툼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가족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보육원에 입소하였습니다. 당시는 어려서 지나면서 보육원생 친구들과 선생님과 친해지면서 빠르게 적응해 나아갔습니다. 물론 힘든 점도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알게 되었고 초등학교 때는 내성적인 중학교 때부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1학년 때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알아서 잘 되겠지 라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제가 꿈을 가질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는 결국 저의 미래 설계를 하고 앞으로 나아 갈 수 있었습니다.

#### 2. 면제 대상임에도 복무를 지원한 배경과 현재의 소감 또는 느낌은?

지원 배경은 첫째로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의 정신 개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감은 다녀온 것이 제 삶에 있어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준 것 같습니다.

#### 3. 위의 '2'항에서 그 이유는?

첫째로 대한민국은 휴전국이라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건강한 남성이 전쟁이 발발했는데 손가락만 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둘째로는 지금 이대로 내가 사회에 나가면 정신이 미성숙한 지금 도저히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4. 군 복무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경험은?**

어려웠던 점은 대인관계였고 보람 있었던 경험은 전역했을 때입니다.

**5. 위의 '4'항에서 그 이유는?**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군대이다 보니 의사소통에서 너무 어려움이 컸던 거 같습니다. 사투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동기와 말다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6. 군 복무 과정에서 지휘관 및 간부, 병사들과의 관계는?**

대인관계는 나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간부님은 물론 병사 선 후임들 모두 두루두루 친하게 지낸 거 같습니다.

**7. 군 복무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해소한 방법은?**

동기가 사투리를 쓰는데 제가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말다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고 같이 외박 나가서 놀면서 풀었습니다.

**8. 휴가 등을 갈 때 간 곳은?**

휴가 때에는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9. 군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 복무자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 군 복무이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하여 정부 및 군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의 의식주는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전역을 하면 대체로 22~24세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막 나왔는데 돈이 그리 넉넉히 있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전역 당일 차비도 없었기에 길 가던 사람에게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11.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느낀 소감은?

제가 나가서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다는 생각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12. 군 복무를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은 사항

나라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자기 몸 건강은 항상 챙겨주세요.

13. 군 복무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느끼는 사항은?(보완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사항)  
군에 간다고 할 경우, 정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신비 지원과 주거공간 유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은 휴대폰이 반입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 있는 병사라면 대체로 부모님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생의 경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휴가를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주거공간을 유지해야 하는데 월세 또는 관리비나 수도, 전기세를 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휴가 나왔을 때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건 매우 치명적인 거 같기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인터뷰 #2 : 탈북주민 예비역 인터뷰

이름	복무군별	복무지역	복무기간	특기/보직	비고
김○○	해병대	해병○사단	-	-	

1. 성장환경은?

○○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를 따라 중국을 경유하여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탈북과정에서 어머니와 잠시 떨어져 친척들의 손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6~7세 정도로 한국에 할머니와 외삼촌이 먼저 정착한 경우라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하나원에 입소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에 와서 유치원부터 정상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좋은 시설과 교육환경 덕분에 좋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2. 면제 대상임에도 복무를 지원한 배경과 현재의 소감 또는 느낌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달리 고향을 제외한 모든 경험을 대한민국에서 해왔습니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고 더 나아가 본인의 신분에 창피함을 느껴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면서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군 복무는 저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북한이탈주민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역차별로 생각했고 주저하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해병대원으로서 무사히 전역하였고 저는 그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착실히 수행했고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저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위의 '2'항에서 그 이유와 사례는?

필자의 경험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혜택들을 국민이 알게 되었을 때 오는 불편한 시선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혜택들이 정당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작게나마 제가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고 그래서 실천했습니다.

**4. 군 복무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경험은?**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등병 생활에서 오는 군 부조리와 엄격한 계급체계였습니다. 보람 있었던 경험은 군 복무 중 발표대회를 나가서 입상한 경험입니다.

※ 국방부에서 주최한 발표회에서 우수하게 입상한 바 있음

**5. 위의 '4'항에서 그 이유와 사례는?**

해병대는 훈련도 물론이지만 내무생활이 가장 힘든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인계 사항들이 이병, 일병 기간에는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기도 하였습니다.

**6. 군 복무 과정에서 지휘관 및 간부, 병사들과의 관계는?**

지휘관, 간부 그리고 병사들과는 모두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7. 군 복무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해소한 방법은?**

하급자였을 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상급자가 되고 나서는 간혹 간부와 갈등 상황이 있었지만, 따로 대면하여 서로 말로써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8. 휴가 등을 갈 때 간 곳은?**

서울에 와서 가족들을 보거나 외박이 주어진 경우 전우들과 포항에서 머물렀습니다.

**9. 군에서 고아 및 탈북주민 복무자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처럼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군 복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 군 복무이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하여 정부 및 군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전역 후 자기 계발에 힘쓸 수 있도록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역 후 일정 금액을 포상으로 지원하거나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방법을 다시 고려했으면 합니다.

**11.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느낀 소감은?**

시원섭섭했습니다.

**12. 군 복무를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은 사항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을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선택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13. 군 복무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느끼는 사항은?(보완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사항)**

군인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결은 물론 월급까지 전반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이에 관련하여 군인에 대한 시선들을 교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내부의 문제들을 드러내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국민이 군인에 대한 고마움과 희생정신에 대한 숭고함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과 매체를 통한 선전이 매우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 인터뷰 #3 : 탈북주민 현역장교 인터뷰

이름	복무군별	복무기간	특기/보직	비고
이○○	육군	2년차 복무 중	-	

1. 성장환경은?

대부분을 ○○에서 생활하면서 15살까지 북한에서 살았다.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감시를 받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유치원은 2년 중에 3개월, 인민학교는 4년 중에 2년 1개월을 다닐 수 있었다. ○○ 출신 △△△이 탈북을 하면서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의 몸 절반이 마비 증세를 보이던 다음 해 ◎◎◎이 탈북하고 학교는 더 이상 다닐 수 없었으며 가정형편도 어려워 □□□를 따라 농사일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와 ☆☆☆이 탈북을 했으나 복송되었다. ×××이 탈북하였고, □□□와 ☆☆☆이 두 번째 탈북하였지만 복송되었다.

나와 □□□는 ○○에서 추방을 당했고 추방당한 곳에서 도망칠 준비를 차곡 차곡 하였다. 세 번째 탈북하기 전에 견지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를 ▼▼▼가 사는 곳까지 데려다 줘야 할 의무가 있었기에, 생필품 마련 및 □□□와 도망칠 좀 더 안전한 길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농사일은 물론 수많은 산을 가로지르며 약초와 산나물을 캐서 말려 팔며 시장까지 왕복 원거리를 일주일에 하루씩 오가면서 준비를 했고 추방당한 곳에서 도망쳤다. □□□가 견지 못해 자동차나 달구지를 얻어 타려고 해도 흔치 않아서 부르는 게 값이라 추방당해 받는 시선 및 저격의 말, 몸이 아파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버티고 견디며 모아둔 돈이 적지 않았음에도 빠듯했다. □□□를 ▼▼▼에 데려다주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와 만나 ○○으로 가서 숨어 지내다가 탈북을 하여 중국과 몽골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였다.

북한에서 살았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행복함이나 보람이라는 감정보다 아직 어렸음에도 세상에 등 떠밀리는 것 같았을 때의 두려움과 끔찍이 고생한 기억 밖에 없다. 그럼에도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 시간이 나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살아갈 이유 중 하나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 2. 학군장교를 지원한 배경과 현재의 소감 또는 느낌은?

‘최초’라는 것은 대표성을 떨 수도 있어 그 단어만큼 주목받게 된다는 점에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생활하게 된다. 이에 더해 아직까지는 ‘새터민’이라는 평생 따라다닐 단어는 더욱 많은 것들을 신경 쓰게 했다. 그래서 시작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으나 항상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당당해지는 것과 누군가는 가봐야 길이 되는 것’으로 학군장교를 지원한 배경도 그 중 하나였다. 또한, 현재 새터민에게 군 복무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많은 사람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군대를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보란 듯이 바꿔 주고 싶었다. 그리고 같은 길을 생각하며 망설이는 누군가에게는 용기 있는 도전의 흔적이고 싶었다.

‘보란 듯이’ 하기 위해서는 눈에 확 띠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했고, 해야 하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굳이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도 나서서 솔선수범을 보이고자 했다. 그러한 것들이 쌓여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어디에 가서든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도와 주고자 하는 모습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 3. 장교로서 현재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대한 소감은?

성취감과 뿌듯함이다. 육아휴직 하기 전까지 직책에 맞게 부대 장병들의 정신 전력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았으며 여러 매체를 통해 부대 및 군 본연의 모습 홍보에 기여하여 표창으로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성취감과 뿌듯함이 따라왔다.

## 4. 현재 복무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경험은?

생소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어 배운 것들은 많지만 어렵다고 느낀 것은 크게 없었으며, 보람 있었던 경험은 각종 매체에 홍보를 한 것도 표창을 받은 것도 아닌 부대 장병들의 정신전력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사진 콘테스트나 안보골든벨 등을 직접 짜고 새롭게 하여 반기 1회 4박5일로 이뤄지는 집중 정신전력 교육 간 시도를 했을 때 ‘새로워서 흥미로웠고 좀 더 교육에 몰입할 수 있었다.’거나 ‘고생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5. 장교로서 지금까지 복무 과정에서 지휘관 및 간부, 병사들과의 관계는?

업무협조를 잘하고 원만하게 잘 지냈다.

6. 군 복무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해소한 방법은?

갈등이 없었다.

7. 탈북주민의 군복무를 위해 군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

8. 복무 이후 사회진출을 원할 경우 정부 및 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스스로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한다.

9.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를 지원하는 탈북주민 후배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은 사항은?

어디서나 마찬가지로겠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10. 군 복무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느끼는 사항은?(보완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사항)

남성들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 좀 더 조화롭게,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

## 붙임 #8

###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의무부와 자체토론회

1. 일시: 2021. 10. 20(수), 14:00 ~ 15:30

2. 장소: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3. 참석: 12명

계	정부기관	고아단체	탈북단체	전문가	연구진
12명	2명	2명	2명	3명	3명

※ 국정감사 및 코로나-19 상황고려 참석 제한

#### 4. 진행

가. 참석자 소개(14:00 ~ 14:10)

나. 주제 발표(14:10 ~ 14:40)

다. 토의 진행(14:40 ~ 15:30)

#### 5. 주요 논의 및 제안

가.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 존재

나. 고아라는 용어는 법령상 용어가 아님, 법령상 용어는 시설보호아동이나 요보호아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고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개념은 위와 같음

다. 시설보호 아동의 병역의무 이행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음. 선택권이 본인에게 주어진다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의무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라. 탈북주민이 한국에 살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

마. 고아 및 탈북주민에 병역의무부과 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나 핀포인트(pin-point)식 지원은 어려울 것임, 고아관련 병역의무 이행 후 주거지 마련 대책 필요

바. 탈북주민의 경우, 직업군인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필요. 의무화 보다는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음

사. 탈북주민은 북한거주 시 또는 탈북기간 중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으로 트라우마 경험, 이런 것이 분노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 군과 당사자 간 상호적 적용체계가 필요할 것임

6. 후속 조치: 제시된 의견은 보고서에 반영